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가족과 커뮤니티

목 차	
특별기고	
김미경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5
일반논문	
황명환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31
김종수 청풍승평계(淸風昇平稧)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65
이원석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97
위민호 · 류도향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127
박건우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151
홍성효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181
문창배 · 최영진 일반계고등학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201
현장 & Issue	
장화선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223
서평	
추주희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243
▣ 발간 및 투고 규정(제출 양식)	251
▣ 논문 심사 규정	255
▣ 연구 윤리 규정	259
▣ 임원 명단	264

[특별기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김미경*

— 목차 —

1. 들어가며
2.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을 거쳐 성평등정책으로
3. 성평등정책을 위한 이론적 검토: 유연한 젠더레짐과 불평등의 상호교차성
4. 지역 성평등정책 아젠다: 저출산정책을 중심으로
5. 성평등정책의 과제: 일가정양립정책에서 일생활균형정책으로
6. 나오며

■ 국문초록

2001년 여성부 설립과 함께 한국여성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여성부 설립 전후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여성부 설립 이전 시기를 여성정책의 시기, 설립이후 2020년까지를 양성평등정책의 시기로,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를 성평등정책의 시기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여성부 설립이전까지의 가부장제의 성격을 ‘가부장적 젠더레짐’으로, 이후 2020년 이전까지를 ‘신가부장적 젠더레짐’으로,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6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0년 이후를 ‘유연한 젠더레짐’으로 개념규정하고 2020년 이후 ‘유연한 젠더레짐’의 특징들을 ‘액체근대’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여성정책의 중심에 여성부를 비롯한 지자체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으며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을 거쳐 다양한 성과 인종,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인권과 연대의 개념으로서 ‘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지역여성정책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숙고하였다.

주제어: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성평등정책, 유연한 젠더레짐, 액체근대, 기본소득

1. 들어가며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여성부 설립은 여성정책 발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여성부의 출발과 함께 급성장한 여성정책은 지자체에서 역시 전문적으로 연구 및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생겨남으로써 성평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제도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 공모 사업에 바빠 지역현안의 새로운 아젠다를 찾지 못하고 활동가들 역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운동의 위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오장미경, 2005). “2001년 이후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온 여성정책은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등레짐’에 따른 여성운동의 제도화 과정 속에 침체되어가는 여성학의 위기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김미경, 2015).

그러나 80년대 여성단체연합 및 여성단체협의회, YWCA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활동가들이 김대중정부의 여성부설립과 노무현정부의 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시대를 맞아 국회나 행정부처, 시·군의회 그리고 여성연구·사업 기관 등에 진출함으로써 호주제·군가산제·강간법 폐지, 일제위안부 보상, 성폭·가폭피해자 보호, 성매매여성 재활,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지원과 같은 오랜 과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학폭·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 및 성평등 문화확산과 같은 문제들을 시스템 속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가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적 현안들이 제도적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성운동은 마을재생, 돌봄, 제로웨이스트 등 지역의 여성친화마을운동, 풀뿌리운동으로 정착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여성운동의 위기론’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여성정책의 중심에 여성부를 비롯한 지자체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양성평등정책’을 거쳐 다양한 성과인중, 세대를 아우르는 인권과 연대의 개념으로서 ‘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역여성정책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2.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을 거쳐 성평등정책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세 시기를 거쳐 변화, 발전하였다.¹⁾ 첫 번

1)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허라금(2005), 마경희(2007), 이정옥(2007), 이재경·김경희(2012), 배은경(2016) 등 참고.

째 시기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생각하고 ‘모자가족’, ‘결손가족’, ‘요보호여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던 여성부 설립 이전으로, 이 시기 여성정책의 주 업무는 성폭력 및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성매매방지 및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정책 시행기구로는 198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무장관(제2)실을 두어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을 더 높이하고자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이관하였다. 또한 여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 시기는 ‘여성정책’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 및 경제, 정치 참여와 지위향상 등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복지부 및 노동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성관련 업무를 특별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2001년 독립부처로 여성부가 신설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여성부의 설립과 동시에 그동안 ‘요보호’ 대상으로서 여성만을 위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그동안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및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소위 형식적 평등주의의 성과물을 토대로, 보다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예산’ 편성 등과 같은 소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과 양성평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표1 참조).

<표 1> 역대정부의 주요 여성정책 및 제도

구분	정부	주요정책	관련 법·기구
여성부 설립 전	노태우 (1988- 1993)	·건전소비운동 지원 ·여성진로지도 교육과목 개설 및 자료 개발 ·여성단체의 생활개선 운동지원사업 등 추진	·정무장관(제2)실(1988): 여성정책총괄·조정

	김영삼 (1993-1998)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방안	·여성발전기본법(1995) ·경북여성개발원(1997)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부 설립 후	김대중 (1998-2003)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차별개선, 여성권익증진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	·충남여성정책개발원(1999) ·여성부(2001):여성정책총괄·조정, 남녀차별금지규제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위안부생활안정지원 업무이관; 노동부로부터 일하는여성의집(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이관
	노무현 (2003-200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제1차 중장기 보육 5개년 계획(새싹플랜) 수립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대책 ·출산율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대책 등 추진 ·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한국양성평등진흥원(2003) ·여성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보육업무 이관(2004) ·여성가족부로 명칭개편(2005): 가족정책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 남녀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업무 이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5) ·서울여성가족재단(2007)
	이명박 (2008-201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로 명칭 재변경(2008): 가족·보육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성가족부로 명칭 재변경(2010):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8) ·광주여성재단(2011) ·대구여성가족재단(2012) ·인천여성가족재단(2013)
	박근혜 (2013-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충북여성재단(2017)

출처: 윤선영, 신영진 (2013), pp. 49를 토대로 재구성

세 번째 시기는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에 기초한 ‘양성평등’

의 개념을 양성을 초월한 다양한 성정체성을 반영한 ‘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던 2016이후부터로 보고자 한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직까지 성평등정책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평등, 양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의 개념을 통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 성평등정책은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선 사회적 젠더(Gender)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역시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동성애’나 ‘제3의 성적지향’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성평등정책을 위한 이론적 검토: 유연한 젠더레짐과 불평등의 상호교차성

남성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기초로 사회가 유지되어 오던 전근대적 가부장제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등 전통사회 해체과정에서 여성의 교육기회 및 경제, 정치활동의 증대에 따른 신가부장제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신가부장제의 평등지향적 ‘젠더레짐’ 안에서 여성들은 오히려 가정과 직장에서의 노동과 역할을 통한 이중부담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정책의 주요과제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되었다(Kim, 2000; 김미경, 2009).

<표 2>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까지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20대 중반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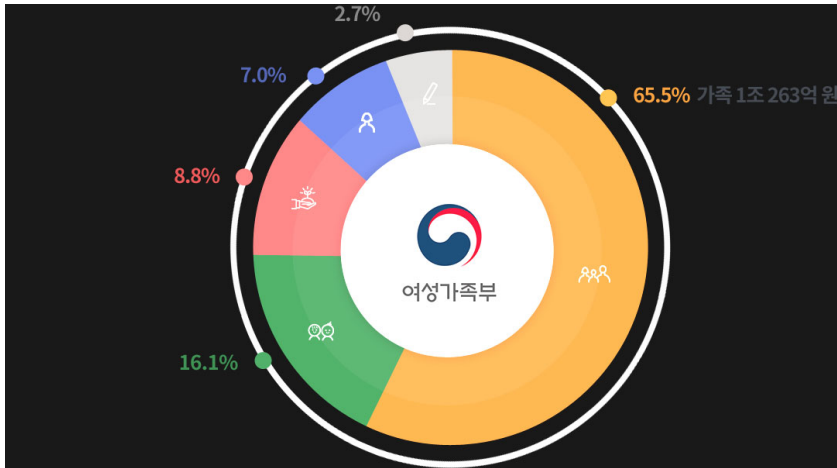
들의 군입대, 상급학교 진학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30대가 되면서 남녀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연령대는 30대중반에서 후반으로, 이때 여성들은 집중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통해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증대 등을 목표로 한 여성정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김미경, 2012).

<표 2>



2001년 2백88억으로 시작한 여성부의 예산은 2023년 현재 1조 5,505억원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중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및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사업에 1조 263억(65.5%),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사업에 2,525억(16.1%),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익보호사업에 1,379억(8.8%), 여성경제활동참여 지원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사업에 1,090억(7%), 기타 421억(2.7%)으로 분포되어 있다. 결국 여성부 예산의 80%는 ‘가족기능의 회복 및 정상화’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돌봄노동에 기초한 여성의 일가정양립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2023 여성부 예산편성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323억 원,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 134억 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36억 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136억 원
- 청소년쉼터 야간보호상담원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 54억 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273억 원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립 연계사업 확대 8억 원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익산, 광주) 추가 건립 27억 원
- 2023 세계장애리 성공개회 지원 95억 원 등 지원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 1인가구 긴급돌봄 도입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확대 18.4억 원
-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수 확대 3,546억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4,959억 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실시 등 110억 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상담, 이중언어, 통번역 등 지원 확대 247억 원
-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112억 원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신규지원 및 폭력피해 남성보호시설 신규설치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92억 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신규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억 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전문성 강화 7억 원
- 성악취를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61억 원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억 원 및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2억 원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4억 원
-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41억 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위한 '전달팀'(7→12개소) 등 확대 264억 원
-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 4억 원(신규)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3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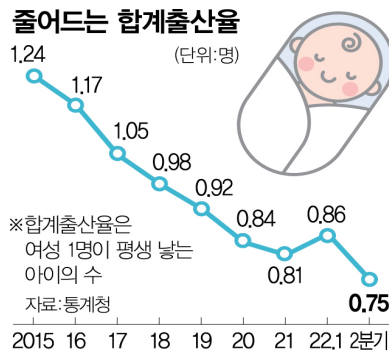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반비례하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존폐위기를 결정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현재 0.7명대로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이렇듯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변화는 남녀갈등을 중심으로 한 신가부장적 평등레짐만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기에 이렇듯 변화하는 젠더질서를 ‘유연한 젠더레짐’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지국가 레짐 하의 가부장제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변화하고 있기에 여성이론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특히 여성주의적 정책의 전략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남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김미경, 2015: 417-418).

<표 3>



<표 4>



유연한 젠더레짐 하 성평등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회학적 변수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유연한 젠더레짐 하의 젠더관계는 가부장제나 신가부장제 하의 고정적, 불변적 성격이 아니라, 상당

히 유연한 액체성을 갖는다. 사회학자 바우만은 서구사회가 초기의 근대적 고체성을 넘어 어떻게 액체근대로 진입하였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바우만, 2009).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 역시 평생직장의 개념을 깨고,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갱신하면서 액체근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김미경, 2017b).

독일의 사회학자들 사이에는 다문화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상호교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Lutz, H., u.a., 2010).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 역시 상호교차성 이론을 통해 ‘양극화 속의 다층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미경, 2017a). 즉, 가부장제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른 신가부장제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전환되었다면, 다문화되어가는 현단계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는 더욱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검은머리 과뿌리’ 되도록 결혼관계가 유지되거나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관념도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고전적 사회학의 관점에서 계급과 성에 기초한 지배, 피지배 관계로만 불평등구조를 분석하기에는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다층적인 불평등 구조에 상호교차적으로 직면해 가고 있다. 상호교차성 이론이 설명해주는 것은 사회는 갈수록 포함과 배제로 양극화되어가고 있고 그 양극화 속에서 또한 매우 다층적으로 상호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동시적 비동시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불평등의 교차성과 액체근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쟁점이 된 세대갈등의 문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적 조부모와 근대적 부모, 탈근대적 자식 세대의 소통의 문제가 그것이다. 세대 간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유체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꼭 ‘소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고체근대적’ 강박을 더 문제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김미경, 2016: 77). 바우만의 ‘실패한 근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족문제와 또한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지역 성평등정책 아젠다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액체화되어가는 사회의 고체성으로 보이는 ‘실패한 근대의 프로젝트’는 인구정책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4. 지역 성평등정책 아젠다: 저출산정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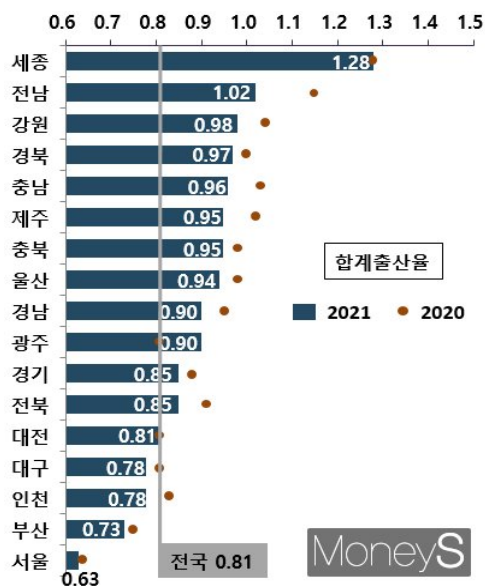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그 위기감은 지역소멸, 국가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출산과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전영수, 2018). ‘출산과업’이라는 가부장적 표현에 “국가가 여성을 출산을 위해 고용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되묻고 싶다.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지자체에 생기기 시작한 여성정책연구소 및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여성정책기관들은 지역여성운동의 결과로써 ‘성평등사회구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장 선거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 되고, 본래의 목적사업보다 지자체 정책과 사업을 지원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모든 지자체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생사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장려’라는 용어까지 사용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금성 지원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23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까지 떨어지고 있어 그 정책효과가 무색할 지경이다.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으로 아이를 출산할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1년 설립된 여성재단을 2019년 여성가족재단

으로 확대개편하고 본격적으로 시의 저출산 정책을 지원하게 하였다. 일례로 2018년 광산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임원아동보호사’ 사업이 2019년 종료되자 여성가족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전 구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출생축하금 100만원 일시불과 육아수당 20만원씩 24개월 총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2021년 광주광역시는 전년대비 출생아 수가 8.7% 증가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전국 0.81명 대비 0.9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을뿐, 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이 0.7%명까지 감소하였다. 과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현금성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우만의 지적대로 이것은 근대의 실패한 프로젝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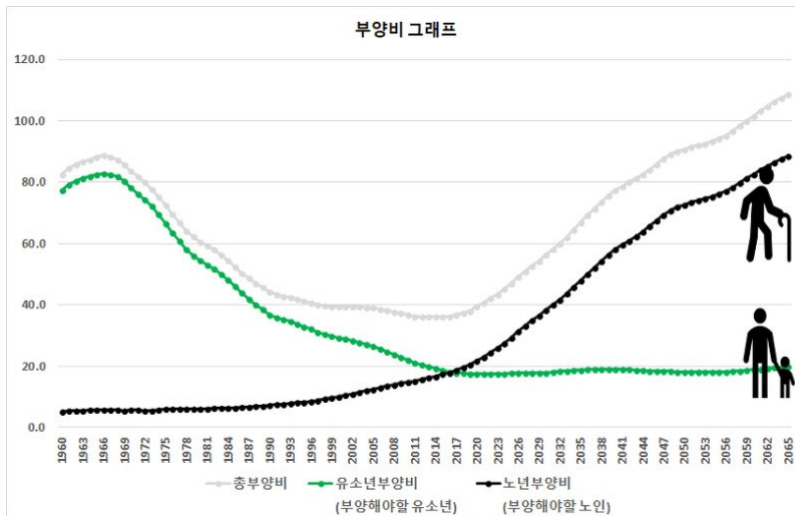
<표 5>



출처: MoneyS(2022.08.24. 15:00)

저출산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현상은 고령화 문제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곧 생산력을 의미하던 시절, 6.25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곧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표 6>에서와 같이 부양할 유소년인구의 가파른 감소현상으로 1970년대부터 총부양비가 감소하였지만 2017년 이후 증가하는 노년부양비에 의해 총부양비가 다시 상승하게 됨으로써 2050년 이후부터는 총부양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던 시기에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반면, 노년부양비가 높아지는 시점에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표7 참고).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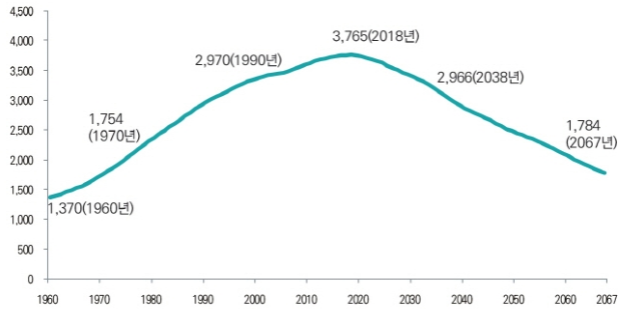


출처: <https://blog.naver.com/minjae217/221591178904>

<표 7>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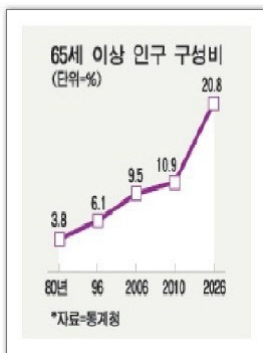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유엔은 고령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17년 고령인구 14.2%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해 17년이 걸린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8>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은 2020년이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1963년생)들이 노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은 2020년이며, 1968년부터 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는 시점은 2033년부터 이다. 즉,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발

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부양비의 증가를 감당할 생산가능인구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와 같은 현금성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9>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M)세대와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태어난 디지털(Z)세대는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이다.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처럼 자녀를 5-6명을 낳지 않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하제한 시대에 태어났다. 더군다나 MZ세대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전통적인 ‘효’나 ‘부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대일 것이다. 그들에게 ‘효’의 개념은 부모세대와는 사뭇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MZ세대는 불변하는 아날로그적 ‘고체근대’의 막을 내릴 것이며, 모든 것이 유연하게 변하는 ‘액체근대’의 특징을 가진 세대가 될 것이다. “MZ세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막 도입된 시대에 태어나고 적응하여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2)

5. 성평등정책의 과제: 일가정양립정책에서 일생활균형정책으로

근대화는 일과 가정의 공간적 분리를 결과하여 남성은 밖에서 경제 활동을,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성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증가 및 3차 서비스산업의 확장과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결혼 후 가정에서 주로 돌봄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던 전근대 가부장제적 노동형태에서 탈피하여 가정 밖의 경제활동에의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Kim, 2000). 형식적 평등주의에 기초한 부부상호 자유로운 파트너관계가 중시되는 근대의 신가부장적 젠더 질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김미경, 2015: 416).

남성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부양자 모델의 적용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³⁾가 정책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2) MZ세대는 사실 20~30년의 나이차이가 있어 서로 간에 세대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세대들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MZ세대의 특징은 1. 디지털환경에 익숙하다, 2. 사생활을 중시한다, 3.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문화를 중시한다, 4.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한다, 5.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한다, 6.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한다, 7. 위라벨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 8. 다른 세대보다 채테크에 관심이 많다(ddnews.co.kr., 2022년 9월 14일자).

3) 적극적조치는 1961년 F. 케네디 대통령이 ‘고용과 교육에서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등장한 정책이다. 즉, 흑인, 히스패닉, 여성 등 소수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입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입 후 여성의 고용율과 관리자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2006년 대비 각각 7.64%p, 10.91%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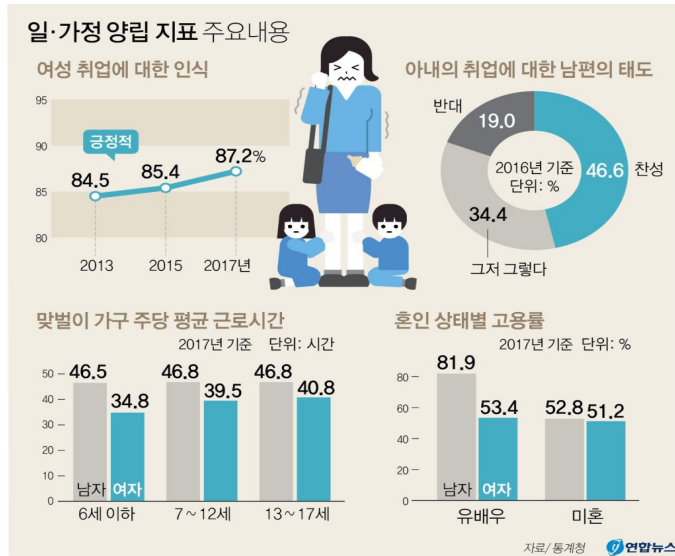
<표 10> 여성의 노동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06년~'19년)



출처: 노컷뉴스, 2019.10.30.12:00(자료=고용노동부)

또한 2021년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0%, 여성장관 비율은 27.8%,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9%,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 등으로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참여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2019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는 확실히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후 일어난 많은 변화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87.2%에 이르고 있으며, 남편의 아내취업에 대한 찬성의견이 46.4%로 반대 19.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도 점차 줄고 있고,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미혼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 참고).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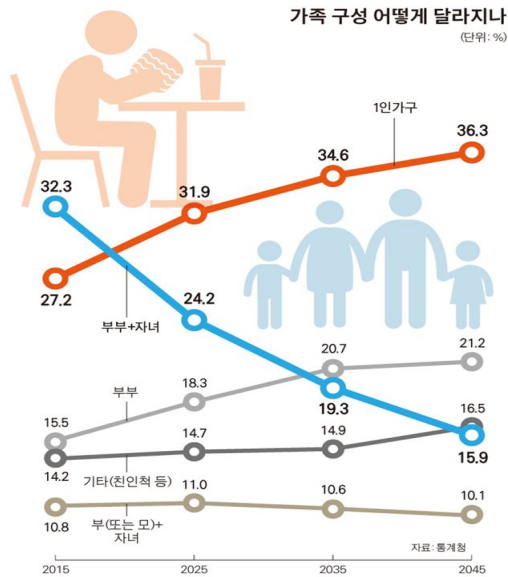
장예진 기자 / 20181214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2019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일가정양립 부분에 있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2010년과 비교하면 22.6%p 상승하였고,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비율도 5년 전보다 각각 7배, 2.6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8%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비율 역시 낮은 속도나마 증가추세에 있긴 하나 아직 11.2%에 그치고 있어 여성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가부장적 젠더레짐 하 양성평등정책은 일가정양립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1인가구의 증가추세이다. 근대적 핵가족의 전형인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비가 2020년 이후 1인 가구 대세로 역전되었으며,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추

세 가운데 2035년에는 부부가구가 부부와 자녀가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11 참고).

<표 11>



인류문명이 존재하는 한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 유지되어 오면서 몇 대가 함께 살던 전통사회의 대가족에서 부부와 그 자녀 중심의 근대적 핵가족을 거쳐 이른바 1인가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노인의 50%이상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인 1인가구가 지배적인 시대를 맞아 노후의 문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김미경, 2016). 1인가구 시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큰 이슈인 ‘일가정양립정책’이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정책은 1인가구 시대를 맞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견인할 수 있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정책으로 탈바꿈 되어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김미경, 2021).

워라벨 정책은 양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생물학적 이분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정책을 넘어 젠더와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연대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전체 인구 중 다문화 가족이 10% 남짓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기 시작하고, 고령자부양비가 연소자부양비를 넘어서게 되는 2020년 이후 세대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남녀평등의 문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대남의 이대녀에 대한 혐오’를 통해 젠더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남초카페와 여초 및 페미니즘 사이트를 비교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양성간의 현실인식이 매우 상반되면서 성별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과 피해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성들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지적하였다(홍찬숙, 2022: 192).

미국 하바드대 주디스 버틀러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남녀 어느 한 성(Sex)에도 속하지 않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버틀러, 2008). 생물학적 남녀를 넘어선 다양한 성정체성은 ‘액체근대’의 징후이기도 하다. 물론 ‘고체근대’에서도 다양한 성정체성은 존재하였을 터지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거나 은폐되었을 것이다. ‘액체근대’적 특징의 하나인 다양한 가족형태 하에서 결혼은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야 하는 고체근대의 제도적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파트너관계를 통해 유연한 젠더질서를 갖는다(김미경, 2015). 신가부장적 평등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호교차적 불평등 체계 속에서 젠더질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여성들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왔던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정책을 넘어 남성과 함께 연대하여

불평등의 상호교차성에 대응하는 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젠더갈등을 ‘유연한 젠더레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여성학자 일제렌즈 교수의 주장처럼, 여성의 가족에 대한 집합적인 의존성과 연결을 비판하였던 신여성운동과 달리 유연한 젠더레짐 하에서는 모든 성들과 세대 간의 연대가 더 중요하다(Lenz2013a; 2013b).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과 계급, 인종의 중층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상호교차성 이론(Lutz, 2010)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유연한 젠더레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김미경, 2015). 액체근대의 유연한 젠더질서 하에서의 정책적 분석단위는 자유로운 1인 ‘성인노동자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의 ‘남성 부양자모델’에서 신가부장제의 맞벌이에 기초한 ‘2인소득자모델’(김미경, 2009)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정책 패러다임이 여성지위향상에서, 일가정양립을 거쳐 일생활균형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이다.

6. 나오며: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앞으로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는 여성에게 주로 전담되어 왔던 일가정양립의 부담을 1인 노동자를 단위로 한 일생활균형으로 전인하기 위한 정책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개발하고 안착시키는데 있다.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개발은 고체근대성을 떠난 선별적, 시혜적 형태가 아닌 액체근대의 보편주의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복지를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만이 젠더,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

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21년 기본과제로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김미경 외, 2021).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부분기본소득⁴⁾ 개념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지자체형 부분기본소득으로는 ‘일생활균형수당’과 ‘안식월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일생활균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인가구 시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개인생활을 토대로 현재의 고착화된 성별분업 구조가 개선되어야 보다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은행(WB)이 2023년 3월3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0개국 대상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65위를 차지하였다. 이동의 자유,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의 항목에서는 100점을 맞은 한국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항목에서 80점, 기업가활동에서 75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 25점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연합뉴스, 2023년 3월 4일 17:15). 한국사회는 “더 이상 구조적 성불평등이 없다”는 현정부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 성평등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4)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도는 지자체형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윤홍식 교수의 ‘기본소득들’의 개념(윤홍식, 2018)을 수용하여 일생활균형이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 특정 연령대에 수당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형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 성평등정책의 과제는 기본소득과 같은 탈가족화, 탈상품화 정책의 도입방안 마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이 가족과 시장의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한 젠더레짐 하 개인과 가족, 출산의 삼각관계는 앞으로 성평등 정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한국사회는 바우만이 제기한 “실패한 근대의 프로젝트”처럼 이미 더 이상 출산을 통한 고체근대적 가족관계를 강요할 수 없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며, 세대 및 인종갈등과 같은 고체근대가 예측하지 못한 액체근대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이수 외, 『일·가족·젠더 -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딜레마』,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 김미경, 「일·가족 양립정책과 모성보호정책: ‘노동사회’를 넘어 ‘좋은 노동사회’를 위하여」, 『일·가족·젠더 -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딜레마』, 2009.
- _____, 『여성노동 시대: 일가족양립을 위한 여성주의 사회복지』, 나눔의 집, 2012.
- _____,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395~423면.
- _____, 「1인 가구 시대 노후와 가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소고」, 『젠더와 문화』 제19권 4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6, 167~190면.
- _____, 「다문화사회의 유연한 젠더레짐과 사회불평등구조: 상호교차성 이론의 한국사회적응 가능성」, 『사회사상과 문화』 20권 2호, 동양사회

- 사상학회, 2017a, 179~208면.
- _____,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 바우만의 문제의식과 루만의 인식론을 통한 접근」, 『젠더와 문화』 제20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b, 75~101면.
- 김미경 외,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광주광역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2021.
- 마경희, 「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7. 39~68면.
- 바우만·지그문트,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서울: 강, 2009.
- 배은경, 「젠더정책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이후 한국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6, 1~45면.
- 버틀러·주디스,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 오장미경, 「한국의 페미니즘, 지금 어디에 있나 - 대안을 찾아서;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제16권, 한국여성연구소, 2005, 8~34면.
- 윤선영·신영진,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역대 정부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비교 및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단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33~62면.
- 윤홍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 월간 『복지동향』(239), 참여연대, 2018, 44~55면.
- 이재경·김경희,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2, 1~33면.
- 이정옥, 「가족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가족과 커뮤니티』 4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5~38면.
- 전영수, 『한국이 소멸한다』, 비즈니스북스, 2018.
- 허라금, 「성주류화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2005, 한국여성학회, 199~232면.

- 홍찬숙, 『한국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창출판사, 2022.
- Bauman, Z.,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 Kim, M-K., *Frauenarbeit zwischen Beruf und Familie*, Frankfurt a.M./NewYork, 2000.
- Lenz, I., “Zum Wandel der Geschlechterordnungen im globalisierten flexibilisierten Kapitalismus. Neue Herausforderungen fuer die Geschlechterforschung”. in: Lucius & Lucius, Stuttgart. *Feministische*, 2013a.
- Studien : Sonderband., *Geschlechterkonflikte um die Geschlechterordnung im Uebergang. Zum neuen Antifeminismus*. in: Appelt, E., Aulenbacher, B., Wetterer A.(Hrsg.). 『Gesellschaft - Feministischen Krisendiagnosen,』 Muenster, 2013b.
- Lutz. H., Vivar, M., Supik, L.(Hg.), *Fokus Intersektionalitaet*. Wiesbaden, 2010.

■ Abstract

Paradigm shift in women's policy and task of regional gender equality policy

Kim, Mi Ky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Korean women's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women's policy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arbitrari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women's policy,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to 2020 as the period of equality policy for women and men, and the period after 2020 as the period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he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Women's Affairs was defined as a patriarchal gender regime, the period before 2020 as a new patriarchal gender regime, and the post-2020 period as a flexible gender regime,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approached with the concept of liquid modernity.

We no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local women's policy institu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e center of women's policy, which has developed rapidly since 2000, and in the process of paradigm shift from "women's policy" to "equality for women and men" to "gender equality policy" to "gender equality policy" as a concept of human rights and solidarity that encompasses various genders, races, and generations, we sought to ponder the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local women's policies.

Key Words: Women' Policy, Policy for Women and Men, Gender Equality Policy, Flexible Gender-Regime, Liquid Modernity, Basic Income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황명환*

목차

1. 서론
2.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범위
3.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 1) 만남과 이별
 - 2) 선물의 수수
 - 3) 축하와 애도
4. 결론: 친족 교류의 의미를 검하여

■ 국문초록

본고는 성호 이익의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을 구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호 문학 연구가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자 성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다소 도외시한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야에 머물렀던 성호가 가장 왕성히 교류했던 집단은 바로 친족이었으며, 그가 남긴 시문들에는 친족에 대한 성호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었다.

우선,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호가 주로 부계(父系)의 아래 향렬 인물들과 교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처가나 외가의 인물들과도 교류를 맺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혼맥을 통해 맺어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진 친족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리고 친족 간의 교류와 관련하여 화차운, 시간(詩簡), 송별시를 남겼으며, 보내온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거나 경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전통시대 때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만남과 이별이 매우 특별한 사건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호는 자연스럽게 대상과의 이별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었는데, 그와 동시에 상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표출하였다. 또한 친족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성호는 선물을 보내 준 상대에게 한시를 지어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성호는 친족의 급제, 승진, 득남에 대해서는 축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친족의 죽음, 실아(失兒)에 대해서는 애도를 나타내기 위해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성호의 한시에서 친족 교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가문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성호는 친족 간의 교류를 통해 오도(吾道)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도에 대한 수호 의지가 가문의식의 계승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주제어: 성호 이익, 친족 교류, 경조사, 송별시, 만시, 가문의식

1. 서론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근기남인(近畿南人) 학자로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 역술, 그리고 서양의 학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부친 이하진(李夏鎭, 1628-1682)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인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중형(仲兄) 이잠(李潛, 1660-1706)이 희빈 장씨(禧嬪張氏, 1659-1701)를 옹호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호의 문집인 『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에는 과거제의 폐단에 대해 논한 <논과거지폐(論科擧之弊)>, 붕당의 원인에 대해 논한 <논붕당(論朋黨)>, 토지 제도에 대해 논한 <논전제(論田制)> 등 당시의 급선무를 언급한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그가 재야 선비의 입장을 대변하여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글들은 성호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를 실학자로 규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의 성호 문학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문학론(文學論) 및 시론(詩論)에 대한 연구¹⁾, 시 비평에 관한 연구²⁾, 시문에 담긴 실학적 성격을 밝힌 연구³⁾, 관물시(觀物詩)의 특징을 밝힌 연구⁴⁾, 해동악부에 관한 연구⁵⁾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의 도학자(道學者)들이 지닌 관념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성호의 문학은 주로 객관, 현실, 실천, 실용이라는 키워

1) 김용란, 『성호 이익의 문학론 연구』, 『漢文古典研究』 2-1, 성신한문학회, 1990, 170~197면.

김재룡,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 - 매화시를 중심으로 -』,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2, 207~227면.

이종묵, 『퇴계와 성호의 시학』,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71~106면.

최박광, 『성호 이익의 시론 - 실학과 문학관의 일단 -』, 『우리문학연구』 3, 우리문학회, 1978, 67~82면.

2) 허윤진, 『성호 이익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245~274면.

3) 김남형, 『성호문학의 실학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7, 한국실학학회, 2004, 55~87면.

4) 조창규, 『星湖 李瀼 觀物詩의 特徵과 倫理意識』, 『동양한문학연구』 16, 동양한문학회, 2002, 263~284면.

5) 김기영, 『이익 해동악부의 고려가요 가화 수용』, 『어문연구』 82, 어문연구학회, 2014, 75~97면.

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성호 문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밝혀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호의 문학, 특히 한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유시와 만시에 대해서는 다소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운숙⁶⁾이 성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자 그가 남긴 교유시와 만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교류의 범위를 친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재야에 머물렀던 성호가 가장 왕성히 교류했던 집단이 바로 친족이었으며, 실제로 그가 남긴 시문들에 친족에 대한 성호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성호의 친족 교류가 얼마만큼 활발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친족 교류의 양상을 만남과 이별, 선물의 수수, 축하와 애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친족 교류의 양상이 지닌 의미를 확인해 보면서 본고의 논지를 갈무리하도록 하겠다.

2.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범위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호의 한시는 약 631제 1,178수⁷⁾에 달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족을 포함하여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들과 관련된 시들을 교류인(交遊人)의 생년(生年)을 중심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6) 노운숙, 「星湖 李瀼의 挽詩와 交遊詩에 드러난 意識의 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2021, 189~234면.

7) 노운숙, 앞의 논문, 191면.

<표 1> 친족 교류와 관련된 성호의 한시

교류인 성명	관계 ⁸⁾	시제	비고
李夏鎭(1628-1682)	父親	<敬次先大夫四美亭韻>	
申必混(1657-1745)	妻三寸	<挽申僉知>	
李復休(1661-1733)	再從姪	<寄再從姪仁叔 復休 水使> <寄謝仁叔兵使惠扇> <謝仁叔兵使惠履黹鏡> <挽仁叔令公 三首>	
權 諷(1667-1747)	再從姪	<挽權同知 諷 二首>	李翼鎭의 외손
蔡彭胤(1669-1731)	查頓	<挽蔡參判 彭胤>	李孟休의 丈人
李聖休(1673-1717)	再從姪	<簡楊山老仙仍示再從姪千一 聖休 囿春諸公>	
李東煥(1681-1753)	三從孫		
李禎休(1673-1749)	三從姪	<與族姪國瑞 禎休 諸人同賦 次古韻>	
李國休(1675-1721)	再從姪	<送再從姪咸卿 國休 經歷之任開府> <輓咸卿>	
李龜休(1675-1735)	再從姪	<簡再從姪仲暉 龜休> <次仲暉> <送仲暉 敬差之行> <賀仲暉超擢拜承宣 二首 并小序> <送仲暉令公赴中和府>	
李彙晉(1677-1748)	四從孫의 查頓	<次李來慶 彙晉 韻 奉賀宋丈人壽陞通政階 四首> <送李來慶赴鏡城 三首> <寄鏡城李通判來慶> <送李來慶出宰咸安> <謝咸安使君惠扇> <挽李掌令來慶 三首>	李載德의 丈人
鄭尙驥(1678-1752)	三從孫壻	<鄭汝逸 尙驥 有書> <別鄭僉知汝逸 尙驥> <挽鄭僉知汝逸> <有懷>	李萬休의 사위
李東煥(1681-1753)	三從孫	<送族孫囿春 東煥 出宰扶安 二首> <簡寄囿春 二首> <次囿春持平寄來韻 二首> <謝囿春惠嘉蔬 并後敘> <寄楊江 二首> <挽囿春 四首>	
李陽煥(1681-1745)	三從孫	<簡寄檀軒>	
李億休(1681-1755)	再從姪	<小會次長卿韻 七首> <長卿見和復次 三首>	

李億休(1681-1755) 李東煥(1681-1753) 李陽煥(1681-1745)	再從姪 三從孫 三從孫	<再從姪長卿 億休 囿春 族孫雲仲 陽煥 與我同辛酉生而今五十四歲矣四人將 期會於海上先以詩寄之 二首>	
李彙升(1682-?)	四從孫의 查頓	<挽李進士 彙升>	李彙晉의 동생
金履萬(1683-1758)	從姪	<和金瑞山寄來韻 二首> <步金判監寄來韻 四首> <復次金仲綏寄來韻 四首> <挽金執義仲綏>	李殷鎭의 外孫
李志新(1684?-1754 ?)	먼치	<挽李志新>	李繼孫의 後孫
李鳳煥(1685-1754)	四從孫	<再和儀瑞進士>	
鄭璉(1687-1747)	大姑母의 曾孫	<挽鄭華玉 二首>	
李永胄(1687-1755)	查頓	<次李進士汝久 永胄 寄來韻> <次李進士汝久> <簡李汝久> <次李汝久寄來韻> <次李進士汝久寄來韻> <又次前韻 并序> <又次李汝久 二首> <謹步前韻 七首> <次李汝久寄來韻> <和李汝久志喜 二首> <再次 二首> <挽李進士汝久 二首>	李克誠의 伯父
李學休(1687-1765)	再從姪	<賀思卿二子成進士> <次思卿韻> <次思卿 三首> <和庇寒齋韻>	
李星煥(1689-?)	三從孫	<簡族孫天章 星煥>	
權貴經(1689-1753)	外從四寸	<內弟中行見和復步前韻> <哀中行 三首>	
鄭熙世(1689-?)	甥姪	<送鄭甥舜熙>	生父는 鄭德柱
李重煥(1690-1756)	三從孫	<族孫輝祖 重煥 有惠物 以詩答寄> <復次輝祖楓溪韻> <次輝祖佐郎陞秩韻>	
鄭熙夔(1690-1755)	三從外孫	<次鄭時中 熙夔 寄來韻 二首> <嘉邨送時中寄示大猷 二首> <送鄭幼章>	鄭德柱의 아들

		<和鄭時中寄來韻 三首> <挽鄭進士時中 三首>	
陸時敬(1694-1739)	彌甥	<別藍浦使君陸士懋 時敬> <挽陸藍浦士懋 三首>	
李景煥(1696-?)	四從孫	<伏枕寄同病者行甫> <寄族孫行甫 景煥> <送行甫>	
李學休(1687-?) 李景煥(1696-?)	再從姪 四從孫	<族孫仲明 庚煥 來訪再從姪思卿 學休 繼至次古韻 十八首>	
李泰周(1698-1748)	宗親	<挽李虞候 泰周>	
李載厚(1698-1773)	三從曾孫	<族人元博 載厚 正言錄示金剛詩步其韻 五首> <次元博韻 二首> <題元博金剛詩後 二首 并後敘>	
李昌煥(1699-?)	四從孫	<次族孫文甫 昌煥 梅花十絕>	
李明煥(1699-?)	三從孫	<謝李晦叔惠酒>	
李匡煥(1702-?)	四從孫	<題族孫明瑞 匡煥 易安齋 用其韻>	
李載華(1708-1754)	三從曾孫	<哀族人君西 載華>	
洪沃輔(1709-?)	三從孫壻	<送洪進士啓心 沃輔>	李國休의 사위
鄭恒齡(1710-1770)	三從曾外孫	<別鄭玄老 恒齡>	鄭尙驥의 아들
李秉休(1710-1776)	조카	<示從子秉休>	
權世櫛(1711-1752)	아들의 查頤	<示壽伯>	李九煥의 丈人
李亨煥(1712-1750)	三從孫	<族孫柔文 亨煥 失兒> <柔文見和又次韻寄示> <再和>	
李載熙(1712-1750)	三從曾孫	<族人載熙病歿其妻鄭氏從死>	
李孟休(1713-1751)	아들	<兒作立春詩戲題> <兒子孟休九歲 教之數碁三百註 了解意 賦此識喜 二首> <次兒子韻 二首> <孟兒讀書山堂 次退之韻>	
李玄煥(1713-1772)	三從孫	<送族孫星叟 玄煥>	
李載顯(1714-1769)	四從曾孫	<聞族孫儀瑞 鳳煥 長子載顯登第以詩賀之 三首> <再和孟揚先達 載顯 三首> <別孟揚之陽德縣任>	李鳳煥의 아들
李載道(1720-1736)	三從曾孫	<哀族人載道 二首>	
李克誠(1721-1779)	사위	<驢李甥德中 克誠> <寄示德中>	

		<示李甥 二首> <示李甥> <懷李甥 三首> <聞德中進士疾瘳> <懷李甥> <寄東牀 二首> <賀德中生男>	
李嘉煥(1722-1779)	從孫	<賀從孫吉甫 嘉煥 生男>	
李載峻(1725-1750)	四從曾孫	<聞族子載峻病歿妻安氏赴水死 三首>	
李福休(1729-1800)	族姪	<賀心休進士 二首>	
李九煥(1731-1784)	손자	<寄題小孫如達晬盤> <小孫九煥字辭>	
洪瞻漢(1734-1770)	從孫婿	<示洪生希倬> <謝洪希倬餉柿蓀>	
趙錫悌(?-?)	查丈	<次趙僉知 錫悌 重牢宴韻>	李沉의 장인
驪州李氏(?-?)	딸	<送女>	李克誠의 아내
李堂休(?-?)	三從姪	<謝族姪聖肯 堂休 惠竹帚> <送聖肯> <復次聖肯宗會韻 二首> <復次 二首> <謝聖肯惠紙> <悼聖肯>	
李大休(?-?)	再從姪	<別再從姪來卿 大休>	
李徵休(?-?)	再從姪	<送再從姪公瑞 徵休>	
李泰休(?-?)	再從姪	<玉峴留別再從姪亨伯 泰休>	
李璋休(?-?)	族姪	<別族姪聖玉 璋休>	

위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호는 주로 재종질(再從姪, 7촌), 삼종손(三從孫, 8촌), 삼종질(三從姪, 9촌), 사종손(四從孫, 10촌) 등 부계의 아래 항렬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이는 문집에 소재한 그의 시문이 대체로 중년 이후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즉, 성호가 항렬에 비해 나이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항렬이 성호와 같거나 높았던 인물들은 이미 세상을 뜬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부계의 아래 항렬 인물들

8) 교류인이 성호와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의 ‘인물관계정보’를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호는 처삼촌(妻三寸), 외종사촌(外從四寸) 등 처가나 외가의 일부 인물들과도 교류를 맺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돈이나 사위 등 혼맥을 통해 맺어진 친족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친족 간의 교류와 관련된 한시는 다양한 형태로 창작되었다. 우선, 성호는 친족들의 한시에 화차운(和次韻)을 남겼다. 일찍 세상을 뜬 부친 이하진의 시에 차운하여 <경차선대부사미정운(敬次先大夫四美亭韻)>을 짓기도 하였고, 사위 이극성(李克誠, 1721-1779)의 백부(伯父)인 이영주(李永胄, 1687-1755)의 시에 대해서는 1수의 화운시와 9수의 차운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차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성호는 <기재종질인숙 복휴 수사(寄再從姪仁叔 復休 水使)>나 <기경성이통판내경(寄鏡城李通判來慶)>, 또는 <간재종질중휘 귀휴(簡再從姪仲暉 龜休)>나 <간기단현(簡寄檀軒)>처럼 시제에 기(寄) 또는 간(簡)을 내세우며 시간(詩簡)을 짓기도 하였다. 여기서 시간은 시로 쓴 서간(書簡)을 의미하는 바, 주로 상대방과의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산문 서간과는 달리, 안부를 묻거나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는 등 감정의 교류와 좀 더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성호의 한시 가운데는 <송이내경부경성 삼수(送李來慶赴鏡城 三首)>나 <별정침지여일 상기(別鄭僉知汝逸 尙驥)>처럼 만남 이후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창작된 송별시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사이회숙혜주(謝李晦叔惠酒)>, <사족질성궁 당휴 혜죽추(謝族姪聖肯 堂休 惠竹帚)>, <사인숙병사혜애체경(謝仁叔兵使惠愛體鏡)>처럼 친족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써 시를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경사(慶事)를 축하하거나 조사(弔事)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시들 가운데 본고에서는 만남과 이별, 선물의 수수, 축하와 애도 등 교류의 실제적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1) 만남과 이별

오늘날은 친족과의 만남 및 이별이 매우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사건에 해당했었다. 동촌(同村)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직접 만나는 일보다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좀 더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호 역시 친족과의 만남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이별할 때에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래는 재종질(再從姪)인 이대휴(李大休, ?-?)와 이별하며 쓴 시이다.

瑣瑣南烹路劇艱 곤궁한 남행길이 몹시도 괴로울 터인데,
天寒驅馬入重關 추운 날씨에 말을 달려 겹겹의 관문으로 들어가네.
憂愁又逼陽生節 근심 중에 또 동지(冬至)가 가까워 오매,
夢想猶瞻月出山 꿈에서도 오히려 월출산(月出山) 바라보길 원하노라.
此會固知萍水合 이번 모임은 진실로 우연한 만남임을 알겠으니,
人情剛驗酒栢間 인정은 술잔 사이에서 바야흐로 증험할 수 있다네.
蘊眞亭上娟娟月 온진정(蘊眞亭) 위의 아름답고 고운 달을,
留作佗時別後顏 다른 날 이별 뒤의 얼굴로 남겨 두리.⁹⁾

1-2구에서는 성호와 헤어진 뒤 남쪽으로 돌아가는 이대휴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구의 남팽(南烹)은 ‘남쪽 지방의 요리’라는 뜻인데, 한유(韓愈, 768-824)가 <초남식이원십팔협률(初南食貽元十八協律)>

9)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2, 「시」, <別再從姪來卿 大休>. 본고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참고하였으되, 필요시 논자가 수정을 가하였다. 특히 시 번역의 경우, 意譯을 배제하고 直譯을 우선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에서 “내가 와서 이매(魑魅)를 막게 되었나니, 절로 남쪽 지방의 요리를 맛보는 게 마땅하도다. [我來禦魑魅 自宜味南烹]”라고 한 구절을 용사(用事)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남행길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말을 몰며 겹겹의 관문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이대휴의 남행길은 매우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3-4구에서 성호는 근심과 걱정 속에 꿈에서나마 월출산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대휴의 목적지가 월출산이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였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이렇듯 성호는 이대휴와의 이별을 매우 아쉬워하였는데, 이는 5-6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사람의 만남이 비록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성호에게 있어 친족 간의 인정(人情)을 증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7-8구에서는 만남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온진정을 배경으로, 이대휴에 대한 그리움을 길게 드러내었다. 주지하다시피 달은 그것이 지닌 형상과 속성 등으로 인해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다.¹⁰⁾ 위 시에서 성호가 온진정 위로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이대휴를 떠올리겠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는 두 사람의 만남이 한동안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자연스럽게 이별에 대한 성호의 아쉬움도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옥현(玉峴)에서 재종질인 이태휴(李泰休, ?-?)와 이별하며 쓴 시이다.

千里湖山落晚霜 천리 강산에 늦서리가 내리나니,

10) 리태극, 『한국 시가(詩歌)에서 본 달의 영상(映像) -한시(漢詩) 및 일시(日詩)와 견주어-』, 『세종학연구』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7, 29면.

行人去去旁松篁 행인은 송죽(松竹) 곁에서 멀어져만 가노라.
 來時歧路青淮店 올 때의 갈림길은 청회(靑淮)의 객점에서였고,
 今日交歡玉峴莊 오늘의 즐거운 사귄 곳은 옥현(玉峴)의 별장에서라네.
 信宿那無心上語 이틀 밤 묵으며 어찌 마음속 이야기 없었으리,
 風流不廢掌中觴 풍류는 손바닥 안 술잔을 버려두지 않았도다.
 匡塘終有分張地 끝내 이별해야 할 곳 있음을 건디기 어려운데,
 剛被提攜又遠將 억지로 이끌려서 또 먼 길을 가야 하네.¹¹⁾

1-2구에서는 성호와 이태휴의 이별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1구의 만상(晩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의 이별은 때늦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늦봄의 어느 날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구의 행인(行人)은 3구의 내시(來時), 4구의 신숙(信宿), 8구의 제휴(提携) 등의 시어를 통해 봤을 때, 성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즉, 여행의 경로에서 이태휴와 만남을 가졌던 성호가, 다시 여정에 오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3-6구에서는 이태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특히 3-4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청회의 어느 객점에서 잠시 이별하였다가 다시 재회한 것이었기에, 옥현에서의 교류는 성호에게 있어 더욱 각별함을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틀 동안 옥현의 별장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친족 간의 소회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7-8구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청회와 마찬가지로 옥현 역시 여정상의 경유지에 불과했기에 성호는 다시금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정된 이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현에서의 이별은 성호에게 청회에서의 이별보다 더 큰 아쉬움으로 다

11)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2, 「시」, <玉峴留別再從姪亭伯 泰休>.

가왔다. 전날 술잔을 주고받으며 나누었던 정회(情懷)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옥현에서의 즐거움을 뒤로한 채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호는 동행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먼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어렵다고 한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남 후의 이별이 아쉬움의 정서만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재회에 대한 기다림을 촉발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카인 정희세(鄭熙世, 1689-?)를 전송하며 쓴 시이다. 정희세는 정득주(鄭得柱, ?-?)의 계후자(繼後子)인데, 정득주의 부인은 바로 성호에게 있어서 어머니 권씨(權氏) 소생의 친누이였다.

難爲兄弟姓名香 난형난제라 성과 이름 향기로우니,
共說君家並蒂芳 모두가 그대 집안 두 꽃받침 아름답다 말하네.
進士遊街春日麗 진사 되어 유가(遊街)할 땐 봄 햇살이 빛났었고,
歸程出峽曉雲長 돌아가는 길 골짜기 나설 땐 새벽 구름 길었었지.
風光滿地行須攄 풍광이 곳곳에 가득하니 길을 가며 보았으리,
詩思擎空正未妨 시 생각이 허공에 솟구침도 거리낄 것 없고말고.
好待能成吾宅相 우리택상(宅相)이 될 수 있길 즐겨 기다리나니,
心期不許墮尋常 마음속 기대는 언제든 무너지지 않으리라.¹²⁾

1-2구에서는 정희세와 그의 친동생 정희기(鄭熙夔, 1690-1755)를 난형난제(難兄難弟)라 칭하며, 정씨(鄭氏) 집안의 두 꽃받침이라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한 살 터울의 정희세와 정희기 두 형제는 1723년(경종 3)에 열렸던 증광시(增廣試)에 동시에 합격하여 나란히 진사(進士)가 되었으니, 성호의 이러한 언급이 공허한 칭찬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3-6구에서는 정희세와의 만남과 이별에 대해 언급하였다. 3-4구의 내

12)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1, 「시」, <送鄭甥舜熙>.

용을 통해 성호와 정희세의 이번 만남이 정희세의 유가(遊街)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진사가 된 정희세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친족들을 찾아다니던 과정에서 외삼촌(外三寸)인 성호 역시 찾아 뵈게 된 것이다. 그리고 5-6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시 지을 생각이 넘쳤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짧은 만남을 끝낸 뒤 돌아가는 정희세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내었다.

마지막 7-8구에서는 정희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7구의 택상(宅相)은 ‘집터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진(晉)나라의 상서랑(尙書郎) 위서(魏舒, 209-290)가 고아가 되어 외가인 영씨(寧氏)의 집에서 길러졌을 때, 풍수가가 영씨의 새 집터를 보고서 귀한 외손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고사와 관련이 있다. 즉, 풍수가의 이야기를 들은 위서가 택상 이루기를 기약한 끝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듯이, 정희세 역시 집안을 일으킬栋梁지재(棟梁之材)가 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1719년(숙종 45)에 재종질 이국휴(李國休, 1675-1721)가 경력(經歷)으로서 개성부(開城府)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를 전송하며 쓴 시이다.

聞昔仙遊踏舊京	듣건대 예전에 선유(仙遊)로 옛 도읍에 갔다더니,
卽看冠蓋又西征	곧바로 행차가 또 서쪽으로 가는 것 보는도다.
十年郎署星文動	십 년 동안 낭관(郎官)으로 있다가 별자리를 움직이매,
三日鄉閭畫錦明	사흘 동안 고향 마을엔 주금(畫錦)이 밝으리라.
不惜清朝猶下位	맑은 조정에서 낮은 자리에 머뭇거림은 애석하지 않다지,
疇能榮養及專城	누가 능히 영예로운 봉양을 전성(專城)에 건줄 수 있으랴.
天磨山上春來約	천마산(天磨山) 위에 봄이 오면 만나자고 약속했으니,
飛鳥相將躡屨行	신발 날려 서로 장차 그곳으로 가리라. ¹³⁾

『성호사설(星湖僊說)』에 실려 있는 <송도몽시(松都夢詩)>에 따르면,

13)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1, 「시」, <送再從姪咸卿 國休 經歷之任開府>.

이국휴는 시강관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있을 당시, 대궐에서 숙직을 하다가 꿈에서 “황폐한 성엔 버려진 성가귀가 망루마다 나와 있고, 오래된 나무엔 갈까마귀만 이따금씩 찾아오네.[荒城廢雉樓樓出 古木寒鴉往來]”라는 내용의 시를 지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개성부 경력에 제수되었다고 한다.¹⁴⁾ 따라서 1-2구는 이국휴가 꿈속에서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부를 유람하였다가 곧바로 그곳으로 부임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3-6구에서는 새로 제수받은 개성부 경력이라는 관직이 지닌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이국휴는 1710년(숙종 36)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부터 주로 중앙의 낭관직을 역임하다가 개성부 경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이에 성호는 항우(項羽)의 금의환향(錦衣還鄉) 고사를 인용하며 재종질 이국휴의 승진을 축하해 준다. 그러나 성호가 단순히 품계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중시했던 것은 아니다. 5-6구에서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서는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더라도 애석해할 필요가 없지만, 고을의 수령이 되어 부모님을 봉양하는 전성지양(專城之養)에 건줄 만큼 영예로운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7-8구에서는 개성부에 위치한 천마산에 봄이 오거든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 8구의 비석(飛鳥)은 ‘신발을 날리다’라는 뜻인데, 후한(後漢) 때 신선술을 익힌 왕교(王喬)라는 이가 지방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황제를 알현할 때마다 하사받은 신발을 오리로 변신시켜 타고 다녔다는 전설을 용사한 것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에서도 가까운 친족과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성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14) 이익, 『성호사설』 권28, 『詩文門』, <松都夢詩>, “李弼善國休 字咸卿 余再從姪也 嘗入直禁中 夢有詩云 荒城廢雉樓樓出 古木寒鴉往來 不知為何兆 數日 出除開城 經歷 開城古都也 事果驗”

2) 선물의 수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시대 때에는 친족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 간의 정감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들이 주고받은 선물은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선물 안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애정, 그리고 감사가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재종질 이복휴(李復休, 1661-1733)가 안경을 보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쓴 시이다.

病眼昏花甚	병든 눈 흐려짐이 심해지더니,
玻瓈頓助明	유리가 문득 밝음을 돕는구나.
曾聞泰西制	일찍이 서양에서 만들었다 들었는데,
今自嶺南營	지금 영남의 병영에서 보내왔구나.
數墨纖毫別	책 읽으며 가는 글씨 구별되기에,
許珍拱壁輕	진귀함이 공벽(拱壁)을 가벼이 여길 만하다.
方徵駒馬變	바야흐로 망아지와 말의 변모 징험하노니,
強作少年情	애써 소년 시절 마음을 일으킨다네. ¹⁵⁾

먼저, 1-2구에서는 이복휴가 보내온 안경의 효용성을 이야기하였다. 『성호선생전집』에 수록된 시가 대체적으로 창작 시기에 따라 편차되었음을 고려할 때, 성호가 안경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의 나이 쉰 살을 넘긴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리고 성호가 <오십(五十)>¹⁷⁾에서 “나이 쉰 살이라, 선달그름 가까워지는데, 눈 어둡고 머리 센 채 내 집을 지키노라.[五十行年逼歲除 眼昏頭白守吾廬]”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

15)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2, 「시」, <謝仁叔兵使惠還鑲鏡>.

16) 권2의 <謝仁叔兵使惠還鑲鏡> 앞에 <五十>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17)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2, 「시」, <五十>.

이, 노년의 성호는 안질(眼疾)로 인해 서서히 시각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복휴가 선물한 안경은 밝음을 도와주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3-4구에서는 성호가 안경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에는 주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었는데, 안경 역시 마찬가지였다.¹⁸⁾ 그리고 4구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아마도 이복휴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있으면서 우연한 계기로 안경을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성호에게 보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복휴가 성호보다 약 20살 연상임을 고려한다면, 안질로 인한 고통에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안경을 선물로 보내 준 것이 아닐까 한다.

5-6구에서는 안경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성호가 안경을 공벽(拱壁)보다 더 진귀하다고 여긴 것은, 다시금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애체가(愛體歌)>¹⁹⁾에서 안경을 쓰고서 책을 읽으며 “오호라, 안경은 지극한 보배이니, 그 공력이 도리어 천금을 가버이 여길 만하네.[嗚呼至寶愛體鏡 厥功更大千金輕]”라고 읊은 것 과도 유사해 보인다. 끝으로 마지막 7-8구에서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각궁(角弓)>에서 “노쇠한 말 도리어 망아지 되어, 그 뒷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네.[老馬反爲駒 不顧其後]”라고 한 구절을 용사하여, 초심으로 돌아와 힘써 학문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음은 삼종질인 이당휴(李堂休, ?-?)가 종이를 보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쓴 시이다.

18) 진재교, 『조선조 후기 眼鏡과 文化의 生成 -안경으로 읽는 조선조 후기 문화의 한 국면-』, 『韓國漢文學研究』 62, 한국한문학회, 2016, 267-268면.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안경을 생산하기도 하였지만, 품질면에서 중국산 또는 일본산에 비해 뒤처진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19)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4, 「시」, <愛體歌>.

雲在青天紙一張 푸른 하늘에 있는 한 장의 종이 같은 구름을,
 阿誰翦出修文房 누가 잘라 내어 글방을 호사롭게 꾸몄는가.
 故人心旣無千里 그대가 먼 길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주었으니,
 跂女天章認七襄 기녀(跂女)가 천장(天章)을 일곱 번 옮겼을 알겠도다.
 友道曾留毛穎傳 벗과의 도리는 일찍이 <모영전(毛穎傳)>에 남았고,
 芳名強驗陟釐方 꽃다운 이름을 애써 척리방(陟釐方)에서 증험하네.
 音徽杳杳三年別 삼 년을 이별한 채 좋은 소식 아득하더니,
 憑仗歸荑悅豫長 보내온 선물로 인해 기쁨이 그지없도다.²⁰⁾

시의 전반부인 1-4구에서는 선물에 담긴 정성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1구에서는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선물로 받은 한 장의 종이를 동일시하였으니, 이를 통해 이당휴가 보내온 종이의 질이 매우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질 좋은 종이로 인해 평소 단출함을 유지했던 자신의 글방이 호사롭게 꾸며졌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물이 지닌 값어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 씬셈이었다. 실제로 3-4구에서 성호는 먼 길을 따지지 않고 선물을 보내 준 이당휴를 하루 동안 일곱 번이나 자리를 옮기는 직녀성(織女星)의 수고로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어지는 5-6구에서는 종이와 관련된 고사들을 동원하여 이당휴와의 우애를 드러내었다. 우선, 5구에서는 한유의 <모영전(毛穎傳)>을 언급하며 우도(友道)를 이야기하였는데, 종이가 붓과 더불어 문방사우(文房四友)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자연스럽게 <모영전>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영전>에는 모영(毛穎, 붓)이 진현(陳玄, 먹), 도홍(陶泓, 벼루), 그리고 저선생(褚先生, 종이)과 친하게 지내면서 출처(出處)를 함께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²¹⁾ 이처럼 성호는 붓과 종이의 관계를 자신

20)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3, 「시」, <謝聖肯惠紙>.

21) 『古文眞寶 後集』 권4, <毛穎傳> 일부, “穎 與絳人陳玄 弘農陶泓 及會稽褚先生 友善 相推致 其出處必偕 上召穎 三人者不待詔 輒俱往 上未嘗怪焉”

과 이당휴의 관계로 환치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6구의 척리(陟釐)는 태지(苔紙) 또는 측리지(側理紙)로, 여기서는 종이를 의미하는데, 방명(芳名)과 결부시켜 이해할 때 종이를 보내온 이당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성호가 이당휴의 선물을 이당휴와 동일시하며 소중히 여긴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7-8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사람이 3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소식조차 끊어지려던 차에, 이당휴가 마침 선물을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8구의 귀이(歸蕢)는 『시경』, 「패풍(邶風)」, <정녀(靜女)>에서 “교외로부터 떠 싹을 보내오니, 진실로 아름답고 또 진귀하도다.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미인이 준 것이라서라네.[自牧歸蕢 洵美且異 匪女之爲美 美人之貽]”라고 한 구절을 용사한 것이니, 이를 통해 성호가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성호에게 있어 이당휴의 선물은 그 안에 담긴 정성으로 인해 이당휴 자체를 만난 듯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던 것이다.

다음은 삼중손인 이명환(李明煥, 1699-?)이 술을 보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쓴 시이다.

閒卻陶家灑酒巾 한가로이 물러난 도잠(陶潛)처럼 두건으로 술 거르니,
 涼生老屋表清貧 서늘한 기운 나는 낡은 집은 청빈함을 드러내네.
 靑州忽見來從事 청주(靑州)에서 홀연히 종사관 온 것을 보고서는,
 白下還知有故人 백하(白下)에 도리어 그대 있는 것 알게 되었지.
 八月嘉蔬先促釀 팔월의 벼로 미리 술 빚기부터 재촉하였으리,
 十分眞味恰嘗新 부족함 없는 진미라 흡사 새로운 것 맛본 듯하네.
 堂中適有風流客 집 안에 마침 풍류 즐기는 객 있어서,
 共說交親老更醇 교제는 늙을수록 더욱 도타워진다 이야기하네.²²⁾

1-2구에서는 평소 이명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술과 연관

22)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4, 「시」, <謝李晦叔惠酒>.

된 고사를 활용하여 드러내었다. 즉, 팽택 영(彭澤令)으로 있다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르며 전원으로 돌아온 도잠(陶潛)이, 쓰고 있던 갈건(葛巾)으로 술을 거르며 청빈한 삶을 살았듯이, 이명환 역시 향리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풍류를 일삼았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5구의 내용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논밭의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음력 8월에 새로 수확한 햅쌀을 이용하여 술 빚기를 재촉하는 것은 도잠의 갈건통음(葛巾痛飲) 고사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3·4구에서는 이명환이 좋은 술을 보내온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선, 3구는 진(晉)나라 환온(桓溫)의 막하에 있던 한 주부(主簿)가 좋은 술은 청주종사(靑州從事)라 칭하고 나쁜 술은 평원독우(平原督郵)라 평했던 고사를 용사한 것이다.²³⁾ 그리고 4구의 백하(白下)는 명(明)나라 시인 사근(史謹)이 <송진광원환청평(送陳光遠還淸平)>에서 “백하교(白下橋) 가에 가서 술을 구하여, 청평위(淸平衛) 안으로 돌아가는 이에게 전달해 주리.[去沽白下橋邊酒 來送淸平衛裏人]”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즉, 백하(白下)에 살던 사근이 진광원(陳光遠)에게 술을 보냈던 것처럼 이명환이 자신에게 술을 보낸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라 하겠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술을 보내온 이명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였다. 햅쌀로 술 빚기를 재촉한 것도 성호에게 술을 보내기 위함이었는 데다

23) 이와 관련된 고사는 『世說新語』의 『術解』편에 수록되어 있다. 즉, 청주에는 齊郡이 있고 평원에는 鬲縣이 있는데, 齊는 臍[배꼽]과 통하고 鬲은 膈[가슴]과 통한다고 보아, 靑州從事는 술기운이 배꼽까지 내려가는 좋은 술을 의미하게 되었고, 平原督郵는 술기운이 가슴까지만 내려가는 나쁜 술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 청주종사와 평원독우는 모두 술을 의미하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으니, 李奎報(1168-1241)의 <麴先生傳>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권20, 「傳」, <국선생전> 일부, “曾祖 史失其名 祖 牟徙酒泉因家焉 遂爲酒泉郡人 至父醴始仕爲平原督郵 娶司農卿穀氏女 (中略) 州辟槽丘掾 未及就 又徵爲靑州從事”

가, 그 맛 역시 청주종사라는 호평에 걸맞게 진미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7구에서는 함께 술을 맛보던 풍류객의 입을 빌려, 나이가 들수록 도타워지는 친족 간의 교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선물의 유무(有無)나 귀천(貴賤)보다는 그것을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중요시하는 성호의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은 삼중손인 이동환(李東煥, 1681-1753)이 나물을 보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쓴 시이다.

龍門旨蓄國中名	용문산의 맛 좋은 나물이 나라 안에 이름났는데,
採採盈筐寄海城	광주리 한가득 캐고 캐어 바닷가 마을로 보내줬네.
珍重歸黃知自牧	보배롭고 귀중한 선물 교외로부터 왔음을 알겠나니,
商量投李合酬瓊	오얏 던져 주매 마땅히 옥으로 보답하길 생각해야지.
紫蝦盛鮑增新味	곤쟁이를 단지에 담아 보내나니 새 입맛을 돋우시게,
黃耳傳緘付故情	황이(黃耳)에게 서신을 전하여 오랜 정을 부치노라.
戲語權停還感動	농담은 잠시 그만두라는 말 도리어 마음을 움직이니,
朝朝對案識茲誠	매일 아침 밥상 대할 때 이 정성을 기억하시길.24)

1-2구에서는 이동환이 오늘날의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용문산에서 성호가 거주하던 안산군 침성리로 산나물을 보내 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용문산은 예로부터 좋은 산나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였는데, 이는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용문사채(龍門四菜)>에서 눈소(嫩蔬), 향소(香蔬), 신감채(辛甘菜), 산개(山芥) 등 네 가지 나물의 생김새, 향, 맛, 식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눈소와 향소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내면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하다’고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25)

24)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5, 「시」, <謝囿春惠嘉蔬 并後敘>.

25) 유득공, 『古芸堂筆記』 권1, <龍門四菜> 일부, “郡之菜 薄翠謂之嫩蔬 熊翠謂之香蔬 通稱嫩香蔬 饋遺京師故人及待過客 莫不欣謝 龍門之翠 名滿一國 至以爲畿內關東諸

이어지는 3-6구에서는 성호가 이동환의 선물을 받고 답례품을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우선, 3구의 귀이(歸蕢)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름다운 사람이 보내 준 선물을 의미하니, 여기서는 용문산의 산나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구는 『시경』, 「위풍(衛風)」, <모과(木瓜)>에서 “나에게 목이(木李)를 던져 주기에, 경구(瓊玖)로 보답하였다네.[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라고 한 구절을 용사한 것이다. 이어지는 5구에서는 성호의 답례품이 안산군 지역의 대표적인 물산 가운데 하나인 곤쟁이[紫蝦]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답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6구에서 심부름꾼[黃耳]을 통해 곤쟁이와 서신을 보내며 오랜 정도 함께 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7-8구는 후서(後敍)의 내용을 참고해야 무슨 뜻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후서에는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곤쟁이를 선물 받고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합니다.[令人感動]”라고 말하자, 곤쟁이를 보낸 이가 다시 “농담은 잠시 그만두십시오.[戲語權停]”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²⁶⁾ 즉, 성호는 자신이 들은 우스갯소리를 이동환에게 전하면서 그가 곤쟁이를 대할 때마다 자신의 정성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이라 하겠다.

3) 축하와 애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전통시대 때에도 친족 간에 경조사를 챙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 그리하여 성호는 친족의 급제, 승진, 득남에 대해서는 축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친족의 죽음, 실아(失兒) 등에 대해서는 애도를 나타내기 위해 한시를 창작하였다. 다음은 족질(族姪)

峯照見龍門處生翠 然後香而可噉云 可謂惑之甚也”

26) 感動은 곤쟁이로 담근 감동젓과 발음이 같고, 權停은 곤쟁이와 발음이 유사하다. (양기정 역, 『성호전집』 3, 한국고전번역원, 2016 참고.)

인 이복휴(李福休, 1729-1800)가 25세 때인 1753년(영조 29)에 진사시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며 쓴 두 수의 시 가운데 제2수이다.

嫣然喬木著天花 어여빠라, 교목(喬木)에 아름다운 꽃 피었으니,
 春色句回滿故家 봄빛이 끌려 돌아와 고가(故家)에 가득하네.
 久矣重榮徵卜筮 오래로다, 거듭된 영화가 복서(卜筮)를 밝힌 것이,
 謁來新譽說才華 오가는 이 새로운 영예에 빛나는 재주 말하누나.
 高堂莫恨渾頭雪 고당(高堂)께선 머리 온통 희어진 것 한하지 마소,
 壽爵羸添綴眼霞 축수하는 잔 가득 올리면 흐릿한 눈 붉어지리.
 病叟無緣叨慶席 병든 늙은이는 축하연에 참석할 길 없어서,
 一言要與萬人誇 한마디 말로써 만인에게 자랑코자 하노라.²⁷⁾

시제의 심휴(心休)는 이복휴의 초명인데, 예문관의 개명계사(改名啓辭)에 의해 1770년(영조 46)에 이복휴로 고쳐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우선, 1-2구에서는 성호가 위 시를 창작할 당시의 계절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이복휴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에 진사시에 급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구의 내용은 이복휴의 급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교목(喬木)을 이복휴의 집안, 요화(夭花)를 이복휴, 춘색(春色)을 급제 소식의 은유로 본다면, 훌륭한 집안에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 진사시 급제라는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였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6구에서는 이복휴의 급제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성호는 이복휴의 집안에 영화로운 일들이 거듭되는 이유를 복서(卜筮) 덕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이복휴의 급제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4구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인들 역시 성호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5구에서 성호는 이복휴의 부친인 이

27)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6, 「시」, <賀心休進士 二首> 중 제2수.

28) 석진주, 『李福休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면 참고.

속(李涑, ?-?)에게 늙음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복휴가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전도유망한 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6구에서는 과거 급제가 입신양명이라는 대효(大孝)의 실현임을 이숙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 7-8구에서는 현재 성호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복휴의 급제에 대해 다시금 축하를 전하였다. 7구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아마도 성호는 이복휴의 급제 축하연에 참석할 형편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쉬움이 위 시의 창작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접적인 방식으로 축하를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이에게 족질의 급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의도대로 성호의 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고, 문집에 수록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남게 되었다.

다음은 종손(從孫)인 이철환(李嘉煥, 1722-1779)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며 쓴 시이다.

汝爺年老鮮懽情 네 아비 연로한데 기쁜 일이 드물었고,
 汝亦無兒意不平 너 또한 아이 없어 마음 편치 않았었지.
 久矣祥占徵有夢 오래로다, 상서로운 점을 꿈에서 증험한 지가,
 果然宗子見維城 과연 성(城)과 같은 종자(宗子)를 보았도다.
 蚌胎得月珠長彩 조개가 달빛 얻어 품으매 진주 빛깔 길이 곱고,
 麟慶從天玉作名 기린이 하늘에서 내려오매 옥으로 이름 지었다네.
 傍祖如吾聞甚喜 방조(傍祖)가 듣고서는 내 일처럼 매우 기뻐,
 掀髯呼燭便詩成 웃으며 촛불 가져와 곧바로 시 지었도다.²⁹⁾

1-2구에서는 이철환이 아들 이재위(李載威, 1745-1826)를 낳기 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철환은 이광휴(李廣休, ?-?)의 장남이자 성호의 부친 이하진의 장증손(長曾孫)이다. 전통시대 때에는 대를 잇는

29)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6, 「시」, <賀從孫吉甫 嘉煥 生男>.

것이 곧 효의 실천으로 여겨졌기에,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이철환이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당시로써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이철환 혼자만의 근심이 아니라, 그의 부친 이광휴를 포함하여 온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어지는 3-6구에서는 이철환의 득남에 대해 언급하였다. 3구에서는 이철환이 꿈에서도 득남을 염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4구에서는 『시경』, 「대아(大雅)」, <판(板)>에서 “종자(宗子)는 성(城)과 같으니,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宗子維城 無俾城壞 無獨斯畏]”라고 한 구절을 용사하여, 마침내 가문을 이끌어 나갈 종손(宗孫)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5-6구에서는 조개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진주와 길조의 상징인 기린에 빗대며, 이재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그렇기에 마지막 7-8구에서 성호는 이철환의 득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소식을 듣자마자 위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그가 손자 이구환(李九煥, 1731-1784)의 돌잔치 때 지은 시 <기제소손여달수반(寄題小孫如達晬盤)>³⁰⁾에서 “아들 낳음은 비록 늦었어도 손자 낳음은 이르나니, 너의 아버지는 방년(芳年)인데 나는 늙어 잔약하네.[生兒雖晚早生孫 汝父芳年我老殘]”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신도 이전에 이철환과 동일한 고민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삼종손(三從孫) 이동환(李東煥, 1681-1753)이 죽었을 때 지은 네 수의 만시(挽詩) 중 제1수이다.

吾家曾說太湖公 우리 집안에선 일찍이 태호공(太湖公)을 얘기하니,
孔聖朱賢在壽中 성현이신 공자와 주자도 장수를 누리셨지.
君得耆齡余亦併 그대가 일흔 넘고 나 또한 그러한데,

30)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3, 「시」, <寄題小孫如達晬盤>.

生居雌甲死難同 살아선 동갑이나 죽기를 함께하긴 어렵구나.
 塵間獨住憐孤影 진세(塵世)에 홀로 머물며 외로운 그림자 가여우니,
 天上追陪挹舊風 천상에서 따라 모시며 옛 풍도를 추종하리.
 想到仙鄉如問訊 생각건대 선향(仙鄉)에 도달하여 소식 물을 듯한데,
 滄浪還有一漁翁 바닷가엔 아직도 어옹(漁翁) 한 명 있다네.³¹⁾

일찍이 성호는 자신과 동갑인 재종질 이억휴(李億休, 1681-1755)와 삼종손 이동환 및 이양환(李陽煥, 1681-1745) 등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그가 세 사람과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상기하며 쓴 시에서 “태어나서 54년의 세월을 겪었나니, 동갑에 동종(同宗)이라 넷이서 잇달아 자리했었지.[生來六九闊流年 同甲同宗席四連]”라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³²⁾ 그리고 이렇듯 가까이 지낸 친족이었기에, 이동환의 죽음은 성호에게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듯하다.

전반부인 1-4구에서는 이동환이 장수를 누렸다고 이야기하였다. 우선, 1구에서는 성호의 종백부(從伯父)이자 이동환의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인 태호(太湖)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이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하였으며, 2구에서는 공자와 주자가 각각 73세와 71세까지 살면서 장수를 누렸음을 상기시켰다. 이어지는 3-4구에서는 자신과 이동환 역시 70세를 넘겼기에 장수를 한 축에 속하지만, 함께 죽지는 못해 이동환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후반부인 5-8구에서는 홀로 남게 된 쓸쓸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성호는 이동환이 존재하지 않는 이승을 진세(塵世)로 명명한 뒤, 그곳에 홀로 거주하는 자신을 가여운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렇기에 자신도 이동환을 따라 천상의 선향(仙鄉)에 도달하여 옛 풍도를 따르길 소망한 것

31) 이억, 『성호선생전집』 권6, 「시」, <挽囿春 四首> 중 제1수.

32) 이억, 『성호선생전집』 권3, 「시」, <再從姪長卿 億休 囿春族孫雲仲 陽煥 與我同辛 酉生而今五十四歲矣四人將期會於海上先以詩寄之 二首> 중 제1수 일부.

이다. 그러나 소망과 달리 현실의 성호는 여전히 바닷가에 머무르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호의 쓸쓸함과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은 극대화되었다.

4. 결론: 친족 교류의 의미를 곁하여

지금까지 성호의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호의 문집에는 친족 교류와 관련된 한시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 실제적 양상은 주로 이별과 만남, 선물의 수수, 축하와 애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호의 한시에서 친족 교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호가 자신의 가문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 | | |
|--|---|
| (가) 四辛酉會合周旋
一甲子經臘五年
我已衰頽君豈免
生無愉樂死徒然
檀陰舊蹟人誰續
棗下遺歌事可憐
爲報楊江虛席久
不妨隨分重留連 | 네 신유생(辛酉生)의 모임을 주선함이 마땅하니,
한 갑자 지나고도 오 년을 더하였지.
나 이미 쇠퇴하매 그대 어찌 먼하리오,
살아선 유쾌한 일 없고 죽어서도 헛되다네.
박달나무 그들의 옛 행적을 누구라서 계승하랴,
대추나무 아래서 남긴 노래 일조차도 가련하다.
양강(楊江)에게 알리게나, 자리 비워둔 지 오래이니,
분수 따라 또다시 머물러도 무방하다고. ³³⁾ |
| (나) 吾家白峯子
名德與時殊
孰知旣餘慶 | 우리 집안의 백봉 선생은,
명망과 덕행이 당시에 남달랐지.
누라서 알았으랴, 여경(餘慶)을 기쁨이, |

33)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5, 「시」, <簡寄檀軒>.

神理必見符	신묘한 이치에 반드시 부합할 줄을.
曾孫玉無瑕	하자 없는 옥과 같은 증손자는,
才格冠衆儒	재주와 풍격이 유생들의 으뜸이었네.
傳聞初及第	전해 들긴대 이제 막 급제하매,
聲播倏滿都	명성이 퍼져 문득 도성에 가득하다지.
皆言賢者後	모두가 현자의 후예라고 말하나니,
條達有根株	가지 무성한 데는 뿌리가 있도다.
雲衢有路通	청운의 길 높이 통해져 있고,
舊物青氈俱	선조가 남긴 유업을 갖추었네.
尋緒方在茲	실마리 잇는 일이 너에게 달려 있으니,
屬望愼無孤	그 기대 삼가 저버리지 마시게. ³⁴⁾

(가)는 자신과 동갑내기인 삼종손 이양환에게 보낸 시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성호는 동갑내기 친족들과 즐겨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에서도 이양환에게 모임의 주선을 요청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5구에서 ‘박달나무 그들의 옛 행적’을 이야기한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서 박달나무 그들은 성호의 증조부(曾祖父) 이상의(李尙毅, 1560-1624)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거주했던 서울 정동(貞洞)의 집에는 세 그루의 박달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즉, 성호는 친족과의 만남을 통해 선조의 유업에 대한 계승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는 사종손 이봉환(李鳳煥, 1685-1754)의 맏아들인 이재현(李載顯, 1714-1769)이 문과에 급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축하를 전하며 쓴 세수의 시 가운데 제2수이다. 이 시에서는 선조 이항(李沆, 1636-1691)처럼 이재현 역시 명망과 덕행을 겸비하였다고 칭찬한 뒤, 그를 하자가 없는 아름다운 옥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에서와 마찬가지로

34)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4, 「시」, <聞族孫儀瑞 鳳煥 長子載顯登第以詩賀之 三首> 중 제2수.

35)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53, 「記」, <檀軒記> 일부, “北階有樹三株 一檀 其二皮深赤無香 俗稱赤木 亦壇之別種”

이재현이 선조가 남긴 유업을 이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호는 친족 간의 교류를 통해 당대 외면받고 있던 유학의 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 (㉞) 聞說君行上上游 듣건대 그대가 가서 상유에 오른다 하니,
 上游形勝合深求 상유의 빼어난 경치를 응당 구경해야 한다네.
 長洲叩壑晴搖月 긴 강물에서 뱃진 두드리매 맑은 달빛 흔들리고,
 仙峽栽花落遍流 신선 골짜기에 꽃 심으매 꽃잎이 물결에 떠가리.
 自古人情多著眼 예로부터 인정은 눈길 두는 데가 많은 법인데,
 卽今吾道付回頭 지금 우리 도는 머리 돌리는 데 부쳤도다.
 苓芝採採堪誰增 영지를 캐고 캐서 차마 누구에게 줄 텐가,
 爲問中阿偃蹇留 중아(中阿)에 누워서 머무는 이를 찾노라.³⁶⁾

- (㉟) 少年志高學 젊을 때 학문 수양에 뜻을 두고서,
 平步愼無失 차근차근 신중해야 실수 없다네.
 謂難心或怠 어려울 땐 혹 나태할까 생각하고,
 謂易宜戒忽 쉬운 일엔 의당 소홀할까 경계해야지.
 須念以魯得 모름지기 노둔으로 깨달았음 기억하노니,
 聖訓明如日 성인의 훈계는 해와 같이 분명하노라.
 所貴存三道 귀한 바는 세 가지 도를 보존하는 것,
 籩豆亦不必 형식적인 건 또한 필요치 않다네.
 乾乾夙夜箴 부지런히 <숙야잠>을 행하시게,
 耿耿惟親切 그 내용이 참으로 친절하다네.
 吾衰已無能 나 이미 노쇠하여 능력 없으나,
 耄言儻可恤 늙은이 말 가끔은 들을 게 있지.³⁷⁾

(㉞)는 사종손 이경환(李景煥, 1696-?)에게 부친 시이다. 이 시에서 성

36)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2, 「시」, <寄族孫行甫 景煥>.

37) 이익, 『성호선생전집』 권4, 「시」, <別族姪聖玉 瑋休>.

호가 이경환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5-6구에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당시 이경환은 어딘가로 유람을 떠났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성호는 좋은 경치에 눈을 돌리는 것이 인정에 부합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오도(吾道)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목의 즐거움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는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성호는 완물상지(玩物喪志)를 경계하면서 유학의 도를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7-8구의 내용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7구의 영지는 유학의 도를 상징하는 바, 이것을 ‘중아(中阿)에 누워서 머무는 이’, 곧 출사하지 않고 산림에 은거한 선비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성호는 당대 사회의 폐단을 몸소 겪으면서, 은사(隱士)만이 오도를 충실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기에 자신처럼 출사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이경환에게 자연스레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족질인 이장휴(李璋休, ?-?)와 이별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성호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장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시해 주었다. 우선, 1-6구에서는 학문 수양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점, 엽등(獵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나태함과 소홀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일반적인 학문 방법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7-8구에서는 (가)에서 강조한 오도의 정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질적인 행위나 실천이 형식적인 의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성호는 유학의 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성호는 가문에 대한 자긍심과 오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애정을 갖고서 친족과 교류하였다. 이는 그가 어려서 부친과 중형을 잃은 아픔을 통해 친족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집 소재 한시가 대부분 중년 이후에 지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년 이후의 성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과업은 가문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오도에 대한 수호 의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뒷받침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이익, 『星湖僿說』

이익, 『星湖先生全集』

김기영, 「이익 《해동악부》의 고려가요 가화 수용」, 『어문연구』 82, 어문연구학회, 2014, 75~97면.

김남형, 「성호문학의 실학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7, 한국실학학회, 2004, 55~87면.

김용란, 「성호 이익의 문학론 연구」, 『漢文古典研究』 2-1, 성신한문학회, 1990, 170~197면.

김재룡,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 - 매화시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2, 207~227면.

노운숙, 「星湖 李瀾의 挽詩와 交流詩에 드러난 意識의 一考察」, 『漢文古典研究』 42, 한국한문고전학회, 2021, 189~234면.

리태극, 「한국 시가(詩歌)에서 본 달의 영상(映像) -한시(漢詩) 및 일시(日詩)와 견주어-」, 『세종학연구』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7, 23~54면.

석진주, 「李福休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종묵, 「퇴계와 성호의 시학」,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71~106면.

조창규, 「성호 이익 관물시의 특징과 윤리의식」, 『동양한문학연구』 16, 동양한문학회, 2002, 263~284면.

진재교, 『조선조 후기 眼鏡과 文化의 生成 -안경으로 읽는 조선조 후기 문화의 한 국면-』, 『韓國漢文學研究』 62, 한국한문학회, 2016, 265~298면.

최박광, 『성호 이익의 시론 - 실학과 문학관의 일단 -』, 『우리문학연구』 3, 우리문학회, 1978, 67~82면.

허윤진, 『성호 이익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245~274면.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Relatives Social Intercourse in the
Seong-ho(星湖) Lee-Ik(李瀾)'s Sino-Korean Poetry**

Hwang, Myeong Hwan

This paper was written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relatives social intercourse in the Seong-ho(星湖) Lee-Ik(李瀾)'s Sino-Korean Poetry. So far, Seong-ho's literature research has achieved many achievements. However, by overemphasizing the Silhak scholar Seong-ho, his human aspect was treated somewhat negligently. In fact, the group that Seong-ho, who stayed in the countryside, interacted the most actively was relatives, and the Sino-Korean Poetry he left showed Seong-ho's interest in relatives.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scope of relatives social intercourse that appeared in he's Sino-Korean Poet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eong-ho interacted with the line below generation in the father's family. He also established social intercourses with figures from his wife's family or mother's family. In addition, in some cases, he actively interacted with relatives formed through marriage. Thus, Chaun-si(次韻詩), Letter written in poetry, and Sino-Korean Poetry of farewell were left in relation to the social intercourse between relatives. Alternatively, various forms of Sino-Korean Poetry were created to express gratitude for gifts or to respond to family event.

In the traditional era,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were not developed, so meeting and parting were very special events. In this situation, Seong-ho naturally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breakup with the object. At the same time, expectations for the opponent were also expressed. In addition, gifts exchanged between relatives had more than substance. Therefore, Seong-ho also wrote a Sino-Korean Poetry to express his gratitude to the person who sent the gift. In addition, Seong-ho also created a Sino-Korean Poetry to congratulate his relatives on passing an exam, promotion, begetting a son, and to express his condolences on the death of his relatives.

The reason why the social intercourse of relativ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eong-ho's Sino-Korean Poetry seems to be because he had high pride in his family. In addition, Seong-ho shared his perception of Confucianism through social intercourse between relatives because the will to protect Confucianism became an important basis for the succession of family consciousness.

Key Words: Seong-ho(星湖) Lee-Ik(李瀾), relatives social intercourse, family event, Sino-Korean Poetry of farewell, Mansi(挽詩), consciousness of the family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김종수*

— 목차 —

1. 문제의 제기
2. 청풍승평계의 출현 배경
3.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 1) 형식적 특징: 향약계(鄕約契)
 - 2) 기금(基金) 조성의 열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1893년에 출현한 청풍승평계는 청풍군 전래의 고전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국악단체다. 이 계가 출현한 이면에는 박효관·안민영이 주도했던 기존 서울의 승평계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뿐더러, 일제의 침략 야욕에 따른 민족문화의 수호 의지가 관여한 결과이기도 했다. 수좌·통집에서 교육·총율·율원에 이르는 직임 구성과 규약을 갖춘 청풍승평계는 약 25년 동안의 활동기를 거친 후에 일시 폐해졌으나, 1918년에 이르러 속수승평계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되어 1950년까지 건재를 과시한 악단이었다.

그런데 『제천군지』(1969)와 일부 향토지 외에는 연구 성과가 전무한 실정

* 세명대학교 강사.

이기에, 청풍승평계를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범주를 적용하여 순차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청풍승평계가 지닌 형식적 측면인 향약계적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 계가 기금 조성에 기울인 각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청풍승평계는 <여씨향약>에 연원하여 퇴계·율곡이 정착시킨 조선 향약의 특징을 다분히 간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승평계는 향약의 네 강목 중에서 덕업상권과 환난상휼의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는 가운데, 춘추 제회(齊會)와 상벌체계 등의 전통을 변개하여 원용하였음이 주목된다.

또한 총 20조로 이뤄진 자체적인 규약들 가운데서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7, 8조항에 달하는바, 이는 경제적 후원자가 전무했던 승평계가 악단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사안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 상벌·중벌·하벌 체계에 따른 벌금 미납자에게 출계(出契)를 명한 대목은, 향약의 출향(黜鄉)·출약(出約) 조치와 비견되는 내용으로, 승평계가 지닌 향약계적 특징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이 같은 재정적 노력에 힘입어 청풍승평계는 약 57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6.25 사변으로 인해 약기마저 유실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야 만다.

주제어: 청풍승평계, 속수승평계, 승평계, 향약계, 기금 운용, 국악관현악단

1. 문제의 제기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는 지난날 청풍군(淸風郡)이 지금의 제천시 청풍면으로 통합되기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향약계(鄉約契) 형식을 가차한 악단을 가리킨다. 청풍승평계는 구한말 무렵인 1893년(고종 30)년에 처음 결계(結契)되었고, 그로부터 25년 이후인 1918년에 이르러 속수승평계(續修昇平契)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되어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다가 1950년에 유발된 6.25 동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약기들이 유실되었고, 이후 세인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소멸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계에 대한 기록은 『제천군지(堤川郡

誌)』(1969)를 비롯한 향토지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사실마저도 망각되었을 정도로, 그동안 완전히 잊혀진 악단으로 머물러 있었다. 성운동의 위기론'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충청 지역의 일간지인 『중도일보』의 집요한 추적에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청풍승평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분적인 고증(考證) 작업이 이뤄지면서, 차츰 가시적 윤곽을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풍승평계가 존재했던 사실은 제천 지역과 국악계의 뜨거운 관심거리로 등장해 있는 상태다. 특히 승평계가 과연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이 계가 판소리의 남상(濫觴)일 것이라는 기대 어린 추론으로 들쭉이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기대와 추측성 의론은 역설적으로 청풍승평계가 그 실체적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줌과 동시에, 또한 이 계의 특징적 양상들이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청풍승평계를 대상으로 한 국악계 인사들의 논평은 내용적 차원인 악단의 특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형식적 측면인 향악계에 관한 언술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청풍승평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형식과 내용(form and contents)이라는 두 범주에 걸친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디 ‘내용과 형식’이란 객관적 실재와 사유라는 두 가지 본질적 규정을 통일성에서 반영하는 철학적 범주를 지칭한다. 이러한 범주 설정은 악단(樂團)과 계(稷)의 특성을 겸비한 승평계의 실체를 규명해 내는 작업에도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론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의 논의를 통해서도 일차적으로 청풍승평계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함과 동시에, 또한 이 계가 취했던 형식적 측면인 향악계로서의 특징을 면밀하게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승평계가 악단을 운영·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 조성

기울인 각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이번의 논의가 청풍승평계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는 도정(道程)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징검돌로 가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승평계의 출현 배경

굳이 독일의 철학자인 가다머(H.G. Gadamaer)가 설한 해석학적(解釋學的) 영향력(影響力)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연기적 맥락에서의 기원을 설정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1893년에 청풍군에 출현한 국악관현악단인 승평계의 경우도 몇 가지 측면에서의 선행된 원인(遠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내·대외적 차원에서의 사전 요인과 더불어, 청풍군 자체에서 제공한 내재적 요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선행 요인이 주목된다.

일단, 국내적 차원에서의 선행 요인으로는 1876년(고종 13)에 운애(雲崖) 박효관(朴孝寬, 1800~1880)과 그의 제자인 주옹(周翁) 안민영(安玟英, ?~?)의 주도하에 조직된 가곡풍류회(歌曲風流會)이자 교유(交遊) 단체였던 승평계(昇平契)의 영향을 지목할 수 있다. 물론 향토지인 『청풍지(淸風誌)』의 해당 내용의 저자는 청풍승평계는 박효관과 안민영이 주도한 승평계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청풍인 스스로 향악(鄉樂)을 전승하기 위해 결성한 율려(律呂) 단체임을 내세워 양자 간의 차별성을 애써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그 근거로서 첫째, 1876년에 박효관과 안민영이 지은 『가곡원류(歌曲源流)』는 악보가 없는 가곡과 시조집이었다는 점과 함께, 둘째, (박효관·안민영의) 승평계(升平契)는 가대(歌臺)를 설치하고 노래하는 계모임이었음에 비해, 청풍승평계는 전통적으로 율려를 계승한 악사(樂師)가 중심이 되어 악보와 악기를 가진 악단을 창단했다는 사실을 열거해 보았다.¹⁾

그런데 첫 번째 주장은 『가곡원류』가 악보를 대체 하는 형식으로 <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 등과 같은 해설문을 통하여 시조의 곡조 및 창법에도 유념했던 사실을 간과한 분석일뿐더러, 이 같은 『청풍지』의 지적이 박효관과 안민영이 조직한 승평계와 청풍승평계 간의 영향력 문제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또한 박효관·안민영의 주도하에 결성된 ‘승평계’라는 한자 표기도 청풍승평계와 동일하나, 이를 잘못 인지한 오류를 범하고도 있다.²⁾ 안민영이 승평계를 결성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3년 5월에 만든 친필본 개인 가집(歌集)인 『승평곡(昇平曲)』의 1면에는 ‘승평계하축(昇平禋賀祝)’이라는 글귀가 수록되어 있다.³⁾ 따라서 ‘승평계(升平契)’ 운운한 언술은 오류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설령 한자 표기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는 사실 또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려운 점이 엄존한다. 이처럼 두 계의 명칭과 한자 표기가 동일한 것은 청풍승평계가 박효관·안민영이 결성한 ‘승평계(昇平禋)’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방증해 주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예시한 『승평곡』의 <후서(後序)>와 청풍승평계의 서문인 <승평계서(昇平禋序)>는 두 계의 선후 관계와 영향력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계를 설립하여 이르기를, ‘승평계(昇平禋)’라 하니, 오직 환오연락(歡娛譚樂)하는 이것을 일삼았는데, 선생[박효관]이 실질적인 주맹(主盟)이셨다. ...(중략)... 아! 우리들은 살아서 성세(聖世)를 만났기에, 함께 수역(壽域)에 올랐으니 ...”⁴⁾

1) 류금열 편찬, 『淸風誌-淸風明月의 本郷-』, 淸風面, 2003, 785면.

2) 이창식도 『청풍지』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한 끝에, “박효관과 안민영의 승평계(升平禋)와 청풍인의 승평계(昇平禋)는 다르다.”고 서술했다. 이창식, 『제천 청풍호 주변의 구비자원과 인물의 스토리텔링』, 『인문사회과학연구』 21,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27면의 각주 36).

3) 김석배, 『昇平稷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학회, 2003, 254면.

4) “設稷曰, 昇平稷, 惟歡娛譚樂是事, 而先生主盟焉 ... 噫, 吾儕生逢聖世, 共躋壽域, 而上

“계를 뗏어 이르기를, ‘승평’이라 하였으니, 함께 수역(壽域)에 올라 환오연락(歡娛讌樂)하고, 관현(管絃)을 실어 경창(競唱)하면서 번갈아 화합함이 한 시대의 훌륭한 일인지라 ...”⁵⁾

최치순(崔致順, 1847~?)⁶⁾이 쓴 하단의 <승평계서>는 안민영의 <후서>와는 약 2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순은 안민영이 <후서>에서 선보인 ‘환오연락(歡娛讌樂)·공제수역(共躋壽域)’ 두 구절을 그대로 원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정황은 한두 사례에 국한되는 정도가 아니나, 일일이 다 제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후서>와 <승평계서>의 내용 구성은 상이하지만, 주요 화소(話素)가 차용된 정황만큼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1893년에 청풍군에 출현한 승평계는 기존 박효관·안민영의 그것을 선행 모델로 삼은 가운데, 이 지역만의 고유한 음악적 전통을 가미시키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계모임을 결성했던 것이다. 당시 청풍군은 후진(後津)·북창진(北倉津)·도곡진(陶谷津)·황강진(黃江津)·오강진(梧江津) 등과 같은 다섯 나루터가 대변해 주듯이 수운(水運)이 크게 발달한 요충지였고, 남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향하는 조곡(漕穀) 선박이 거치는 중요한 경유 지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시로 서울을 오가는 행각들을 통해서 진작부터 박효관과 안민영의 노인계(老人契)와 뒤이은 승평계의 활약상을 충분히 접할

有國太公 ...” 김석배, 앞의 글, 260면의 각주 17)의 원문을 재인용.

- 5)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堤川郡誌』, 上黨出版社, 1969, 263면, “結稷日昇平이니 共躋壽域하야 歡娛讌樂하고 載之管絃하야 競唱迭和가 一代勝事라.” 원문의 ‘結稷日’은 ‘結稷曰’의 오자로 보인다. <승평계서>는 『제천군지』의 전반부에 수록된 자료 화면에도 편집된 상태나, 글자체가 다소 희미하다.
- 6)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3면, “夫天地는 萬物之逆旅요 ... 吾儕之在此世에 有斯樂也이라. 歲在癸巳(高宗三十年 一八九三), 仲春 崔致順 序.” 당시 교독(敎督)을 맡았던 최치순은 총률(摠律) 이건룡(李建龍)과 함께 청풍승평계라는 악단을 실질적으로 이끈 핵심적인 인물로 보인다.
- 7) 淸風郡邑誌編纂委(가칭), 『忠淸北道各郡邑誌·淸風郡邑誌』, <道路>, 1899, 17~18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청풍승평계가 기존 박효관·안민영의 계모임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란 무척 자연스러운 문화적 접변(接變) 현상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청풍승평계가 박효관·안민영의 승평계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논의 중인 향악계로서의 형식적 특징과 함께, 청풍승평계의 경우 “전통적으로 율려를 계승한 악사(樂師)가 중심이 되어 악보와 악기를 가진 악단을 창단했다.”는 『청풍지』의 소개대로, 내용적 측면에서도 뚜렷이 변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사회의 음악을 근현대적인 악단 형태로 만들고, 모국 음악 언어의 정통성을 간직한 진보적인 단체로 판단된다.”는 국악계 인사의 진단도 참고가 된다.⁸⁾ 서울의 승평계와 구분되는 청풍승평계의 독자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또 다른 지면을 통해서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승평계라는 계명은 『맹자(孟子)』의 이른바 ‘천하평(天下平)’⁹⁾ 이념의 전면적인 실현, 곧 태평성대에 편승하였음을 언표한 어휘에 해당한다. 이처럼 계의 명칭을 승평계라 칭한 이면에는 박효관과 안민영의 강력한 경제적 후원자였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그의 장남인 이재면(李載冕, 1845~1912)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풍승평계가 출현한 1893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조선에 대한 일제(日帝)의 병탄(併吞) 야욕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실제 청풍승평계가 등장한 지 불과

8) 『중도일보(2021.11.29.)』: ‘제천 청풍승평계의 재발견’. 인용한 문장은 국악음반 박물관의 노재명 관장의 인터뷰 내용임. 다만, “외래 음악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진단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듯해서 제외시켰다.

9) 『孟子集註』, 『離婁長句(上)』의 제11장, “孟子曰, 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其親, 長其長而天下平.” 국가 구성원의 전면적인 복지 실현을 뜻하는 ‘천하평’은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 이념과도 상통하는 맥락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기(禮記)』의 『예운(禮運)』편에 잘 드러나 있다.

2년 뒤인 1895년에는 일제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단발령 조치가 전격적으로 명해지면서 억압받던 조선 민중의 심기를 한층 더 자극하고 있었다. 이에 동년 10월에 이르러 위정척사(衛正斥邪) 계열의 유생들이 주도한 을미의병(乙未義兵)은, 청풍승평계의 출현이 대외적·시대적 배경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1899년(고종 36) 경에 편찬된 관찬(官撰) 읍지류인 『청풍군읍지(淸風郡邑誌)』의 <조적(糶糶)> 조항에는 을미의병의 후속 여파가 청풍군에 들 이닥친 정황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음이 주목된다.

“1895년[甲子]에 합록미(合錄米) 468석(石) 7두(斗) 6승(升) 8합(合)을 사환미(社還米)로 옮겨 적었으나, 1896[丙申]년 봄에 비도(匪徒)들에게 손실을 당하고 말았다.”¹⁰⁾

윗글에서 의병을 무기로 무장한 비적 무리인 ‘비도(匪徒)’로 표현한 것은, 근왕창의(勤王倡義)의 기치 아래 일으킨 최초의 대규모 항일의 병운동인 을미의병을 폄하하기 위한 일제 측의 교활한 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위의 글은 호조(戶曹)에 등록된 정부미인 합록미를 절량(絶糧) 농가를 위한 응급적 구제책인 사환곡(社還穀)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나, 이를 을미의병이 탈취한 데 따른 당혹스러움이 드러나 있다. 물론 상기 인용문은 1893년에 청풍승평계가 출현한 직접적인 배경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윗글은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했던 일제의 침탈 야욕에 대한 19세기 후반 조선 민중의 대응 양상의 일단을 대변해 주고 있을뿐더러, 청풍승평계 또한 그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군민(郡民)들이 표출한

10) 淸風郡邑誌編纂委員會(가칭), 『忠淸北道各郡邑誌·淸風郡邑誌』, <糶糶>, 8~9면, “甲子, 合錄米四百六十八石七斗六升八合, 移錄社還米, 丙申春, 匪徒處見失.” <조적>은 조선시대 때 상평창(常平倉)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타의 읍지류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항목이다. 한편 원문의 ‘갑자[1864]’는 1894년인 ‘갑오(甲午)’의 오자인 듯하다.

민족의식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해 주고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승평계를 “자손 후세에 전승하여, 한없이 긴 세월 동안, 차례차례 계승하여 입회할 일”을 제시한 규약 제9조를 통해서도,¹¹⁾ 판단의 적실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즉, 이 규약 속에는 조만간에 직면하게 될 암울한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청풍군 전래의 음악적 전통이 중단없이 계승되길 바라는 계원(契員)들의 간절한 염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악학자인 노재명이 청풍승평계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는 당시 전승이 위태로운 국악을 살리기 위한 제천 청풍면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악 사랑, 애향심, 자부심이 충만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라고 진단했던 것도 유사한 맥락인 것이다.¹²⁾ 이 같은 청풍인들의 계승의식을 교감 최치순은 <승평계서>를 빌려서 아래처럼 천명해 두었음이 주목된다.

“하물며 호서(湖西)의 승구(勝區)는 사군(四郡)이요, 사군의 별계(別界)는 청풍이라, 한벽루[碧樓] 8경이 포상(蒲湘)과 다름이 없음이요 ... (중략)... 이런 까닭에 야유가인(冶遊佳人)과 풍류재자(風流才子)가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느니라 ... (중략)... 이에 곡보(曲譜)의 말미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렀었을 적에, 이 악(樂)이 있었음을 알게끔 하노라.”¹³⁾

11)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傳之子孫後世하아 億萬斯年에 次次繼入 할事.

12) 『중도일보(2021.12.27.)』: 청풍승평계→‘속수(續修)승평계’로 25년만에 세대교체...의미는?

13)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3면, “何況湖西之勝區는 四郡也요 四郡之別界는 淸風也라, 碧樓八景이 無異於蒲湘이요 ... 以故로 冶遊佳人과 風流才子가 從古不絶이라 ... 爰錄於曲譜之末하야 使後來之人으로 吾儕之在此世에 有斯樂也이라.” 사군은 호좌권인 제천·단양·청풍·영춘을 가리킨다, 한편 운위된 ‘포상’이란 포상팔경병풍(蒲湘八景屏風)이라는 문구가 시사해 주듯이, 과거 중국의 대표적인 경승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위 인용문 후반부에는 승평계 규약 제9조와 동일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향악(鄉樂)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동시에 윗글은 수승한 형승(形勝)을 갖춘 청풍군의 정경과 더불어, “야유가인(冶遊佳人)과 풍류재자(風流才子)가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 전래의 고유한 국악적 전통을 아울러 확인해 보이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은 자체적으로 독특한 음악적 전통을 유지해 왔던 청풍군의 오랜 전통이란, 1893년에 이르러 승평계를 결성토록 추동한 내재적 요인으로 규정할만한 소지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지역 내에서 오래도록 전승되어 온 내재적 요인이 부재한 상태였다면, 『벽암록(碧巖錄)』의 이른바 ‘줄탁동시(啐啄同時)’와 같은 계기적 사건을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제시한 국내·대외적·내재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계류된 끝에 등장한 청풍승평계가 취한 제반 양상들 중에서, 특히 형식적 측면에서 향악계라는 외형을 취했던 장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토록 하겠다. 또한 계의 주요 <규약>들 중에서 기금의 모금과 유지를 위해서 애썼던 정황과 그 이면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와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들 두 사안은 청풍승평계가 전신한 내용적 차원에서의 여러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1) 형식적 특징: 향악계(鄉約契)

구한말인 1893년에 이르러 빼어난 “형승(形勝)이 호서(湖西) 제일의 물가 고을[洲]¹⁴⁾이라는 예찬을 받았던 청풍군에 출현한 승평계의 경

우,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층차(層差)를 간직한 독특한 유형의 계 조직이자 국악관현악단이었다. 청풍 지역의 승평계는 고종(高宗) 33년 2월 [仲春]에 청풍의 유지(有志) 33인이 회합하여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 506률(律)을 계승·보존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직된 악단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⁵⁾ 그런데 청풍승평계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규약(規約)들이 향약의 절목(節目)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향약계(鄉約契)의 특성을 아울러 내포한 계 조직의 일환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 측면에서는 향약계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악단을 지향한 향리 사회 내의 자율적인 국악 단체였던 것이다. 이에 당시 승평계가 원용한 주요 규약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약계로서의 면모를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때 꽃을 피웠던 향약이란 북송(北宋)의 여대림(呂大臨) 4형제가 1076년에 제시한 <여씨향약(呂氏鄉約)>에 연원한 향촌 자치 규범을 가리킨다. 원래 <여씨향약>은 <향약> 1권과 <향의(鄉儀)> 1권으로 구성된 체계였으나, 남송(南宋)의 주희(朱熹, 1130~1200)[주자]가 그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주희도 <여씨향약>에서 선보인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라는 네 부류의 강목(綱目)은 그대로 계승하였다. 네 강목은 향약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이자 원리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주희는 네 종류의 강목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지침이자 절목들을 시공(時空)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함으로써,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응용의 소지를 다양하게 유인하는 이론적 조처를 완료하게 된다.¹⁶⁾ 또한 주자학(朱子學)

14) 李鐘垠 편역, 『題詠』, <寒碧樓>, 내제문화연구회, 1996, 170면, “玉欄流枕江流, 形勝湖西第一洲 ... 亂峰殘雪又登樓.” <한벽루>는 한국고전번역원에 수록된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8~1609)의 문집인 『아계유고(鵝溪遺稿)』에는 누락된 상태다.

15)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2~263면.

을 관학으로 채택했던 조선 왕조에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가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접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도입함으로써, 향촌의 도덕적 교화와 질서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총 20조항으로 이뤄진 청풍승평계 규약 중에서 일부 조항들이란, <여씨향약>에서 제시한 네 강목인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지침인 절목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청풍승평계의 경우 <승평계서(昇平稷序)>에서 강목인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는 승평계가 내용 면에서 향약 자체를 추구한 계모임이 아니었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강목으로 대변되는 향약계의 특성이 승평계의 저변을 관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단, 규약의 입안자인 최치순은 제1조를 통해서 “계 모임[稷會]의 원정일(元定日)을 매달 16일로 하는 일”¹⁷⁾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날 회동한 계원 혹은 ‘율원(律員)’¹⁸⁾들은 하루 종일 음악 연습을 행하였기에, 제1조는 승평계가 존재하는 이유와 직결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던 사실은 『중도일보』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며, 어느 때는 계속해서 집결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지속적으로 모여서 준비에

16) 이근명, 『朱熹의 <增損呂氏鄉約>과 朝鮮社會-朝鮮鄉約의 特性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한국중국학회, 2001, 277~281면.

17)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稷會元定日是 每朔 十六日로 할事.” 모든 규약은 모두 ‘一’로 매겨져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8) 본디 율원이란 조선시대 때 형조에 소속된 관청인 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 관원을 말한다. 그런데 청풍승평계의 <좌목(座目)>에는 계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율원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고전 음악 506률(律)을 계승하는 단원이라는 의미로 해독된다.

박차를 가하곤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회동 건을 언표한 또 다른 규약인 제3조는 “매년 봄·가을의 일제히 모여서[齊會] 즐겁게 노닌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일제히 한 자리에 모인다.[齊會]”는 대목이란, 향약의 ‘춘추 제회(齊會)’라는 의식을 원용한 표현이다. 대개 좋은 날로 잡쳐진 당일에 구성원들은 약문(約文)을 낭독하고, 봄에는 향음주례(行鄉飲酒禮)를, 가을에는 향사례(鄉射禮)를 거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²⁰⁾ 즉, 춘추 제회 시에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시행을 통해서 향약 구성원[約中]들의 친목과 유대를 다졌던 전통을 ‘승유(勝遊)’로 대체했던 것이다. 아마도 매달 한 차례의 야유회인 ‘승유’를 통해서 그간 연습한 춤·노래에 관현악이 버무리진 국악 한바탕이 연출되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승풍계가 향약의 전통을 계승하되, 그들의 실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내용을 변개하여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가 하면 아래의 제4·5·7조의 경우, 기존 향약의 절목들을 그대로 준용(準用)하고 있음이 자못 주목된다.

“하나, 계모임 시에 여러 계원들 중에서, 혹여 술주정 부리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발생하면, 중벌(中罰)로써 나무라는 일.

하나, 만약 젊은이가 연장자를 능멸하고,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 서로 싸우고 다투는 폐단에 이르면, 상벌(上罰)로써 나무라는 일.

하나, 여러 계원들 중에서 애경간(哀慶間)에 처해 있으면, 계원 전체[稷中]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부조(扶助)하고, 일제히 나아가 문안[問]할 일.”²¹⁾

19)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每年 春秋에 齊會勝遊而有實故...” “매년 춘추에 모든 회원은 승경을 유람하고”라고 오역한 『청풍지』(780면)의 것은, 향약과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20) 『華山集』 卷9(한국문집총간 續102), 『雜著』, <立約凡例(各里有上別檢一員, 下色掌一人)〉, 한국고전번역원, 2010, 406면, “一, 春秋卜日, 約內諸員齊會, 春行鄉飲酒禮, 秋行鄉射禮, 讀約文.”

21)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稷會時에 諸員中 或有酌酒作拏之弊,

위의 인용문은 청풍승평계가 향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여실히 방증해 주고 있다. 즉, 앞에 배치된 제4, 5조의 경우, 향약을 지탱하는 세 강목인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를 실천하기 위한 절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맨 뒤의 제7조는 환난상휼에 상응하는 지침에 해당한다. 율곡은 “환난(患難)의 일곱 가지” 종류를 ‘수화(水火)·도적(盜賊)·질병(疾病)·사상(死喪)[상장]·고약(孤弱)·무광(誣枉)[무고]·빈핍(貧乏)[빈곤]’으로 규정한 바가 있고,²²⁾ 이 내용은 여타의 절목 입안자들에게 그대로 통용되게 된다. 실제로는 상장례(喪葬禮)나 화재(火災) 등이 환난상휼의 주를 이룬데 비해서,²³⁾ 청풍승평계의 경우 경사(慶事)도 상호부조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눈길을 끌게 한다. 그런데 율곡의 <입약범례(立約凡例)>를 통해서도 확인되듯,²⁴⁾ 실제 입안된 절목의 사례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편이다. 아마도 상기 인용문의 제4조는 술과 친연적인 관계가 있는 악단의 현실을 감안한 규약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5조는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분포를 보여주었던 승평계의 인적 구성²⁵⁾에서 파악하는 문제를 대비한 듯하다.

則施以中罰할事; 一, 或有以少凌長하고 以强侮弱하야 至於鬪鬪之弊, 則施以上罰할事; 諸員中有慶哀問에 自稷中으로 收議扶助하고 一齊히 進問할事.”

22) 『栗谷全書 I』 卷16(한국문집총간 44), 『雜著(3)·海州鄉約』, <立約凡例>, 민족문화추진회, 1986, 353~354면, “患難相恤: 患難之事七, 一曰水火 ... 二曰盜賊 ... 三曰疾病 ... 四曰死喪 ... 五曰孤弱 ... 六曰誣枉 ... 七曰貧乏.”

23) 『華山集』 卷9, 『雜著』, <立約凡例>, 406면, “一, 喪葬火災, 約中之人, 愀然不救, 則亦爲論罰事.”

24) 『栗谷全書 I』 卷16, 『雜著(3)·海州鄉約』, <立約凡例>, 344~357면, “立約凡例: 一, 初立約時, 以約文徧示同志 ... 尊者以下皆以副正之年計之.” 네 강목마다 절목이 부여된 <입약범례>는 10면을 약간 상회하는 분량이다.

25) 『堤川郡誌』의 <4. 좌목(座目)>(265~267면)에는 총인원은 30명으로 구성된 회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2명, 20대: 7명,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총원 30명은 당초 천명했던 “계료단(稷僚段)은 三十三人”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때문에 두 조항을 위배한 계원에 한해서는 각기 동전 2냥과 3냥에 달하는 벌금형²⁶⁾을 부과하는 제재책을 적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승평계에 적용된 상벌(上罰)·중벌(中罰)·하벌(下罰) 체계의 경우, 여타 향약의 그것과는 달리 모두 벌금형으로 대체한 특징이 있다. 예컨대 율곡은 과실상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반했을 때, 상벌로 “사류(士類)는 뜰에 서서 (잘못한) 일을 의론하여, 과한 뒤에 그친다.”고 했고, “하인(下人)은 볼기 40대를 친다.”고 규정한 바가 있다.²⁷⁾ 이처럼 공개 면책(面責)이나 태형(笞刑)을 가하는 대신에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거론할 계획이다.

한편 청풍승평계의 경우도 직임(職任)의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계규(稷規)의 후반부인 제12~19조항을 통해서 차례대로 기술해 두었다. 이 방식 또한 기존 향약의 직임을 참조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도약헌(都約憲)·부약헌(副約憲)·장의(掌儀)·공원(公員)·유사(有司) 및 ‘상별검(上別檢)·하색장(下色掌)’²⁸⁾ 따위로 구성된 향약의 직임 체계²⁹⁾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청풍승평계는 독자적인 직임의 명칭을 사용했고 직책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자세히 밝혀 두었다. 규약을 통해서 제시한 직임을 열거하자면, ‘수좌(首座)·통집(統執)·교독(敎督)·총율(摠律)·수주찰(首周察)·부주찰(副周察)·상영사(上領司)·부영사(副領司)’의 순서대로 정리된다.³⁰⁾ 첫 번째 직임인 수좌는 본래 참선(參禪)에 전념하는 선승(禪僧)을

26)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上罰 三兩, 中罰 二兩, 下罰 一兩事.”

27) 『栗谷全書 I』 卷16, 『雜著(3)·海州鄉約』, <立約凡例>, 358~359면, “上罰 士類則立庭議事, 罷後乃止 ... ○下人則答四十.”

28) 『華山集』 卷5, 『雜著』, <立約凡例(各里有上別檢一員, 下色掌一人)>, 406면.

29) 이 직임 구성은 공주 출신의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 1750~1824)이 입안한 ‘화산 향약’의 것을 예시한 것이다. 김종수, 『화산 정규한의 ‘화산 향약’과 향촌 자치 구상』,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 3호,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22, 201면 참조.

30)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265면.

가리키는 불교의 용어나, 향약의 ‘계장(契長)’³¹⁾이나 도약헌에 준하는 맨 윗자리 지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풍승평계가 지향한 국악관현 악단적 특성상 감독·지휘자에 해당하는 직책인 교독과 총율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좌목>에서는 ‘교독·총율·율원(律員)’의 순서대로 회원 명단을 제시했는데, 이는 교독·총율이 악단의 율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 절차로 악단의 정원(定員)과 입회(入會) 조건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최치순은 마지막 제20조를 통해서, “계의 동료[稷僚] 구성[段]은 33인이며, 외부[外]에서 비록 입회[入]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규약을) 고쳐서 절대 입회를 허락하지 말 일”³²⁾을 제시해 두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악단의 최종 인적 구성은 30명으로 집계되었기에, 애초 구상한 33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 대목은 청풍승평계의 입회 자격을 철저히 청풍군에 한정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향약 구성원인 약원(約員)을 특정한 향촌 내부에 한정시킨 전통과 궤를 나란히 하는 자격 설정인 것이다. 물론 외지인의 경우 정일(定日)인 매달 16일마다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1899년(고종 36)을 전후로 한 시기에 청풍군의 인호(人戶)[인가]는 2,636호였고, 남자 4,269명[口]에 여자 3,553명의 인구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³³⁾ 아마도 율원으로 선발된 30인은 예술적 잠재력이나 기량이 빼어난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이 규약은 악단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어 43명의 단원을 거느

31) 『栗谷全書 I』 卷16, 「雜著(3)」, <西原鄉約>, 342면, “條目: ... 每掌內, 各置契長一人(淸州二十五掌內也.)”

32)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5면, “稷僚段은 三十三人이며 外雖有願入者라도 更勿許入할事.”

33) 淸風郡邑誌編纂委(가칭), 『忠淸北道各郡邑誌·淸風郡邑誌』, <風俗·戶口>, 7쪽, “人戶二千六百三十六戶, 男四千三百六十九口, 女三千五百五十參口.”

렸던 1918년도의 청풍면(淸風面)의 속수승평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듯하다. 구성원들의 본관만 소개한 청풍승평계의 <좌목>과는 다르게, 속수승평계의 회원 명단에는 단원들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다.³⁴⁾ 조선 총독부가 1914년도에 단행한 군면(郡面) 폐합(廢合) 조치에 따라 기존 청풍군은 청풍면으로 조정되면서 제천군에 통합된 상태다. 속수승평계의 인적 구성은 청풍면 출신이 주류를 형성한 가운데, 인접한 금성·수산·덕산면 및 제천읍에 거주하던 동호인들이 부분적으로 합세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적시한 지역 외의 인사들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1918년도까지도 속수승평계는 향약계적 입회 조건이 연장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기를 전후로 한 무렵에 이르도록 서구의 새로운 음악 사조와는 분명한 거리를 둔 채 속수승평계가 운영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외지인의 입회를 불허한 제20조가 속수승평계가 종식되기 이전 시기까지 여전히 유효한 규약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기금(基金) 조성에의 열의

서울의 인왕산(仁王山) 필운대(弼雲臺) 일원을 무대로 삼아 풍류판을 벌였던 가곡풍류회인 승평계의 경우, 당대의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그의 장남인 완흥군(完興君) 이재면 양인(兩人)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다.³⁵⁾ 가곡풍류회인 승평계도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 단체이니만큼, 이 조직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금 조성이 필요했고, 이를 흥선대원군 부자가 물

34) 류금열 편찬, 『淸風誌-淸風明月의 本郷』, 783면에 수록된 ‘청풍 속수승평계 좌목’에 나타난 주소지별 인원수는 이하와 같다. 청풍면(24명)·금성면(14)·수산면(3)·덕산면(1)·제천면(1).

35) 권두환, 『朝鮮後期 時調歌壇 研究』,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71~79면.

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까닭에, 의도적으로 태평성대를 뜻하는 ‘승평’을 계의 명칭으로 내세웠던 것이다.³⁶⁾

그러나 경제적 후원자가 없이 내륙 깊숙한 산간 지역에서 출현한 청풍승평계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때문에 이들 청풍승평계 구성원들은 계를 결성할 당시부터 자체적인 차원에서 악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의 당위성과 그 용도를 규약 제2조를 빌려서 아래와 같이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다.

“하나, 제현(諸賢)은 10냥씩을 각출(各出)하여 계를 설립하고, 다달이 거둬들이는 이자[月收]로 번리를 늘려서, 악기를 조성하거나 파손에 따른 수리[修·보수[補]]를 위하게끔 하는 일이라.”³⁷⁾

위 인용문에 드러나 있듯이 승평계 가입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계원들이 각기 “10냥씩을 각출(各出)하는” 일이었다. 총원이 30인이었으므로 조성된 300냥을 종잣돈으로 삼아, 그 이자로써 악기를 구입하고 수보(修補)하는 등의 경비에 충당한다는 구상이 설계(設欸)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입회와 연계된 치밀한 기금 조성 전략이란, 상기 인용문인 제2조에만 국한되는 정도가 아니었다. 즉, 최치순은 “계가 설립된 뒤에, 혹시 입회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를 포함해서, 여타의 예상되는 사례들에 대한 규약을 아래처럼 별도로 제시해 두었음이 눈길을 끌게 한다.

“하나, 계가 설립된 뒤에, 혹시 입회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금년은 10냥으로 입회를 허락하고, 내년부터는 몇십 년 뒤에 이르더라도 15냥으로써 입회를 허락한다. 그리고 원계원(原欸員)의 자손 중에서 대리로

36) 김석배, 앞의 글, 257면.

37)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諸賢의 各出什兩式하여 設欸而以月收로 取殖하여 俾爲惡器造成而 隨破修補事다.

입회하면, 전단(錢段)에 의거하고 재론[論]하지 말 일.”³⁸⁾

물론 윗 규약도 청풍군민에 한정된 조항으로, 애초 내걸었던 “계의 동료[稷僚] 구성[段]은 33인”에 미치지 못했던 이면에는 입회비(入會費)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임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이에 추가적인 입회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상향 조정된 회비로 난입(亂入)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구절은 원래 계원의 사망 시에 대입(代入)을 시도하려는 자손에 대한 지침인 듯하다. 전단(錢段)의 ‘단(段)’ 자에는 ‘단위·등급’의 뜻이 있을뿐더러, 이미 부친이 입회비를 완납한 상태이므로 액수의 고저와는 무관하게 자손의 자율적인 회비 책정에 일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하간 윗글은 앞의 인용문과 함께, 경제적 후원이 전무한 청풍승평계가 자체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거듭하였는지를 잘 방증해 주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입회한 계원들 상호간에 “절대 돈을 빌려 쓰지 말고, 또한 보증을 서지도 말아야 할 일”을 특기해 두기도 하였다.³⁹⁾ 예나 지금이나 지인들 간에 행해지는 금전 거래나 보증을 세우는 일 따위는, 필경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기에,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치순은 계원들이 범한 잘못된 행위 양태에 따라 각기 상벌·중벌·하벌을 적용했고, 모두 벌금형으로 속죄(贖罪)하도록 조처한 사실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다. 그 가운데서 앞 절에서 미처 취급하지 못한 하벌 조항, 즉 “하벌(下罰)은 1냥을 내는 일”⁴⁰⁾과 관련된

38)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設稷後에 或有願入者면 今年則以十兩으로 許入하고 自明年으로 至於幾十年後라도 以十五兩으로 許入而原稷員이 子孫中代入則 例錢段勿論할事.”

39)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諸員中에 勿爲借用하고 亦勿懸保할事.”

40)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上罰 三兩, 中罰 二兩, 下罰 一兩事.”

내용을 마저 소개하기로 한다.

“하나, 봄·가을에는 여럿이 한 자리에 모여서(齊會) 즐겁게 노니되,
(참석하지 못할) 실제 사유[實故]가 있으면,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
서 대신 참석하고, 아무런 까닭 없이 불참하면, 하벌로써 나무라는
일.”⁴¹⁾

윗글은 매년 봄·가을에 두 차례씩 열리는 전체 모임이 계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는 사실과 함께, 이 제회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하벌 조치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
데 위 인용문의 ‘제회(齊會)’ 규정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회집(會集)’
건과 관련하여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 1750~1824)은 아래와 같은 범
례(凡例)를 제시하였던바, 비교의 관점에서 『화산집』의 해당 내용을 살
펴보도록 한다.

“하나, 회집(會集) 시에 혹여 실제 사유[實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하는 자는, 반드시 자제 혹은 하색장(下色掌)으로 하여금 단자(單子)[문
서]를 갖추어서 보고하도록 한다. 만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참하는
자는, 반드시 벌 받을 일을 의논토록 한다.”⁴²⁾

정규한이 입안한 ‘회집’ 규정에서는 ‘대참(代參)’에 관한 내용이 보이
지 않는 대신에, 불참 사유가 명기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회
집이란 <여씨향약>의 ‘독약례(讀約禮)’⁴³⁾ 의식을 계승한 세칙으로, 춘

41)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每年 春秋에 齊會勝遊而有實故則以
子婿弟姪中代參而 無故不參則 施以中罰할事.”

42) 『華山集』 卷5, 『雜著』, <立約凡例(各里有上別檢一員, 下色掌一人)>, 407면, “一, 會
集時或有實故不參者, 必使子弟或下色掌, 具單子以告, 若無故不參者, 必論罰事.”

43) 회집 시에 행하는 독약례는 유교의 선성(先聖)에 대한 배례(拜禮)와 존상자(尊上
者)를 향한 복잡한 배의(拜儀), 향약 조문의 낭독·해설과 그에 뒤이은 실서(說書)

추 제회 시에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거행하면서, 향약의 강목인 “약문(約文)을 낭독”하는 중요한 의식에 해당한다.⁴⁴⁾ 이처럼 향민들 상호 간에 화합과 유대를 도모하고, 약문 강독을 통해서 네 강목에 대한 교화(indoctrination)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회집에 구성원들이 참여치 않으면, 정상적인 향약의 이행이 곤란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⁴⁵⁾ 이에 정규한은 “반드시 벌 받을 일을 의논토록 한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참고로 정규한이 제시한 <벌목(罰目)> 조항을 보면, 상벌로 “사류(士類)는 별도로 말단에 앉혀, 복을 올려 벌을 서게 하고, 하인은 볼기 40대를 친다.”고 명시되어 있다.⁴⁶⁾ 이에 반해 하벌은 “사류는 주벌(酒罰)[벌주]을 행하고, 하인은 볼기 10대를 친다.”⁴⁷⁾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풍승평계 또한 <여씨향약>의 춘추 제회 시의 전통이 잔존해 있는 상태지만, 불참 시에 모두 벌금형을 부과했던 점은 여타의 향약과는 판이한 규정인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적 후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악단을 운영해야만 하는 긴박한 사정이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사안에 따라 각기 상벌·중벌·하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거부한 계원을 조직에서 내쫓기로 의결한 아래의 제8조를 통해서도 판단의 적실성이 재차 입증된다.

“하나, 벌칙을 시행한 후에, (이들) 완고하게 거부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원에서 빠지게[出稷]할 일.”⁴⁸⁾

나 습사(習射)·강론(講論) 등을 행하는 의식이다. 이근명, 앞의 글, 278면.

44) 『華山集』 卷5, 「雜著」, <立約凡例>, 406면, “一, 春秋卜日, 約內諸員齊會, 春行鄉飲酒禮, 秋行鄉射禮, 讀約文.”

45) 김중수, 앞의 글, 200~201면.

46) 『華山集』 卷5, 「雜著」, <立約凡例>, 407면, “上罰, 士類則別坐末端, 鳴鼓揭罰, 下人答四十.”

47) 『華山集』 卷5, 「雜著」, <立約凡例>, 407면, “下罰, 士類行酒罰, 下人答一十.”

48)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施罰後에 頑拒不納則出稷할事.”

기실 벌금 납부를 거부한 자에게 취한 ‘출계(出契)’란 내용상 ‘출계(黜契)’⁴⁹⁾와 동의어로, 고향에서 축출(逐出)하는 이른바 ‘출향(黜鄉)’⁵⁰⁾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권에 해당한다. 율곡은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鄉約束)>을 통해서 반인륜적 처사나 음탕하고 더러운 행태를 일삼는 이, 그리고 “고을 수령[土主]을 모해(謀害)하는 자”들에게 출향 조치를 가함으로써, “고을 사람들 모두가 이들과 교제를 끊도록” 적극 유도한 바가 있다. 그런데 청풍승평계의 경우 상벌·중벌·하벌에 따른 벌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한 자에게 출계를 명했던바, 내쫓는 동기 정도가 선행 사례와는 판이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청풍승평계가 악단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절치부심하였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총 20조로 된 청풍승평계의 규약 가운데서 기금 마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7, 8조항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원악공관노(元樂工官奴) 7명에게 전(錢) 20냥씩을 지급하고, 악생보(樂生保) 24명에게 순전(純錢) 2냥씩을 지급함으로써, 군악(軍樂)과 고전악(古典樂)을 유지·보존하여 왔다는 청풍구읍지(淸風舊邑誌)의 기록이란,⁵¹⁾ 승평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또 다른 이유를 짐작케 해준다. 또한 구읍지의 기록은 청풍승평계가 관내 군악대와 연계된 차원에서 음악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전언해 주고도 있기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에서 소개한 기금 관련 조항들은 계의 직임 구성과도 정합

49) 『儉齋集』 卷29(한국문집총간 續50), 「雜著」, <海西鄉約>, 한국고전번역원, 2007, 599면, “凡有大過惡者及累次論罰, 終不自悛, 壞敗約令者, 皆告官治罪後黜契, 契中人絶之.”

50) 『栗谷全書 I』 卷16, 「雜著(3)」, <海州一鄉約束>, 365면, “如有父母不孝, 兄弟不和, 淫穢亂倫, 所行悖戾等事及謀害土主者, 黜鄉, 鄉人共棄絶之.” ‘토주(土主)’란 고을 수령을 가리킨다.

51)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3면.

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즉, 최치순은 수주찰(首周察)에게 금전의 출납을 맡아보는 장재(掌財)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획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6조에서는 “수주찰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계원[稷] 중에서 살펴 맡기고, 대소 사무와 장재(掌財)를 두루 살펴 검사할 일”을 명시해 두었다.⁵²⁾ 이와 동시에 제17조를 통해서 부주찰(副周察)로 하여금 수주찰의 지시에 따라 대소 업무를 돕도록 조치하기도 했다.⁵³⁾

그로부터 25년 뒤에는 속수승평계가 재조직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좌목>이 제시되었다. 1918년에 제시된 <좌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아홉 등급으로 나뉘었던 기존 직임 체계가 총 15직임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직임의 증감(增減)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1893년의 <좌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총률(摠律)을 빼고 부교독(副敎督)으로 대체하는 등의 직임 개편을 시도했던 것이다. 또한 속수승평계의 서문을 쓴 이견연(李健淵, 1855~?)이 영사(領司) 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계내 위상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반해 <승평계서>의 찬자(撰者)이자 교독을 맡았던 최치순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도 이채롭게 느껴진다. 기존 청풍승평계에서 활약했던 계원들의 노령화와 사망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음을 속수승평계의 <좌목>은 알려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절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가칭 <속수승평계서(續修昇平稷序)>⁵⁴⁾ 가운데서 아래의 내용일 것이다.

52)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首周察則以可堪人으로 察任稷中하야 大小事務與看檢 掌財할事.” <좌목>에서는 수주찰을 ‘주찰’로 표기했고, 한응렬(韓應烈, 1840~?)이 담당자였다.

53)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4면, “一, 副周察則 一依首周察知委하야 稷中事에 無違看檢할事.”

54) 글 양식은 ‘서문[序]’이나, ‘2. 續修昇平稷’로 표기되어 있다. 대신에 끝부분에 “大正七年戊午(1918) 四月十六日, 李健淵 緒”라 기록해 두었다.

“승평계의 설립이 계사년[癸巳, 1893] 중춘(仲春)에 있었고 ...(중략)... 한 번 스스로 풍조(風潮)가 유신(維新)한 뒤에, 폐하고 닦지 않으면, 여간(如干)한 식리(殖利)에 원금(元金)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고단적(枯短笛)을 높다란 누각에 묶어두면, 비록 땀나무 하는 늙은이와 풀 먹이는 아이일지라도 또한 장탄식하면서 유감스럽게 여기리니,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제현(諸賢)이 묻고 의논하며 협동해서 이원금(貳圓金)을 각출하여, 다시 계(稷) 하나를 설립하니, 이름하기를 ‘속수승평계’라 하노라.”⁵⁵⁾

윗글은 청풍승평계가 “풍조(風潮)가 유신(維新)한” 공을 수립했으나, 폐해진 후로 재건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곧장 이어서 이견연은 그간 축적된 이자 재산과 원금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과 함께, 귀한 악기들이 방치된 채 사용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적시하면서 속수승평계를 재건한 경위를 밝혀 두었음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이견연의 서문[緒]에 따르면, 그간 청풍승평계는 원금에서 불려진 상당한 이자 대금을 자체적인 기금으로 축적해 두었던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논급한 바와 같다. 또한 재조직한 속수승평계도 계원당 ‘일금 이원(貳圓)’씩을 각출함으로써, 기존 종갓돈 300냥과 불린 이자 재산이 더욱 큰 식리(殖利)를 창출할 수 있는 밑천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냥[兩]에서 원(圓)으로의 단위 변화는 일제가 취한 화폐제도 변경 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상기 인용문은 속수승평계 단계에 이르러서도 악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에의 노력이 중단 없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55)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3면, “昇平稷之設이 在於癸巳(1893年)仲春而... 一自風潮維新之後에 廢而不修면 如干殖利에 元金 歸于水泡하고 枯短笛를(을) 束之高閣이면 雖樵叟牧兒라도 亦爲長嘆遺憾矣러니 何幸諸賢이 詢議協同하고 各出貳圓金하야 更設一稷하니 名之曰 續修昇平稷라.”

그 뿐만 아니라 재조직된 속수승평계의 회원 명단인 <좌목>에는 재정·공연·행사 따위와 관련된 직임을 대폭 강화시킨 특징도 발견된다. 다만, 직전의 청풍승평계 <좌목>과는 달리 임원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던 까닭에, 직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무튼 재정·공연·행사와 관련된 직임으로 기존의 주찰(周察)[수주찰]·부주찰(副周察) 외에도, 장재(掌財) 2인과 연수(宴需)·연수(宴酬) 각 1인 등과 같은 직임 구성이 새롭게 제시되어 있다.⁵⁶⁾ 즉, 재정 담당과 대소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였던 기존 수주찰의 업무를 신설된 ‘장재’를 통해 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연회(宴會)나 행사 등을 주관하는 직임들을 새롭게 배정했던 것이다. 이는 속수승평계 단계에서 계의 재정적 기반이 더욱 확장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춘추 제회와 공연·행사·연회 활동이 이전보다 왕성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아울러 짐작케 해준다. 아마도 속수승평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간 다져진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 높은 내외의 공연·행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속수승평계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건실한 경제적 기반과 계원들의 숙성된 예술적 기량에 힘입은 가운데, 6.25 사변이 발발한 1950년도 이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6.25로 인하여 애지중지했던 악기 대부분이 유실(遺失)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양금(洋琴) 등속 몇 가지 남은 것은 청풍면 물태리에 위치한 사찰인 평등사(平等寺)에 보관하였다고 한다.⁵⁷⁾ 승평계의 단원들이 사용한 악기는 정악 가야금·산조 가야금·양금·현금(弦琴)[거문고]·당비파·향비파·피리·젓대[대금]·장고 등이었다. 국악계에서는 두 종류의 가야금과 함께, 다른 악단에서는 전혀 선보이지 않았던 비파의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56)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6~267면 참조.

57)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63면.

부여하곤 한다.

이후의 일들은 세세한 기록의 부재와 계원들의 사망과 이산(離散), 그리고 청풍면의 수몰에 따른 청풍호의 건립 사업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써 약 57년에 이르는 의미 있는 역사를 향유했던 청풍승평계와 그 뒤를 이은 속수승평계의 존재가 세인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의 개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1893년에 등장한 청풍승평계의 출현 배경을 몇몇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함과 동시에, 이 계가 취한 형식적인 측면인 향약계적 특징을 규명해 보았다. 나아가 경제적 후원이 전무했던 청풍승평계와 뒤이은 속수승평계가 악단을 운영하기 위해 기금 조성에 기울인 각별한 노력을 규약과 직임의 분석을 통해서 아울러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전무한 승평계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의 발판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미제로 남겨진 상태다. 이하에서는 본문에서 논급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음미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호서권의 내륙 산간 지역인 옛 청풍군은 수승한 형승(形勝)과 다섯 나무터를 거느린 수운(水運)의 요충지로, 서울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청풍승평계가 서울에서 박효관과 안민영이 주도했던 승평계에 관한 소식을 접한 끝에, <승평계서>를 서문에 반영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풍군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고전 음악의 맥이 전승되어 왔던 예향(藝鄉)이기도 했다. 이는 이 지역에 국악관현악단인 승평계가 출현하게 되 내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직면한 일제의 조선에 대한 병탄(併呑) 야욕

은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자극하게 되었고, 마침내 1895년에 이르러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인 을미의병의 봉기로 이어지게 된다. 1893년에 청풍승평계가 출현하게 된 이면에는 앞서 적시한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일제의 침략 야욕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계류되어 출현한 청풍승평계는 향후 25년 동안의 활동기를 거친 뒤에, 일시 “폐(廢)하여 닦지 않는” 휴면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다가 1918년에 속수승평계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되어 악단을 다시 활성화하기에 이르렀고, 이 활동은 6.25 사변이 발발한 시점인 195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57년 동안에 걸쳐 활동했던 승평계의 경우, 시종 형식적 측면에서 향악계적인 특징을 유지하였음이 주목된다. 즉, 이 계는 북송의 <여씨향악>에 연원하여 <주자중손여씨향악>을 경유한 끝에, 주자학자인 퇴계·율곡에 의해 단계적으로 도입된 조선(朝鮮) 향악의 전통을 계승한 악단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춘추 제회 의식을 원용한 봄·가을 야유회라든가, 향악의 네 강목 가운데 덕업상관·환난상휼 이념을 반영한 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상벌·중벌·하벌에 따른 벌금 미납자에게 출계(出契)를 명한 장면은 향악의 출향(黜鄕)·출약(出約) 조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원의 가입을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한정시킨 점도 향악의 입회 조건과 유사한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입회 시에 10냥씩을 각출했던 청풍승평계는 총 20조로 이뤄진 자체적인 규약 중에서 7, 8조항을 기금 조성을 위한 묘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가해진 상·중·하벌을 적절한 제재책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해끔 조처한 장면은 매우 눈길을 끌게 한다. 벌금 미납자를 승평계에서 축출하는 방식은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한 극점을 전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청풍승평계가 기금 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던 이면에는 흥

선대원군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던 박효관·안민영의 승평계와는 달리, 애초 경제적 후원자가 전무했던 절박한 사정과 직결되어 있었다. 이에 청풍승평계는 악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장재 2인을 신설한 속수승평계 단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풍승평계는 1893년에 결성되어 1918년 이전 시기까지 활동하였고, 속수승평계는 195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전개하였다. 속수승평계에서 신설한 연수(宴需)·연수(宴酬)라는 두 직임은, 이 계가 6.25 사변 직전 무렵까지 왕성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민족적 불행사인 6.25 사변으로 인해 애지중지하던 악기 대부분을 유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악단도 해체되고야 마는 비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청풍승평계와 속수승평계가 취했던 내용적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면밀한 고증(考證) 작업에 착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孟子集註』

『碧巖錄』

『儉齋集』

『鵝溪遺稿』

『栗谷全書 I』

『華山集』

『忠淸北道各郡邑誌·淸風郡邑誌』

류금열 편찬, 『淸風誌-淸風明月의 本鄉-』, 淸風面, 2003.

송혜진 외, 『우리국악 100년』, 현암사, 2001.

李鐘埧 편역, 『題詠』, 내제문화연구회, 1996.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 『堤川郡誌』, 上黨出版社, 1969.

『중도일보(2021.11.29.)』: ‘제천 청풍승평계의 재발견’.

『중도일보(2021.12.27.)』: 청풍승평계→‘속수(續修)승평계’로 25년만에 세
대교체...의미는?

권두환, 『朝鮮後期 時調歌壇 研究』,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71~79면.

김석배, 『昇平稷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학회, 2003, 254~260
면.

김종수, 『화산 정규한의 ‘화산 향약’과 향촌 자치 구상』, 『공동체문화 와
민속연구』 3,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22, 200~201면.

이근명, 『朱熹의 <增損呂氏鄉約>과 朝鮮社會-朝鮮鄉約의 特性에 대한 檢
討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5, 한국중국학, 2001, 277~281면.

이창식, 『제천 청풍호 주변의 구비자원과 인물의 스토리텔링』, 『인문사회
과학연구』 21,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1~27면.

■ Abstract

Formal Characteristics of Cheongpungseungpyeonggye(淸風昇平稷) and Fund Opertion

Kim, Jong Su

Cheongpungseungpyeonggye that appeared in 1893 was a traditional orchestra organized with the aim to inherit and develop classical music passed down in Cheongpung-gun(淸風郡). Behind the appearance of the gye (稷), Seungpyeonggye in Seoul which was led by Park Hyo-gwan(朴孝寬)·Ahn Min-yeong(安玟英) exerte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and it was also the result that will to protect national culture involved under the ambition of the Japanese Empire(日帝) to invade Korea. With organization of official duties from Sujwa(首座) to Yurwon(律員) and its own regulations, Cheongpungseungpyeonggye was closed temporarily after about 25 years of working period and was reorganized in 1918 in the name of Soksuseungpyeonggye(續修昇平稷).

In the work that researched Cheongpungseungpyeonggye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content and form’, this manuscript investigated and verified the latter, characteristics of Hyangyakgye(鄉約稷) that are the formal aspect, and analyzed enthusiasm of the gye for fund raising from various angles. As a result, this manuscript confirmed that Seungpyeonggye faithfully inherited the tradition of Joseon(朝鮮) hyangyak which was originated from <Yeossihyangyak(呂氏鄉約)> and settled by Toegye(退溪)·Yulgok(栗谷). Seungpyeonggye also suggested a regulation that makes members to pay 10nyang(兩) each when joining(立會) the gye, and made various efforts to raise funds. It was a desperate measure to operate orchestra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As a result, Cheongpungseungpyeonggye enjoyed period of activity for about 57 years until 1950. However, most musical instruments were carried away by the Korean War and the orchestra confronted the tragedy of being dissolved.

Key Worlds: Cheongpungseungpyeonggye, Soksuseungpyeonggye,

Seungpyeonggye, hyangyakgye, fund opertion, traditional orchestra

이 논문은 2023년 1월 20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9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이원석**

목차

1. 머리말
2. 복의의 전개
3. 구양수의 “복의”와 정치사상적 배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북송대(北宋代)에 일어난 “복의(濮議)”는 영종(寧宗) 재위 기간 내내 전개되면서 관료 간의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결론적으로 구양수(歐陽修)라는 북송대 사인(士人) 정치의 상징적 인물을 몰락시켰던 논쟁이었다. “복의”란, 영종의 친부인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영종의 친부로 부르지 아니면 큰아버지로 부를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논쟁은 당대의 군왕과 신료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일대 사건이었으나, 근대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영종과 황태후의 권력 투쟁에 사대부들이 동원된 결과 일어난 논쟁이라고 보거나 왕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당파 투쟁이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고 하거나, 심지어 공리공담에 불과한 논쟁이었다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구양수의 입론을 위주로 분석하여, 복의의 기저에 잠재된 정치·사상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 구양수는 영종이 의부(義父)인 인종(仁宗)을 부친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복안의왕을 “친(親)”으로 호칭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몰인정하다고 주장했다. 종법적으로는 인종과 영종 사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되, 사적으로는 복안의왕과 영종 사이의 친부자 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양수가 이렇게 주장했던 까닭은, 당대(唐代) 중후반기에서 오대(五代)에 걸쳐 유행했던 의부자(義父子) 현상의 사익적 동인과 그 체제 분열적 효과, 그리고 인륜 파괴의 후과를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의부자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친부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억압하는 것은, 이익 실현을 위해 ‘의(義)’를 내세우는 허위의 세계로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었고, 더구나 그런 유사가족적 조직은 장차 왕조의 통일 질서를 해체하는 맹아가 될 수 있다고 구양수는 우려했다.

주제어: 구양수, 복의(濮議), 입양, 의(義), 예(禮)

1. 머리말

북송대(北宋代)에 일어난 “복의(濮議)”는 영종 재위 기간 내내 전개되면서 관료 간의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결론적으로 구양수(歐陽脩)라는 북송대 사인(士人) 정치의 상징적 인물을 몰락시켰던 논쟁이었다. “복의”란, 영종의 친부인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영종의 친부로 부르지 아니면 큰아버지로 부를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논쟁은 당대의 군왕과 신료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일대 사건이었는데, 당시 조정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황제를 지지했던 구양수 등은 인정(人情)의 논리를 바탕으로 영종이 생부인 복안의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인지상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사마광(司馬光) 등은 종법제의 원칙을 내세우며 영종이 이미 인종의 아들로 입적하였으므로 복안의왕을 ‘큰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는(복안의왕은 인종의 형이었다) 원칙론을 견지했다.

현대인에게는 복의가 변쇄한 예송(禮訟)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사회 체제의 바탕을 이루는 종법제적 가족 원리와 보편적 도덕 정서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 논쟁이었다. 또한, 이 논쟁은 당말 오대 시기 만연했던 유사가족적 조직, 즉 의부자(義父子) 관계로 맺어진 대·소규모 집단의 유산을 송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송대 복의는, 조선대의 이른바 사친숭봉(私親崇奉) 관련 논쟁에 담긴 사상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¹⁾

하지만, 근대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영종과 황태후의 권력 투쟁에 사대부들이 동원된 결과 일어난 논쟁이라고 보거나 왕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당파 투쟁이었다고 하거나, 심지어 공리공담에 불과한 탁상 위의 논쟁에 불과했다고 그 의의를 격하하여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²⁾

1) 조선은, 국왕이 전대 왕의 친생자가 아니고 입후자(立後子) 출신 또는 방계의 후손으로서 왕위에 올랐거나, 아니면 반정(反正)으로 군왕이 되었을 때, 사친(私親) 즉 친부모 봉호(封號)의 등급을 상향하려는 “사친숭봉(私親崇奉)”의 시도가 종종 있었고 이는 신료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초래하였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구한 말의 류중교(柳重敎, 1832~1893)는 『사친숭봉』이라는 일종의 자료집을 편찬하여, 복의를 포함한 중국과 조선의 역대 사친숭봉 사례와 관련 의론을 수록하였다.(柳重敎, 『省齋集 別集』 卷2, 「帝王承統考」4 부록 <私親崇奉>.) 『사친숭봉』에는, 선조가 친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을 숭봉하려 하자 이황은 의(義) 중시의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이는 친부에 대한 인정(人情)을 무시해서만은 안 된다고 하여 이황보다 온건한 의견을 표했다는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2) 고바야시 요시히로(小林義廣)는 「『濮議』小考」(『東海大學紀要文學部』 第54集, 1990)에서 송대 복의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던 기존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제임스 류(James T. C. Liu; 劉子健)는 영종과 조황태후 사이의 불화를

2000년 이후 중국의 연구자들이 다각도에서 논쟁의 심층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전의 연구 결과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³⁾ 다만, 1990년 일본의 고바야시 요시히로(小林義廣)는, 구양수의 “황제 기관설(皇帝機關說)”과 사마광의 국가주의적 군주관의 대립이 복의에서 표출되었다고 주장하여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⁴⁾

필자는 구양수의 입론을 위주로 분석하여 복의의 기저에 잠재된 그의 정치·사상적 맥락과 그의 견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양수는 단지 종법제의 절대성 또는 의례적 정합성만 아니라, 오대사(五代史)의 저술 경험을 통해 절실히 체득한 역사적 교훈과 유가 윤리

이용해서 이루어진 관료들의 정치 투쟁이 복의로 간주했으며,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북송 전성기의 역사[北宋全盛期の歴史]』(1941)에서, 복의가 대간이 명성을 다투는 기풍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례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탁상공론이었다고 보았고,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그의 『중국사』에서 복의가 논쟁을 위한 논쟁, 단순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며, 중국의 쑹엔선(宋衍申)은 『사마광전(司馬光傳)』(1990)에서 복의가 청담(淸談)의 색채를 농후하게 띤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 3) 리창수(李昌舒)는 복의가 사인(士人) 정치의 여러 가지 결점, 특히 사인 정치가 교착 국면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는 동시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종과 태후 사이의 권력 투쟁이었다고 규정했다.(李昌舒, 『濮議之爭與歐陽修之死』,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年 11月, 第20卷 第6期, 124면) 복의 배후에 영종과 태후의 권력 투쟁이 있다고 본 점은 제임스 류와 유사하다. 한편, 우젠쑹(武建雄)은, 구양수가 “전주지학(傳注之學)”에서 벗어나 “계고지학(稽古之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복의의 관점이 성립했다고 보았다.(武建雄, 『歐陽修濮議主張的成因與北宋稽古之學的困境』, 『原道』 第38輯, 湖南大學出版社, 2020.) 양위밍(楊銳明)은 영종에 대한 인종의 냉담한 태도가 복의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楊銳明, 『父子關係與新舊交替: 再論北宋“濮議之爭”』,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3卷 第3期, 2022. 83면.)
- 4) 고바야시 요시히로, 앞의 논문, 41~42면. 고바야시는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에서 차용하여 “황제기관설”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시기, 도쿄제국대학 교수 잇키 기토쿠로(一木喜徳郎)는 천황주권설에 대항하여, 천황은 국가의 여러 기관 가운데 최고 지위에 있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에 대한 반성에 발 딛고 자신의 견해를 정립했음을 밝힐 것이다.

2. 복의의 전개

1063년(嘉祐 8년), 영종은 의부(義父)인 인종을 이어 즉위했지만 곧바로 정신적 질환에 걸려 조황태후(曹皇太后)가 1년간 섭정하였고, 그는 1064년에야 친정(親政)을 시작했다.⁵⁾ 친정이 시작되면 여러 신하의 벼슬과 녹봉[爵秩]을 높여주거나 종실(宗室) 주요 인물, 이미 세상을 떠난 종실의 왕(王)들에게 봉작(封爵)과 증직(贈職)의 등급을 상향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영종의 친부(親父)인 복안의왕(濮安懿王)은 영종이 즉위하기 전인 1059년에 사망했으므로 친부도 봉증(封贈)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중서성의 요청이 제기되었다.⁶⁾ 집정(執政)인 한기(韓琦)는 중서성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상주했는데 초안은 참지정사(參知政事)였던 구양수가 기초했다.

삼가 생각건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을 친(親)이라고 하고 인정에 따르는 것을 예(禮)라고 합니다. 비록 의(義)로써 일을 규정하여 시의적절하게 하더라도, ‘친’은 반드시 은덕을 위주로 하고 ‘예’는 조상을 잊지 않는 것이 고금에 변치 않는 영원한 도입니다....저희는 삼가 청하건대 [주상께서] 담당관에게 명하여, 복안의왕 및 [그 세 부인인] 초국부인 왕씨(譙國太夫人王氏), 양국태부인 한씨(襄國太夫人韓氏), 선유현군 임씨(仙游縣君任氏)를 위해 합동으로 전례를 행하되 합당성을 검토케 하여 시의에 맞도록 하게 하십시오.⁷⁾

5) 이 절은 구양수의 문집에 있는 『복의』와 고바야시 요시히로의 논문 『복의 소고(濮議小考)』를 참고하여 복의의 전개 과정을 간명하게 서술하려 한다.

6) 歐陽修, 『濮議』 卷1, “英宗皇帝初即位, 既覃大慶於天下. 群臣並進爵秩, 恩澤遍及存亡, 而宗室故諸王亦已加封贈. 惟濮安懿王, 上所生父也. 中書以爲不可與諸王一例, 乃奏請下有司議合行典禮.”(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79면.)

이후 전개될 복의의 핵심 쟁점이 위 상주문의 전반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상주문은 영종이 복안의왕을 친부로 불러야 한다는 의도로 작성 되었으므로 그 첫 문장에 나오는 “친”자는 맥락상 ‘어떤 대상을 친부로 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윗글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 준 존재를 친부모로 인식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 곧 “친”은 “친성”에 따르는 행위이다. “친성”은 다름 아닌 선천적 본성 또는 선천적 경향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런 “친성”과 “인정(人情)”은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왜냐하면, “인정”은 친성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는 인정을 “따른다.”라고 윗글은 말한다. 결국, “친”과 “예” 사이에는 단절이 없고 양자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다. 반면, “의(義)”는 “친”, “예”와 대별된다. 여기서 “의”는 ‘의형제’ 또는 ‘의부자(義父子)’ 등에 사용된 ‘의’자와 의미가 같아, ‘의리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함축할 것이다.

이상의 이해에 근거할 때 위 상주문이 암시하는 바는, 인종과 영종 사이의 의부자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복안의왕과 영종 사이의 친부자 관계가 그로 인해 경시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주문은 영종의 속마음과 일치했을 테지만, 영종은 의부인 인종을 위한 복상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친부의 관계를 부각하는 전례(典禮)를 행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복상이 끝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전례 논의는 일시 중단되었다.⁸⁾

1065년(治平 2년) 4월, 인종을 위한 복상 기간이 끝나자 영종은 한기

-
- 7) 歐陽修, 『漢議』 卷3, 『中書請議漢王典禮奏狀』, “伏以出於天性之謂親, 緣於人情之謂禮. 雖以義制事, 因時適宜, 而親必主於恩, 禮不忘其本, 此古今不易之常道也. …臣等伏請下有司議漢安懿王及譙國太夫人王氏, 襄國太夫人韓氏, 仙游縣君任氏合行典禮, 詳處其當, 以時施行.”(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86면.)
- 8) 歐陽修, 『漢議』 卷1, “有旨, 宜俟服除, 其議遂格.”(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79면.)

등이 올렸던 위의 상주문을 양제(兩制), 즉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중서사인(中書舍人)에게 내려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⁹⁾ 그해 6월, 한림학사 왕규(王珪)는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관련 규정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기친(期親)의 존속에 대한 봉증 규정을 준거로 삼아 복안의왕에게 관직을 수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¹⁰⁾ 복안의왕을 기친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영종이 친부인 복안의왕을 백부(伯父)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규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남의 후사가 된 사람[爲人後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느 집안의 후사로 입양되어 그 종손이 된 자는 의부를 위해 삼년상을 치르고 참취복을 입어야 하며, 친부모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이는,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은 이미 그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더는 자신의 친부모를 진정한 부모로 간주하면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왕규는 해석했다. 그리고 『의례(儀禮)』가 이처럼 상복 착용 규정을 둔 까닭은, 남의 후사가 된 입양자가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의부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왕규는 주장한다. 과거 진나라와 한나라 이래, 방계로서 대통(大統)을 이은 제왕 중 혹 친부모를 추존하여 제(帝)와 후(后)로 삼은 자들이 있었으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후대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며 왕규는 역사적 사례를 인용한다. 게다가, 이전에 양자로 들어와 왕위를 이었던 왕들은, 그 선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왕비나 신하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선왕에게 입은 은혜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영종은 인종 생전에 의해 직접 후계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영종이 인종으로부터 입은 은덕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¹¹⁾ 이러한 왕규의 주장은 한기와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9) 上同, “治平二年四月, 上既釋服, 乃下其奏兩制, 雜學士待制禮官詳議.”

10) 왕규는 사마광의 입론에 따라 상주문을 기초했다고 한다. 리창수, 앞의 글, 124~125면.

중서성은 왕규의 주장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후일 구양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당시 중서성은 이렇게 생각했다. [북안의왕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대국(大國)에 봉하려면, 관직 임명이나 포상 수여 관련 명령서[制書]를 내리고 책명(冊命)을 행해야 하는데, 명령서와 책명에는 형식이 있다. 명령서에는 “○의 친(親)으로서 관직은 ○이며, ○官을 수여하고 ○國王으로 사후 봉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하고, 책명에는 “황제는 이렇게 말한다: 아! ○의 친(親)인 ○, 관직은 ○...”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책명은 “○官 ○王”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런데 북안의왕은 폐하와 부자 관계에 있다. 명령서와 책명에서 [북안의왕의] 칭호로 누구의 친(親)이 되어야 할지, 호명해야 할지 그렇지 않을지 아직 심의되지 않았으니 다시 의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11) 歐陽修, 『漢議』卷3, 『兩制禮官議狀』, “臣等謹按儀禮喪服爲人後者, 傳曰, 何以三年也. 受重者必以尊服服之. 爲所後者之祖父母妻, 妻之父母昆弟, 昆弟之子若子. 若子者, 言皆如親子也. 又爲人後者, 爲其父母報, 傳曰, 何以期也. 不貳斬也, 何以不貳斬也. 持重於大宗者, 降其小宗也. 又爲人後者爲其昆弟, 傳曰, 何以大功也. 爲人後者, 降其昆弟也. 以此觀之, 爲人後者爲之子, 不敢復顧私親. 聖人制禮, 尊無二上. 若恭愛之心分施於彼, 則不得專一於此故也. 是以秦漢以來, 帝王有自旁支入承大統者, 或推尊父母以爲帝后, 皆見非當時, 取譏後世. 臣等不敢引以爲聖朝法. 況前代入繼者, 多宮車晏駕之後, 授立之策, 或出母后, 或出臣下. 非如仁宗皇帝年齡未衰, 深惟宗廟之重, 祇承天地之意, 於宗室衆多之中簡拔聖明, 援以大業. 陛下親爲先帝之子, 然後繼體承祧, 光有天下. 漢安懿王雖於陛下有天性之親, 顧復之恩, 然陛下所以負斬嗣幔富有四海, 子子孫孫萬世相承者, 皆先帝之德也. 臣等愚淺, 不達古今, 竊以爲今日所以崇奉漢安懿王典禮, 宜一准先朝封贈期親尊屬故事, 高官大國, 極其尊榮. 諡國太夫人, 襄國太夫人, 仙游縣君, 亦改封大國太夫人. 考之古今, 實爲宜稱.”(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86-987면.)

12) 歐陽修, 『漢議』卷1, “中書以爲贈官及改封大國, 當降制行冊命, 而制冊有式, 制則當曰, 某親具官某, 可贈某官, 追封某國王, 其冊則當曰, 皇帝若曰咨爾某親某官某. 今冊命爾爲某官某王, 而漢王於上, 父子也. 未審制冊稱爲何親, 及名與不名, 乃再下其議.”(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79면.)

중서성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위 인용문 후반부에 있다. 책명의 형식은 “황제는 이렇게 말한다: 아! ○의 친(親)인 ○, 관직은 ○...”인데, 그때 작성되었던 책명은 “○官 ○王”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황제인 영종과 복안의왕 사이의 부자 관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서성은 복안의왕이 영종의 친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책명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왕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왕규는 반발하면서 복안의왕을 황백(皇伯)으로 칭하고 그 이름은 호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서성은 논점을 바꾸어 반격했다.

『의례(儀禮)』 「상복기(喪服記)」에 따르면 “타인의 후사가 된 사람은 친 부모를 위해 보은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개원개보례(開元開寶禮)』에 따르면 “타인의 후사가 된 자는 생부를 위해 자취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며 1년 동안 상복을 입는다. 의부를 위해서 참취복을 3년 입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친부와 의부 양쪽을 다 “부모”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고금의 전례에는 황백(皇伯)으로 개칭한 사례가 없습니다....한 나라 선제와 광무제는 큰 덕이 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친부를 황고(皇考)로 불렀습니다.¹³⁾

『의례』와 『개원개보례』 모두 친부와 의부를 “부모”로 칭했으므로, 영종이 친부인 복안의왕을 황백(皇伯), 즉 큰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중서성은 보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 선제와 광무제가 친부를 “황고” 즉 아버지로 불렀다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다. 따라서 중서성은 경전적 전거로 보나 역사적 사례로 보나 친부를 “친”으로 지칭하는

13) 上同, “中書據儀禮喪服記云, 爲人後者爲其父母報, 又據開元開寶禮, 皆云爲人後者, 爲其所生父, 齊衰不杖期, 爲所後父斬衰三年, 是所生所後, 皆稱父母, 而古今典禮, 皆無改稱皇伯之文...唯漢宣帝及光武, 盛德之君也. 皆稱其父爲皇考.”

것이 합당하다고 내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중서성과 한림학사 왕규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자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 여회(呂誨)가 왕규를 편들고 나섰다. 여회는 표문에서 “폐하를 보좌하려다가 심지어 애제와 환제의 혼란한 제도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다.”¹⁴⁾라고 중서성을 비판했다. 한나라의 애제(哀帝)는 친부인 정도공왕(定陶恭王)을 “공황(恭皇)”으로 추존하려고 했으나 사단(師丹)이 “아들의 작위로써 아버지를 높여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환제는 하간효왕(河間孝王) 유개(劉開)의 손자이자, 유익(劉翼)의 아들이었는데 유개는 손자 덕분에 효목황(孝穆皇)으로, 유익은 효숭황(孝崇皇)으로 추존되었다. 여회가 보기에는 모두 부당한 처사였다. 영종이 복안의왕을 황고(皇考)로 칭한다면, 그것은 애제와 환제의 전철을 밟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에 황태후가 개입하여, 복안의왕을 황고로 불러야 한다는 중서성을 질책하였으며 영종은 이 소식에 놀라서 논의 중지를 명령했다. 그렇지만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의 장인 판태상사(判太常寺) 범진(范鎮)이 예관(禮官)들을 이끌고서 이른바 황백설(皇伯說)을 계속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정에 제출한다. 중서성은 범진이 논의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비판하였으나, 대간(臺諫)은 범진을 지지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왕규(王珪)의 제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회와 지간원(知諫院) 사마광이 공격의 선봉으로 나서게 된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1065년 8월 3일 개봉에 큰 홍수가 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대간 측은 중서성의 패륜적 주장이 하늘을 노하게 해서 재난을 불러왔다고 중서성을 공격했다. 그해 12월 여회는 다시 상주문을 올려 한기를 탄핵했고, 이어서 1월에는 범순인(范純仁), 여대방

14) 歐陽修, 『濮議』 卷2, “致主之謀, 不恥哀桓之亂制.”(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83면.)

(呂大防) 등 다른 대직(台職)과 함께 구양수를 탄핵했다. 이에 구양수가 차자를 올려 대간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하는 동시에, 중서성은 황태후를 향하여 복안의왕(濮王)을 “황(皇)”으로 그 부인을 “후(后)”로 공식 호칭하고, 영종은 복왕을 “친(親)”으로 부르게끔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담은 수서(手書)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만일, 이 수서가 내려온다면, 영종은 복안의왕을 “황”으로 그리고 그 부인을 “후”로 부르는 안은 공손히 사양하고, 복왕을 “친(親)”으로 부르는 안만 택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공작은 대간에게 누설되었고 여회는 상주문을 올려 대간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한다.

1066년 1월 22일, 마침내 황태후로부터 수서가 내려와서 영종은 그에 따르는 조칙을 반포했다. 복왕을 “친(親)”으로 칭하고, 복안의왕을 “복안의황(濮安懿皇)”으로 칭하며, 복왕의 세 부인을 모두 “후(后)”로 칭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안의왕의 묘역을 “원(園)”으로 칭하고, 원(園)에 묘(廟)를 지으며, 제사는 복안의왕의 자손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 조칙은 대간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끝내 영종은 중서성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회, 범순인, 여대방을 지방관으로 좌천시키고 다시는 복의를 논하지 말라는 조칙을 발한다. 하지만, 영종은 그해 말 발병하여 이듬해 1월 사망하고 만다.

3. 구양수의 “복의”와 정치사상적 배경

필자는 앞선 연구자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구양수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가 어찌해서 일관되게 이른바 황친설(皇親說; 영종이 복안의왕을 親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했는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그 구양수의 주장이란, 황백설(皇伯說; 복안의왕을 伯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의 천박한 습속[閭閻俚俗]”으로부터 깊이

영향 받았다는 것이다. 구양수의 「복의(濮議)」 권1과 2, 「답증사인(答曾舍人)」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신오대사(新五代史)』의 「오대사진가인전론(五代史晉家人傳論)」이 모두 똑같은 논점을 담고 있다.

이들 글 가운데에서 「복의」 권2의 해당 구절이 비교적 소상하므로 그곳을 집중해서 살펴보겠다.

옛날에, 불행히도 자식이 없어서 동종(同宗)의 자식을 후사로 삼았던 일을 성인이 허락하여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예경』에서 드러내었다. 그러나 후대 민간의 천박한 이들은 그 일을 숨겼으니 심각한 기만이고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를 몰래 훔친 후 아기를 낳은 부모를 숨기고 자신도 속여, 그 아기를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한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필시 두 마음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양자가 된 자식은 스스로 친부모를 숨겨 천성(天性)의 양친을 자신으로부터 끊어내고 그들을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로 간주한다. 이리하여 모든 일족을 속이고 생자와 망자에 대한 친소의 순서를 어지럽힌다.¹⁵⁾

구양수가 거론한 “민간의 천박한 습속”이란, 양부모가 입양 사실을 남에게 숨기고, 입양아가 자란 후에도 그에게 친부모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며, 급기야 그 입양아를 직접 출생한 것처럼 자신들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양부모가 이런 기만행위를 일삼는 까닭은, 입양아가 자라서 자신들에게 효도를 다 하지 않고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구양수가 비판하는 것처럼 양부모의 그런 행위에는 비인간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입양아를 지극 정성으로 길렀는데 그가

15) 歐陽修, 「濮議」卷2, “古之不幸無子, 而以其同宗之子爲後者, 聖人許之, 著之禮經而不諱也. 而後世閭閻鄙俚之人則諱之. 諱之則不勝其欺與僞也. 故其苟偷竊取嬰孩襁褓之子, 諱其父母而自欺, 以爲我生之子, 曰不如此則不得其一志盡愛於我, 而其心必二也. 而爲其子者, 亦自諱其所生而絕其天性之親, 反視以爲叔伯父. 以此欺其九族, 而亂其人鬼親疏之序.”(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p.985.)

성장하여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간다면 양부모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입양아 양육에 들인 비용을 모두 상실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아이의 입양 사실을 가족 안팎으로 알리지 않으려는 양부모의 행동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구양수는 어쩌서 그런 습속을 “비천한 습속”이라고 칭하면서 비난 일변도의 태도를 보여 주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오대(五代)에서 북송대에 걸친 시기 민간의 입양 풍속이 실제로 구양수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양상을 띠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니보 노보루(仁井田陞)는 돈황에서 출토된 문서 중 동종 간 입양이 이루어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건덕 2년(964년) 갑자년 9월 27일, 동생 사범삼은 여건이 불비하여 현재 친아들이 없다. ... 형 사분퇴의 친아들 원수를 양자로 들이기로 의논하여 곧 그를 범삼의 친자로 삼기로 했다. 지금부터 원수의 숙부 범삼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원수를 위해] 모든 일을 잘 주관하며 [원수를] 결혼시켜 준다. 모든 가산, 땅과 물, 일, 기물 등을 범삼의 아들·딸인 아타·준형·원수에게 제공하며, 이들이 동등하게 몫을 취하여 편중이 없도록 한다. 만약 이후 범삼에게 또 자식이 태어나고, 아타가 성인이 되어, [이들이] 원수를 우롱하거나, 못된 마음으로 사욕에 따른 행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로 구타하거나, 원수를 양인에서 친인으로 강등시킨다면,...원수가 빚진 곡식 50석은 숙부 범삼에게 떠맡겨지며, [범삼은] 따지지 말고 스스로 그 이자도 떠안는다. 아들인 원수가 이후 신부를 맞아들이고 점차 장성하였을 때, 혹 양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자매와 형제와 사이 좋게 지내지 않거나 처가의 말만 듣거나 생계를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의] 못된 마음은 바로 원수가 직접 초래한 셈이 된다. 아울러 [본생가의] 형제와 자매를 불러들이거나 ...술과 고기를 탐하거나 도둑과 결탁한다면, 원수는 맨몸으로 쫓겨날 것이며 집 안의 풀 한 포기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원수가 빚진 곡식 50석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곧바로 [범삼에게]

지급해야 한다.¹⁶⁾

위 계약 문서를 보면, 구양수가 말했던 것처럼 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존재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일이 널리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위 문서는 입양아 본생가의 형제·자매가 양가(養家)로 찾아오는 상황도 상정하기 때문이다. 본생가의 형제·자매와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친부모와도 교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생가의 형제·자매가 다른 가문에 입양된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일은 자제되었을 것이다. 자칫 양부모의 의심이라도 사게 되면 계약이 파기되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이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입양아와 본생가는 될 수 있으면 왕래 횟수를 줄여야 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 존재를 잊고 지내는 일이다.

이밖에 니보 노보루가 제시한 이성(異姓) 양자 계약 문서 역시 쌍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쌍방에게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시대가 늦기는 하지만 원대(元代)의 관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양자의 본생가가 양가(養家)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과방자 회서식(過房子回書式)」을 보면, 양자의 성과 이

16) “乾德二年甲子歲九月二七日，弟史汜三，前因不備，今無親生之子。…欲議養兄史粉塏親男願壽，便作汜三腹生親子。自今已後，其叔汜三，切不得二意三心，好須勾當，收新婦榮聘。所有□【家】資地水活□【業】什物等，便共汜三子息并及阿朶准亭願壽，各取壹分，不令偏併。若或汜三後有【又】男女，并及阿朶長成人，欺屈願壽，倚大猥情作私…故非理打棒，押良爲賤者…願壽所得麥粟債五十碩，便任叔汜三自折升合，不得論算…其男願壽後收□婦，漸漸長大，或不孝順父孃并及姊妹兄弟，□且聚妻親之言，不肯作於活之計，猥情是他願壽親生阿耶。并及兄弟姊妹招換…貪酒看肉，結般盜賊…空身趁出，家中針草，一無□數。其□債麥粟伍拾碩，升合不得欠少，當便□付。”(仁井田陞, 『唐宋法律文書の研究』,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27, 532면에서 재인용. □는 결락된 부분이며, 인용자 자신의 추측과 仁井田陞의 해석을 통해 해석하였다.

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며 양자가 본생가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계약을 어길 때 벌금 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¹⁷⁾ 요컨대, 구양수가 민간의 입양 습속을 “천박하다.”라고 비난했던 근거에는 사익을 위해 자연적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좌우되는 입양 풍습이 사람을 진실[情]의 세계에서 떠나 허위와 기만[偽]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에 있다.¹⁸⁾ 구양수는 「위후혹문 하(爲後或問下)」에서, 의(義)가 외려 사람에게 허위적 행동을 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타인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나를 낳아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심하게 친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는 일일 것이다. 입양아가 진짜로 자기 친부모와 관계를 끊도록 하려는가? 그것은 사람의 진실[人情]이 아니다. ‘의’에 의해 압박되어 친부모와 관계를 끊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인의(仁義)가 사람에게 거짓[偽]된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런 행동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타인의 후사를 잇는 것을 중시하되 인(仁)을 해치지 않고, 물러나서 친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되 ‘의’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말함으로써, 천성을 온전하게 하는 동시에

17) 이상은, 仁井田陞, 『唐宋法律文書の研究』,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27. 534면.

18) 구양수에게 “정위(情僞)” 즉 진실[情]과 허위[僞]는 그의 사유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범주적 역할을 행했다. 예를 들어, 그는 “군자와 소인, 진실[情]과 허위[僞]가 어떻게 구분되게 하는가?”(楊家駱 編, 『歐陽修全集』(臺北, 世界書局, 1988.), 678면, 「辭直除知制誥狀」, “...使君子、小人, 情僞何別.”), “적을 잘 판단하려면 반드시 그 진실[情]과 거짓[僞]의 실질을 헤아려야 한다.(上同, 810면, 「論西賊議和請以五問詰大臣狀」, “臣聞善料敵者, 必揣其情僞之實.”), “서쪽과 북쪽을 수비하려면 이적(夷狄)의 허실 및 진실[情]과 거짓[僞]을 특히 잘 알아야 한다.(上同, 216면, 「鎮安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贈中書令謚文簡程公墓誌銘」, “...更守西北二方, 尤知夷狄虛實情僞...”))”라고 하는 등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진실-거짓”의 대립 구도를 활용하여 주장을 펼쳤다.

거짓[僞]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¹⁹⁾

구양수는 ‘의’ 혹은 ‘인의’에 기반한 관계가 자연스러운 정서의 발현을 가로막아,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일이 민간의 입양 풍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진단 한다. ‘인의’가 아무리 유가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정서의 자연성을 위배하는 한 그 의의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의 입양 풍습에 대해 구양수가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궁극적 원인은 그것이 왕조 분열의 맹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양수가 보기에 당시 민간의 입양 풍습은 당말오대 지역할거 세력의 행태로부터 비롯한 잔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의 입양 풍습이 천박하다고 했던 그의 핵심 논점이, 친부를 신하로 삼았던 진(晉)의 출제(出帝)를 비판하는 글, 곧 『신오대사·오대사진가인전론(五代史晉家人傳論)』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구양수는 북의 논쟁이 일어나기 이미 10여 년 전(1053년)에 이 글을 썼으므로, 민간의 입양 풍습이 천박하다는 주장은 오대사(五代史)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신오대사·오대사진가인전론』의 서론 격인 전반부는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북의」 권2의 해당 구절과 일점일획까지 일치한다. 그러므로 구양수는 북의 논쟁이 일어나자 「오대사진가인전론」의 서론 부분을 갖고 와서 주장의 핵심 논거로 삼은 것이다. 「오대사진가인전론」 중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만인이 태어나 지각이 있어 부모를 사랑하거늘 어찌 자식에게 차마

19) 歐陽修, 「濮議」卷5, 「爲後或問下」, “今苟以爲人後之故, 一旦反視若未嘗生我者, 其絕之固已甚矣. 使其眞絕之歟, 是非人情也. 迫於義而絕之歟, 則是仁義者教人爲僞也. 是故聖人知其無一可也. 以謂繼承人之重而不害於仁, 退得申其恩而不害於義, 又全其天性而使不陷於爲僞.”(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994면.)

천성을 끊게 하는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만일 차마 하지 못하는데도 겉으로 끊는 체만 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만이다. 민간의 비천한 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용자 주: 입양아가 장차 성장하여 친부모를 찾아가는 일)을 매우 염려한다. 하지만 구차하게 흠치고서 남과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법으로 간주할 수 없으니 그것은 소인의 행태이다. 출제(出帝)가 생부인 석경유(石敬瑁)와 부자 관계를 끊고 그를 신하로 삼아 벼슬을 내려 주었다. 원칙적으로 황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자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자, 실로 민간의 비천한 습속에 따른 행위를 그가 습관적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²⁰⁾

이처럼 민간의 입양 풍습에 대한 구양수의 비판은 오대 시기 진 왕조의 출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진 왕조의 입양 풍습을 문제 삼을 뿐 아니라, 그런 경향이 오대의 여러 왕조에서 널리 성행했다고 보았다. 특히 후당(後唐)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그는 『신오대사』의 「의아전(義兒傳)」에서 그 양상의 일단을 보여준다.²¹⁾

20) 歐陽修, 『新五代史』 卷17, 「五代史晉家人傳論」, “凡物, 生而有知, 未有不愛其父母者, 使是子也, 能忍而眞絶其天性歟. 曾禽獸之不若也. 使其不忍而外陽絶之, 是大僞也. 夫閭閻鄙俚之人之慮於事者, 亦已深矣. 然而苟竊欺僞, 不可以爲法者, 小人之事也. …出帝之於敬瑁, 絶其父道, 臣而爵之, 非特以其義不當立, 不得已而絶之. 蓋亦習見閭閻鄙俚之所爲也.” *번역은 동양고전종합DB의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08. 五代史晉家人傳論을 참고했다. URL: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222&titleId=C72

21) 남송대 마영경(馬永卿)은 구양수가 북의에서 미처 다 표하지 못한 깊은 의중이 「의아전」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육일 선생(인용자 주: 구양수)은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깊은 의도를 깃들인다. 북안의왕을 추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온조정이 육일 선생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육일 선생은 위공(魏公; 韓琦)에게 자신의 묘지를 지어달라고 유언했다. 처음에 북안의왕을 추존하려 논의할 때 정부에서 숙의하여 공동으로 상주문을 제출하면서 육일 선생이 바랐던 것은, 위공이 이 일을 담당함으로써 후대에서 혹 제기될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뿐이었다. …육일 선생은 북안의왕을 추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오대사(新五代史)』 「의아전(義兒傳)」에서 자신의 의도를 온전하게 드러냈다.”(馬永卿, 『懶真子』 卷2, “六一先生作事, 皆寓深意. …至議推尊漢安懿王, 同朝俱攻六一. 故六一遣

아! 세도(世道)가 쇠퇴하고 인륜이 무너져 친소 관계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다. 동족 간에 전투가 일어난 반면 이족(異族)끼리 부자 관계를 맺었다. 후량(後梁)의 개평(開平) 원년에서 후주(後周)의 현덕(顯德) 말년에 이르는 50여 년, 천하의 다섯 나라는 실제로 여덟 개 성(姓) 출신 인물이 임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셋은 양자 출신이었다. 크게 된 경우는 천하를 취하고 그다음은 공로를 세워 장상(將相)이 되었지만, 어찌 시대적 분란을 틈타 이익으로 결합하고 서로 의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후당(後唐)은 자신을 사타(沙陀)라고 부르면서 대북(代北)에서 일어났다. 후당[의 임금] 함께 한 이들은 모두 당시 일시의 영웅호걸이었는데 그들을 양자로 삼았고 이들을 모아 “의아군(義兒軍)”이라고 불렀다. 당 태조의 양자가 많으나 기록할 만한 자는 아홉 사람이니, 첫째는 명종(明宗)이고 그다음은 이사소(李嗣昭), 이사본(李嗣本), 이사는(李嗣恩), 이존신(李存信), 이존효(李存孝), 이존진(李存進), 이존장(李存璋), 그리고 이존현(李存賢)이다. 이에 「의아전」을 짓는다.²²⁾

오대는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가 차례로 패권을 잡았다. 후량은 주씨(朱氏) 왕조였고, 후당은 이씨 왕조

令托魏公作墓誌。墓誌中盛言初議推尊時，乃政府熟議，共入文字，欲令魏公承當此事，以破後世之惑耳。…然六一深以此事爲然，故於五代史義兒傳，極致意焉。” 마영경은 사상사에서 그다지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다. 다만 1109년 진사에 급제하여 영성(永城)의 주부(主簿)로 근무하는 동안, 그곳으로 유배 온 유안세(劉安世)와 교류하면서 그의 어록, 즉 『원성어록(元城語錄)』을 편찬했으므로, 유안세의 학문과 사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통해 중앙 정계 내부의 여러 가지 고급 정보를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 22) 歐陽修, 『新五代史』 卷36, 「義兒傳」, “嗚呼, 世道衰, 人倫壞, 而親疏之理, 反其常. 干戈起於骨肉, 異類合爲父子. 開平顯德五十年間, 天下五代而實八姓, 其三出於丐養. 蓋其大者, 取天下, 其次, 立功名, 位將相, 豈非因時之隙, 以利合而相資者邪. 唐, 自號沙陀, 起代北. 其所與, 俱皆一時雄傑武之士, 往往養以爲兒, 號義兒軍. 至其有天下, 多用以成功業, 及其亡也, 亦由焉. 太祖養子多矣, 其可紀, 九人, 其一, 是爲明宗, 其次曰嗣昭嗣本嗣恩存信存孝存進存璋存賢. 作義兒傳.” *번역은 동양고전종합DB의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6) 03. 義兒傳을 참고했다.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226&titleId=C3)

였으며, 후진은 석씨(石氏) 왕조였고, 후한은 유씨(劉氏) 왕조였으며, 마지막으로 후주(后周)는 곽씨(郭氏) 왕조였다. 그런데 후당의 제2대 황제인 명종(明宗) 이사원(李嗣源)은 태조인 이극용(李克用)의 양자이며 본래 이름은 막길렬(邈佺烈)이었다. 그리고 후당의 마지막 황제인 이종가(李從珂)는 이사원의 양자인데 본래 성은 왕(王)이었다. 마지막으로, 후주의 제2대 황제 곧 세종은 곽위의 양자로서 본래 시씨(柴氏)였다. 따라서 구양수의 말처럼 오대 시기에는 다섯 개의 성씨가 다섯 왕조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여덟 개 성씨에서 황제가 나왔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그중 세 명이 양자로서 본래 다른 성씨를 지녔기 때문이다. 개평(開平) 원년에서 현덕(顯德) 말년에 이르는 단 50여 년 사이에 무려 황제 세 명이 양자 출신이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입양 풍습이 성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구양수가 사례로 든 후당 태조의 양자를 보자. 앞서 말했듯이 명종의 성은 이씨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사소의 본래 성은 한씨(韓氏)였고, 이사본의 성은 장씨(張氏)였으며, 이사온의 본래 성은 락씨(駱氏), 이존신의 본래 성은 장씨, 이존효의 본래 성은 안씨(安氏), 이존진의 본래 성은 손씨(孫氏), 이존현의 본래 성씨는 왕씨(王氏)였다. 마지막으로, 이존장의 본래 성씨는 미상이지만 태조의 양자임은 틀림이 없다.

당말오대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 시대부터 양자를 들이는 것 자체는 합법이였다. 다만,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성 출신의 어린이를 양자로 들이는 것만이 법에 합치했다.²³⁾ 그렇지만 당말·오대 시기에는 무려 세 명의 이성(異姓) 황제가 출현했던 것에서 보듯이 이성 출신을 양자로 들이는 일이 성행

23) 당나라 법률이 규정한 입양 원칙은 이렇다: 자식이 없다면 동종(同宗)의 자식을 양자로 들일 수 있다, 이성(異姓)의 남아를 양자로 들이는 자는 “徒一年”(징역1년)의 형법적 처벌을 받는다, 만일 버려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이성(異姓)이라 할 지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다. 盛會蓮, 『試析唐五代時期民間的養老狀況』, 『中國經濟史研究』 2014年 第1期, 34면.

했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후당 태조의 양자들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성씨의 사람을 양자로 들이는 일이 널리 일어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의 자식을 대량으로 양자로 들이는 일은 중앙 통일 체제의 해체 및 이민족의 풍습 전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수나라 말에서 당나라 초기에 걸친 혼란기 중 당나라에 끝까지 대항했던 고개도(高開道, ?~624)는 부하들이 이반의 조짐을 보이자 장사(壯士) 수백 명을 모집하여 양자로 삼고서 자신의 거처를 지키게 했다.²⁴⁾ 또한, 같은 시기의 군웅 중 한 명이었던 두복위(杜伏威, ?~624) 역시 장사 30 명을 양자로 들이고 군사로 삼았다.²⁵⁾

당나라가 성립되고 나서도 중앙 통일 체제에 위협을 가했던 세력은 어김없이 이성을 양자로 삼았다.²⁶⁾ 안록산(安祿山, 703~907)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돌궐 부족 중 하나인 동라(同羅), 자신에게 항복했던 해족(降奚), 그리고 거란의 장사[曳落河] 8,000명을 가자(假子)로 삼아군사적 대비를 갖추었다.²⁷⁾ 그는 이처럼 양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부자군(父子軍)”으로 불렀다.²⁸⁾ 또한, 유계절도사(幽薊節度使)였던 주도(朱滔, 740~785)가 반란을 일으켜 정국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회서절도사인(淮西節度使)인 이희열(李希烈)에게는 적어도 양자 천여 명이 있었으며, 소의절도사(昭義節度使) 노종사(盧從史, ?~810)는 의아(義兒) 300명을 길렀다.²⁹⁾ 이처럼 당나라 중엽 이후 절도사가 양자 관계로 맺어진 집단적 무력을 신변에 두었던 현상이 널리 나타났다.³⁰⁾

24) 『新唐書』 卷86, 「列傳第十一」, “初, 開道募壯士數百爲養子, 衛閭下.”

25) 『新唐書』 卷92, 「列傳第十七」, “伏威有養子三十人, 皆壯士, 屬以兵, 與同衣食.”

26) 戴顯群, 「唐五代假子制度的類型及其相關的問題」,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年第3期. 105면.

27) 『新唐書』 卷225上, 「列傳第一百五十五上」, <逆臣上>, “養同羅、降奚、契丹曳落河八千人爲假子.”

28) 戴顯群, 앞의 글, 107면.

29)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62~63면.

30) 堀敏一, 위의 글, 79~80면.

상기 현상 빈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가 꼽힌다. 그중 하나는 북방 민족의 양자 습속이 중원(中原)에 유입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조(唐朝)의 해체 경향으로 인한 인적 관계의 변화이다. 먼저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자. 중원에 들어온 호족의 양자 습속이 널리 퍼짐에 따라 번수(藩帥)들이 이성의 양자를 대량으로 들여 개인 친위 무장 세력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진인각(陳寅恪) 이래 주로 중국 측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³¹⁾ 이들에 따르면, 북방의 소수 민족 사회는 씨족제적 전통을 고수하여 인적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가 가족적인 것이었다. 어떤 이가 다른 인물과 관계를 형성할 때 가족관계 상의 용어가 그 관계에 적용된다. 예컨대, 어떤 장수가 장사(壯士)를 자기 휘하에 두었을 때, 이들의 관계는 상급자-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쉽사리 부자 관계로 규정된다. 호족의 친병(親兵) 제도는 이런 기제를 통해 성립된다.

그다음 원인을 살펴보자. 이것은 주로 일본 측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 되는데 양자 집단 형성의 내부원인설이라고 할 수 있다.³²⁾ 당조(唐朝) 중앙 권력에 대항하여 상대적 자립을 꾀했던 유력 번진 중 하나인 위박(魏博)의 지도자들은 중앙의 무력에 맞서기 위해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군사를 징집하여 “단결(團結)”, “토단(土團)” 같은 향병(鄉兵)을 양성했지만, 외지 출신이었던 지도자들이 그 지방의 토착민 출신인 향병을 깊이 신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후 별도로 관건(官健) 즉 직업군인을 채용하여 아군(牙軍) 집단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군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토착민이었다. 게다가 아군은 부자상습(父子相襲)을 일

31) 戴顯群, 앞의 글, 106~107면.

32) 오자와 마사아키(大澤正昭), 구리하라 마스오(栗原益男), 도시카즈 호리(堀敏一) 등이 그 원인에 집중하여 외부자 집단을 분석했다. 도시카즈 호리의 논지가 소개된 저서는 앞서 언급했다. 구리하라 마스오의 분석과 논지는 貝塚茂樹 외/윤혜영 편역, 『중국사』(홍성사, 1986)에 번역, 수록된 그의 글을 참고했다. 오자와 마사아키의 논지는 다음을 볼 것. 大澤正昭, 「唐末の蕃鎮と中央勸力: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32(2), 1973.

삼는 등 점차 특권 집단이 되어 마침내 번진의 지도자를 빈번히 교체해 버리는 하극상을 연출하였다.³³⁾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시 사병(私兵) 또는 가병(家兵)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충성을 기약하기 위해 그들을 양자(養子)로 삼았다.³⁴⁾ 요컨대, 군현제로 대변되는 당 왕조의 공적 질서를 번진(藩鎮)이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번진도 내부로부터 공적 질서가 허물어지고 그 지도층은 극단적 사적 관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당시의 양자에게 자신이 섬기는 의부는 이중적 의무의 대상이다. 우선 그는 아버지이므로 효도를 바쳐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무력 집단의 우두머리이므로 충성의 대상이다. 구양수는 『신오대사』에서, 효도와 충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고민했던 여러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³⁵⁾ 그런데 양자(養子)에게는 효도와 충성 사이의 갈등 상황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러한 양자가 만일 본생부(本生父)를 못 잊어 여전히 그를 아버지로 대한다면, 그는 효도는 물론이거니와 충성의 덕목을 저버린 자가 되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상의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 중엽~오대의 입양 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미 당 왕조 이전부터 동성 또는 이성의 자손을 양자로 삼는 습속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당 왕조가 성립되고 난 후 북방 이민족의 입양 습속이 중원에 유입된 상태에서, 중앙 및 번진 내 공적 질서가 점차 약화하자 입양 습속이 급속하게 확산했을 것이다. 양자를 대거 입양했던 것은 당 왕조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열의 결과 강화되었던 현

33)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42~43면.

34) 上同, 64~65면.

35) 구양수는, 충(忠)을 위해 모친과 처자식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오진(烏震)을 이렇게 평한다. “爲之雖利於國, 而有害於其親者, 猶將辭其祿而去之.”(『新五代史』 卷26, 『烏震』) 또한, 충(忠)과 효(孝)가 상충하자 양자의 절충을 끝까지 도모했던 이종경(李從璟)을 칭찬했다.(『新五代史』 卷15, 『明宗子-從璟』)

상이다. 더구나 그 현상은 오대의 분열상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렇다면 그 현상 내부에는 왕조 분열의 씨앗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의부자(義父子) 관계가 민간에 파급되면, 혹은 이미 사회에 존재했던 그런 경향을 더 강화한다면, 사회 곳곳에 의부자 또는 의형제 관계로 맺어진 집단이 창궐하여 왕조의 분열을 촉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구양수의 염려였을 것이다.

적청(狄靑)의 경질을 촉구하는 그의 1065년 차자(劄子)는 우리의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³⁶⁾

추밀사(樞密使) 적청(狄靑)은 병졸 출신으로 무용(武勇)이 있다고 이름나, 섬우(陝右)에서 병력을 지휘하여 명성을 드러냈고 광서(廣西)에서 적을 사로잡아 다시 작은 공로를 세웠습니다....지금까지 3-4년 동안 비록 뚜렷한 잘못은 없었지만, 불행히도 군대 실정을 안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원인을 미루어 보면 군사들은 본래 소인들이라 적청의 얼굴에 문신이 있어서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고 좋아하고, 그가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영광으로 여겨 좋아하고 흠모하였습니다.... 당나라 때 주차(朱泚)는 본래 반역한 자가 아니고 창졸간에 군사들에게 떠밀려 그렇게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대저 소인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우환거리가 되는 자가 많습니다. 주차는 결국 멸족당했으나 덕종(德宗)의 환난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³⁷⁾

36) 리창수[李昌舒]는, 적청에 대한 구양수의 비판이 근거 없는 날조에 불과하며 이때 구양수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비판 이면에 있는 구양수의 우려는 읽지 못한 듯하다. 李昌舒, 앞의 글, 126면.

37) 楊家駱 編, 『歐陽修全集』(臺北, 世界書局, 1988.), 861면, 『論狄靑劄子』, “臣竊見樞密使狄靑, 出自行伍, 號爲武勇, 自用兵陝右, 已著名聲, 及捕賊廣西, 又薄立勞效...今三四年間, 雖未見其顯過, 然而不幸有得軍情之名. 推其所因, 蓋由軍士本是小人, 面有黥文, 樂其同類, 見其進用, 自言我輩之內, 出得此人, 旣以爲榮, 遂相悅慕...且唐之朱泚, 本非反者, 倉卒之際, 爲軍士所迫爾, 大抵小人不能成事而能爲患者多矣. 泚雖自取族滅, 然爲德宗之患, 亦豈小哉.”

앞서 한 차례 언급했다시피, 당 왕조 때 변진의 아군(牙軍)은 스스로 특권 집단이 되어 자신들에게 더 후한 대접을 해 줄 인물을 골라 번수로 세웠다. 구양수가 위 인용문 후반부에서 언급한 바, 절도사였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주차(朱泚)와 그 동생 주도(朱滔)는 그런 과정을 거쳐 번수가 된 인물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군대를 지배하기 위해 개인적 관계와 가족적 관계에 의존했다고 한다.³⁸⁾ 구양수가 보기에 적청은 장차 주차와 같은 유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컸다. 그는 일반 병졸 출신으로서 군대의 실정과 병사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서 병사의 흠모 대상이었다. 그런 경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적청과 병사가 의부자 또는 의형제 집단이 되어 왕실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구양수의 염려였다. 간단히 말해 적청의 군대는 아군의 재판이 될 단초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청은 비록 뚜렷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당장 경질되어야 했다. 그가 이렇게 다소 앞질러 가는 듯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까닭은, 당시 상군(龐軍)과 금군(禁軍)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무력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천자(天子)가 파견한 관리를 폭행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당나라 때 변진의 아군이 행했던 일과 궤를 같이하는 불길한 조짐이었기 때문이다.³⁹⁾

요컨대, 구양수에게서 의부자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친부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억압하는 것은, 이익 실현을 위해 ‘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허위의 세계로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었고, 더구나 그런 유사가족적 조직은 장차 왕조의 통일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맹아가 될 수 있었다.

* 번역은 동양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음. (URL: http://db.cyberseodang.or.kr/from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221&titleId=C23)

38)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294면.

39) 楊家駱 編, 『歐陽修全集』(臺北, 世界書局, 1988.), p.122, 「本論 上」, “兵之得賞, 不以無功知媿, 乃稱多量少, 比好嫌惡, 小不如意, 則群聚而呼, 持挺欲擊天子之大吏, 無事之時, 其猶若此.”

4. 맺음말

구양수는 영종이 인종을 부친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복안의왕을 ‘친’으로 호칭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몰인정하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었다. 종법상으로는 인종과 영종 사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되, 사적으로는 복안의왕과 영종 사이의 친부자 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왕조의 황제만큼 공적인 인물은 있을 수 없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적 의미를 띠므로 그에게 사적 친족 관계는 원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구양수 반대파의 주장 근간에 있던 사유였을 것이며 그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구양수가 그 타당성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지만 황친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까닭은, 당대 중후반기에서 오대에 걸쳐 유행했던 의부자 현상의 사익적 동인과 분열적 효과, 그리고 인륜 파괴의 후과를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왕실이 의부자 관계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것이 사회의 전반적 풍조가 되어 곳곳에서 의리로 맺어진 반 왕조적·비왕조적 결사체가 형성될지 모를 일이다. 그에 따르면, ‘공’의 맹목적 강조와 ‘사’의 일방적 경시는 오히려 ‘공을 가장한 사’의 창궐을 초래할 것이다. 진정한 ‘공’은 ‘사’의 인정과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비로소 현실성을 갖는다.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의’로 맺어진 집단이 왕조 분열 세력으로 출현한 결과가 드물다. 그래서인지 선조 등이 사친을 숭봉하려 했을 때 제기된 논의를 보면 구양수의 주장과 유사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황과 이이에게서 보듯 종법과 인정의 대립이라는 면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친숭봉의 원인이 되는 입양에 대해 그리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정약용에 따르면, 조선은 입후자(立後子)가 친부를 여전히 친(親)으로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⁴⁰⁾ 조선

은 17세기 이후 입후자가 승중(承重)하는 사례가 완전히 증가하는데⁴¹⁾, 왕실과 민간에서 입후자에 의한 승중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어찌면 입후자가 친부를 ‘친’으로 부르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친부를 ‘친’으로 대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면, 입후자에 의한 승중이 거부감 없이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원전류

『新唐書』

『新五代史』

柳重教, 『省齋集 別集』.

楊家駱 編, 『歐陽修全集』, 臺北, 世界書局, 1988.

2. 논저류

박종천,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조선 후기 立後와 入養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59~101면.

한상우, 「『繼後膽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제51호, 한국고문서학회, 2017, 189~213면.

戴顯群, 「唐五代假子制度的類型及其相關的問題」,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年 第3期.

40) 박종천,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조선 후기 立後와 入養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호, 2010. 71쪽.

41) 한상우, 「『繼後膽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제51호, 2017. 191쪽.

- 武建雄, 「歐陽修濮議主張의成因與北宋稽古之學的困境」, 『原道』 第38輯, 湖南大學出版社, 2020.
- 盛會蓮, 「試析唐五代時期民間的養老狀況」, 『中國經濟史研究』 2014年 第1期.
- 楊銳明, 「父子關係與新舊交替: 再論北宋“濮議之爭”」,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3卷 第3期, 2022.
- 李昌舒, 「濮議之爭與歐陽修之死」,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0卷 第6期, 2018.
-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 大澤正昭, 「唐末の蕃鎮と中央勸力: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32(2), 1973.
- 小林義廣, 「『濮議』小考」, 『東海大學紀要文學部』 第54集, 1990.
- 仁井田陞, 『唐宋法律文書の研究』,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27.
- 貝塚茂樹 외/ 윤혜영 편역, 『중국사』, 흥성사, 1986.

■ Abstract

Ouyang Xiu's View on the Adoption Habit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Lee, Won Seok

“Puyi”(濮議) that took place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developed into a fierce political struggle between bureaucrats during the reign of King Yingzong(英宗), and ended the political career of Ouyang Xiu(歐陽修). The term “Puyi” refers to disputes over whether Puanyiwang(濮安懿王), the biological father of King Yingzong, should be called his father or uncle by King Yingzong. This dispute was a matter of keen interest to King and subjects of the time. But modern researchers have only viewed it as a dispute caused by the mobilization of officials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King Yingzong and Queen Empress, or even defined it as partisan struggles that undermined the unity of the dynasty, or explained it as pointless, useless arguments. This article, by analyzing Ouyang Xiu's arguments, attempts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s latent on the basis of “Puyi” and clarifies his political thoughts. Ouyang did not deny the protocol that King Yingzong should call King Renzong(仁宗) his father. However, he argued that there are no problems with King Yingzong calling simultaneously Puanyiwang as “Father”(親), and that political opponents' criticism on that is inhumane. Also, Ouyang insisted that the father-son relationship between King Renzong and Yingzong should be recognized publicly, but privately, the father-son relationship between Puanyiwang and Yingzong also should be tolerated. The reason for his assertions was that he witnessed the selfish motives of stepfather and stepson relations that were prevalent from the mid-late Tang dynasty to the five generations, its influences on the downfall of the dynasty, and its destructive consequences for humanity. Suppressing the natural feelings between the father and son in order to kee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epfather and stepson stable, he argued, can lead people to actually pursue profits by using ‘righteousness’(義) as an excuse. Moreover, he feared that such quasi-familial organizations could become the seed to dismantle the dynasty's unifi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Ouyang Xiu(歐陽修), Puyi(濮議), Adoption, Righteousness(義), Proprieties

(禮).

이 논문은 2023년 2월 16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13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위민호** · 류도향***

— 목차 —

1. 들어가며
2.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로서 법
3. 법의 양가적 역할: ‘매체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
4. 정당한 법의 규범적 토대로서 커뮤니티
5. 나가며 : 체계-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법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에 입각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계와 생활세계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서 찾는다. 그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제1저자).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교신저자).

따르면 법은 한편으로 체계의 기능적 명령이 생활세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활세계에서 형성된 의견과 의지를 체계에 전달하는 ‘전달띠’(Transmissionsriemen)로서 사회 통합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에 따르면 법은 토론의 보편성과 접근가능성이 보장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적 권력을 기반으로 산출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는 하버마스가 정당한 법의 실질적인 형성 기반으로 설정한 ‘공론장’ 개념을 오늘날 유연하고 다원적인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 ‘커뮤니티’로 재정식화함으로써,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이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전달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조직 형식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정당한 법의 규범적 토대로서 커뮤니티의 정치적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커뮤니티 지원법 도입을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하버마스, 절차주의적 법이론, 체계, 생활세계, 공론장, 커뮤니티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에 입각해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이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전달띠’(Transmissionsriemen)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조직 형식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하버마스는 1980년대 초반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면서 ‘체

1) 법의 전달띠 역할에 대해서는 위민호,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로서 법의 정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논문, 2012년 참조. 본 논문의 일부 내용(특히 2절과 3절)은 위민호,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로서 법의 정당성」의 내용을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die 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²⁾ 테제를 주장한 바 있다. 즉 경제와 행정으로 구성되는 체계의 힘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창의적 문화에 기반한 생활세계를 위협·침해하고, 결국에 식민지화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식민지화의 사례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마을운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마을운동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삶의 필요로부터 공적 의제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과 국가 행정이 마을운동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생활세계의 동력이 사물화되거나 고갈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마을 운동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면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흐름으로서의 마을은 껍데기로 치부되다 버려지고”³⁾, 획일적인 전체주의 속성을 가진 체계에 의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다.⁴⁾ 마을운동의 한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참여와 의사소통적 관계망이 체제와 자본이 만들어놓은 정형화된 톱니바퀴에 종속될 때, 생활세계는 실뿌리까지 촘촘하게 식민지화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법’을 제시했다. 즉 그는 법이 체계에 대한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계와 생활세계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법은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를 체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권력을 통해 획득한다. 즉 법은 한편으로 체계의 기능적 명령이 생활세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활세계에서 형성된 의견

2)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307면.

3) 권단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2014, 55면.

4) 위의 책, 58면 참조.

과 의지를 체계에 전달하는 전달띠로서 사회 통합의 원천이 될 수 있다.(2절. 체계와 생활세계의 연결띠로서 법)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법을 ‘매체로서의 법’(Recht als Medium)과 ‘제도로서의 법’(Recht als Institution)의 이원적 개념틀로 규정했다. 전자는 화폐와 정치권력이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조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법으로서, 경제법, 상법, 행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생활세계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체계가 생활세계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제도로서 법의 대표적인 예이다.⁵⁾ 하지만 이런 이원적 법이론 구상으로는 현실정치 맥락에서 법이 체계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3절. 법의 양가적 역할 : ‘매체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면서 절차주의적 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법이 토론의 보편성과 접근가능성이 보장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될 때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은 법을 산출하고, 체계의 힘이 과도해질 때 그에 맞서 생활세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필자는 하버마스가 정당한 법의 실질적인 형성 기반으로 설정한 공론장 개념을 오늘날 유연하고 다원적인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 ‘커뮤니티’로 재정식화함으로써,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4절. 정당한 법의 규범적 토대로서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필자는 정당한 법의 규범적 토대로서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지원법 도입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지원법은 특정한 목표와 성공을 지향하는 직접적인 규제 대신에, “조직, 절차, 그리고 조종권한의 새로

5)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561면.

운 분배를 규제하는”⁶⁾ 방식의 간접적인 규제의 형식을 취한다. 이때 간접적인 규제는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불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자기규제가 성찰적·반성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열린 절차의 마련을 의미한다.(5절. 나가며 : 체계-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법)

2.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로서 법

하버마스는 비판이론 1세대가 사회적 합리화를 오직 도구적 합리성의 확대로 파악한 것을 비판하면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규정하는 목적 합리성과 논증적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에 도달하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kommunikative Rationalität)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행위체계를 제시한다.⁷⁾ 그리고 그는 이원적 행위체계에 따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원적 사회이론을 구상한다.

2단계 사회이론은 사회가 체계와 생활세계로 나누어지는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문명이 고도화되고 사회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작동하는 생활세계에서 기능적인 명령으로 작동하는 체계의 분화가 요구된다. 즉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 사회통합을 한다는 것이 생활세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세계로부터 체계가 분화된 것이다. 생활세계가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면, 체계는 화폐와 권력과 같은 탈언어화된 매체를 통해 작동하는 도구적 합

6) J. Cohen, *Regulating Intimacy: A New Legal Paradig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78면.

7)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사, 2006, 46-48면 참조.

리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병폐는 체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형식화된 체계의 기능적 명령들이 갈수록 비대해져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 생활세계를 침범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계의 과도한 개입을 저지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의사소통적 권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총체적 사회의 관점에서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비대해진 체계명령이 생활세계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⁹⁾ 그리고 하버마스는 법이 그 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가 법의 역할을 정의할 때 ‘전달띠’(Transmissionsriemen)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로, 법은 생활세계와 체계를 연결하고 각각의 명령을 전달한다. 둘째로, 법은 각각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언어로 번역해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셋째로, 법은 생활세계에 가해지는 체계의 강한 명령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 역으로 생활세계의 일상언어가 체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법의 언어로 전환시켜준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법은 생활세계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체계를 강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¹⁰⁾

8)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인지적-도구적 합리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은 계획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타당성의 정도로 합리적인지 아닌지 파악된다. 따라서 인지적-도구적 합리성 개념은 목표지향적이며, 성공지향적이고, 비의사소통적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46-48면 참조.

9)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원 옮김, 나남출판, 2004, 41면 참조.

10)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옮김, 나남출판, 2000, 87

법은 생활세계의 원리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행위를 재생산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생활세계의 언어적 표현을 체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전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법의 기능은 법이 분화된 생활세계와 체계를 서로 연결하는 사회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은 체계의 원리를 생활세계에 맞을 내리게 하는 ‘맞출’이면서, 체계를 걸러내는 ‘필터’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언어적 표현을 대신해 체계에 전달하는 ‘전달띠’이자, 의사소통을 증폭시키는 ‘변압기’이다. 이러한 전달띠의 의미는 체계와 생활세계가 서로 구분되지만 법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버마스의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법이론에서는 법을 ‘재귀준거성’(Selbstreferenz)과 ‘자기생산성’(Autopoiesis)을 가진 폐쇄적 체계로 이해한다.¹¹⁾ 법체계는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주변 환경을 정보로서 지각하고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열려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정보에 대해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원적 코드 값을 할당하는 원리는 법체계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폐쇄되어 있다.

하버마스는 법을 루만과 같이 체계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규범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사회는 문화 및 인격 구조와 함께 의사소통적 행동의 흐름을 통해 재생산된다. 주체들의 의지형성과 관계된 정치영역조차 체계의 기능적 명령으로 환원되면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치와 규범과 상호이해

면 참조.

- 11) 재귀준거성은 체계가 환경과의 차이로부터 변화를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에 대해 열려있지만, 적응에 대한 판단은 닫혀있다. 자기생산은 끊임없이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차이를 지각하고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응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증식하는 과정이다. 니클라스 루만, 『사회체계이론 1』, 21~23면 참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은 물론이고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도 한낱 가상¹²⁾으로 전락한다.

하버마스는 사회 복잡성에 따른 의견불일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일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사회 복잡성은 사회합리화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합리화 정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참여자들의 상호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법이 모두에게 정당한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규범에 대해 합리적 담론을 요구하고 타당성을 산출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실정법은 의사소통에 부가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규범이 실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점점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해가는 추세 속에서 법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담당하게 되는 유일한 매체로 기능한다. 그것은 법이 생활세계의 행위기대를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화폐와 행정 권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자신의 통합활동 속에서 상이한 원천을 가진 명령들을 융합”¹⁴⁾할 수 있다.

12)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76면.

13)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6~58면 참조. 실정법은 한 사회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성을 획득한다.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법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비롯한다. 이때 이 절차는 법적 규범을 정당성의 문제로 소급하고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 절차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의 준수만으로는 실정법이 어디에 자신의 정당성을 기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절차에 대한 준수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질서와의 일치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의 정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396면 참조.

14)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68면.

3. 법의 양가적 역할 : ‘매체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전달띠로서 법을 제도적 차원과 매체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매체로서의 법이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된 경제와 행정을 질서지움으로써 체계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제도로서의 법은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를 조정하고 의사소통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체로서의 법’은 화폐와 정치권력이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법으로서, 경제법, 상법, 행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제도로서의 법’은 생활세계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체계가 생활세계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제도로서 법의 대표적인 예이다.¹⁵⁾

하버마스는 법의 이런 양가적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에서 법의 매개적 작동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의 이원적 개념들은 법이 체계의 기능적 명령에 종속되는 부정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비판하기에는 추상적인 이론 구상에 머물러 있다. 이 개념틀로는 법패러다임 자체가 체계의 힘에 종속되었을 때, 그것을 비판할 규범적 토대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매체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을 구분한 핵심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① 법이 체계와 생활세계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상호매개하는 중간자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② 법이 자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자유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법의 모순적 성격에서 출발하는 법이론을 구상한다. 이는 ③ 법이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정당성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불일치를 조정해가는

15)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561면 참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전제한다.

헌법을 예로 들어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인 헌법은 그 밖의 법들을 규제하는 상위법이다. 따라서 경제법이나 행정법을 통해 체계의 힘이 과도하게 생활세계에 침투할 때, 헌법은 이를 저지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헌법이 경제법이나 행정법을 규제하는 절대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 또한 의회, 자치단체, 행정부, 사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합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하버마스는 법적 정당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상호이해 과정에 기초하여 스스로 성취해야 할 과제”로 이해한다.¹⁷⁾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의 측면에서 사회는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비판받고, 토론되었는지, 나아가 의사소통적으로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은 법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박, 상황의 힘, 인습, 관습과 같은 요소들을 배제하고, 당사자들이 “복종해야 하는 규칙의 권위를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형성(politischen Meinungsbildung)과 의지형성(Willensbildung) 속에서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정당성을 획득한다.¹⁸⁾ 즉 법이 지배를 조직화하는 단순한 사실적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의 규범적 원천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권력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¹⁹⁾

16) 사법부의 논변과정과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을 의사소통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 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남성일,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에서 본 사법부의 존립 근거』, 『철학·사상·문화』 21, 2016 참조.

17)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면

18)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66면 참조.

이처럼 하버마스 이론에서 법이 체계와 생활세계를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이 “이해지향적 행위의 구조에 적합한 갈등 조절의 절차, 즉 대화적인 의사형성과정과 합의지향적 협의 및 결정절차”²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이론이 구체화된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절차주의적 법이론을 단순히 법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해석적 전망을 열어주는 ‘패러다임’으로서 제시한다.²¹⁾ 즉 법은 사회 전체적 맥락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해석 체계로서, 규범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먼저 규범적인 차원에서 “담론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을 위한 절차와 의사소통적 전제”가 “정당한 법을 통해 제도화”될 것을 요구하며,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제도화된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과 비공식적인 공적 의사소통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정치체계”의 조직을 요구한다.²²⁾

하버마스는 여기서 문제가 “정치적 조절을 위한 법의 도구화”²³⁾, 즉 현실맥락에서 법이 자본과 권력의 침범 역할을 하면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 규제 완화나 민영화 관련 법이 체계의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고, 관료적 행정법은 행정 편의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형식의 맥락을 추상화시키면서 의사소통적 상호이해의 행위 영역을 일방적으로 규율·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 복지법은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 수혜 대상으로 간주하는 후견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적 생활세계를 타율적으로 구조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19)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194~195면 참조.

20)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569면.

21)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2면 참조.

22)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2~523면 참조.

23)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3면.

다.²⁴⁾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4. 정당한 법의 규범적 토대로서 커뮤니티

우선 하버마스는 위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분립에 의거한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답한다. 즉 “법률을 제정하는 층위, 적용하는 층위, 시행하는 층위의 제도적 분리”²⁵⁾를 단순히 기능적 분리로 보지 않고, 법패러다임을 다양한 방식의 공적 토론과 민주적 과정의 절차를 통해 상호개입하고 견제하는 과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회적 입법자가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법권을 분산시켜 사법부와 행정부의 정당화 담론을 통해 입법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률을 근거로 비판적 토론 속에서 입법에 관한 견해를 정당화해야 하고, 행정부 역시 단순히 효율성을 지향하는 행정 결정에 그치지 않는 의사소통적 형식과 절차(ex.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청문회, 옴부즈맨 제도 등)를 거쳐 입법 행위를 대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렇게 복합적인 법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데 관건을 공론장이라고 말한다.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한 법의 발생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공론장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의 자립화에 대항하여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활기찬 공론장 뿐이다. [...] 이로써

24) 복지국가 법제화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법철학연구』 18(1), 164~166면 참조.

25)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4면.

우리는 절차주의적 패러다임의 핵심에 이르렀다. [...] 법의 민주적 발생의 핵심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국민주권’과 ‘제도화되지 않은 국민주권’의 전면적인 조합과 상호매개이다.²⁶⁾

여기서 공론장은 제도화되지 않는 국민주권의 수호자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서 생활세계의 내적 동력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행동들로 엮어진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생활세계는 “공공성으로부터의 보호”를 특징짓는 “친밀성”을 핵심으로 하며,²⁷⁾ 친척, 친구, 지인들 간의 만남을 구조화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생활을 연결한다. 생활세계는 언어적 의사소통행동을 통해 재생산되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언어’(natürlichen Sprache)²⁸⁾와 ‘일반적인 이해가능성’(Allgemeinverständlichkeit)으로 이루어진다.²⁹⁾ 공론장은 이런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에 뿌리를 내리면서 잠재되어 있다가, 사회적 문제상황이 사적 생활사에 반향을 일으킬 때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생활세계

26)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7-528면.

27)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27면.

28) 일상언어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며 체계의 전문적인 언어나 특수한 코드와 구분된다. 서로 구분된 언어들은 법의 언어를 통해 번역되는데, 이러한 번역관계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시켜 준다.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88면 참조.

29) 생활세계도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자체 논리에 따라 합리화되어가는데, 그 합리화 정도를 하버마스는 ① 전통과 문화의 재생산, ② 사회통합(연대), ③ 사회화(정체성 형성), 3가지가 본다. 즉 의사소통행위자들이 상호이해하고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은 첫째,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지식을 재생산하고, 둘째,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조정할 때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창출하며, 셋째, 사회화 측면에서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인격 및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204면 참조.

와 공식적 정치공론장을 매개하는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공론장은 원래 서구 근대 사회에서 발생한 개인들의 독서공중의 클럽과 조직형식 등의 역사적 장소를 시초로 갖는다.³⁰⁾ 그런데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공론장을 물리적인 장소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시켜 “의사소통행동 속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공간”³¹⁾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공론장은 “의사소통 흐름들이 걸러지고 종합되어 주제별로 묶인 공적 의견의 더미”³²⁾, “다양하게 분화되고 교차연결된 ...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들”³³⁾로서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전체에 걸쳐 민감한 센서를 가진 경고체계”의 기능을 갖는다.³⁴⁾ 공론장은 참여자들이 사적으로 경험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장하도록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더라도 그 문제를 경고하고 주제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³⁵⁾

하버마스는 오늘날 공론장이 “대중과학적 공론장, 문학적 공론장, 교회의 공론장, 예술가의 공론장, 페미니즘 공론장, 대안적 공론장, 건강

30)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6면;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II』, 498면;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39면 참조.

31)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34면.

32)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33면.

33)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29면.

34)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32면.

35) 공론장은 한편으로 사적인 삶의 영역과 연결되면서 친밀성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 낯선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한다. 공론장은 사적인 삶의 영역, 즉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직장동료와 같은 친밀성을 형성하는 영역인 생활세계에서 형성되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낯선 사람들에게로 확장된다. 또한 공론장에서 구성원들이 사적으로 경험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산출된 고통의 반영물로 가시화되면서, 사적인 의견 교환이 공적인 시민들의 문제체기로, 나아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장의 의사소통은 사적인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32면 참조.

과 관련된 공론장, 사회정책 공론장과 과학정책 공론장 등”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의사소통의 밀도, 조직의 복잡성, 범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³⁶⁾ 그는 이렇게 공론장 개념을 유연하게 확장시킴으로써, 사회적 노동과 상품거래의 시장에 기초했던 근대 부르주아 시민사회 이후의 시민사회 동력을 자생적으로 출현한 비경제적 연결망과 자발적 단체, 조직들에서 찾는다. 이는 체계의 힘에 맞서 현존하는 결사체 및 공론의 구조를 개념화하고, 하위문화적인 대항공론과 대항제도를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을 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구상이다.

하지만 필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오늘날 현재화하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일상언어에서 공론장이라는 말은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에 의해 지배된 기성제도의 의미로 상당 부분 변질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시민발의와 시민포럼, 각종 위원회 등 공론장을 대표하던 의사소통 채널도 공식적 정치영역의 하위체계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론장의 기층 조직이 침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또한 비판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체계가 지배적 힘을 발휘하면서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자발적인 소통의 장이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과 기업의 여론몰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형성의 장을 급속하게 침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오늘날 실용적, 맥락적,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출현하는 커뮤니티로 재정식화함으로써, 정당한 법의 작동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³⁷⁾ 여기서 커뮤니티는

36)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48면.

37) 필자의 제안처럼 하버마스 법이론을 현재화한다면, 하버마스 생활세계 정치를 이상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 법이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정병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지향점과 한계점』, 『법학연구』 27(1), 2016 참조.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질적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닌, 평등하고 개방적인 조직형식에 기초한 열린 관계망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커뮤니티는 코헨(J. L. Cohen)과 아라토(A. Arato)의 연구를 빌려오자면, ① 가족, 비공식 집단, 자발적 결사체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식의 다원성에 기초하며, ② 개인의 자기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는 모든 네트워크를 제한 없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③ 문화와 의사소통의 고유한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맥락적 공공성을 형성하고, ④ 국가나 경제의 논리와 구별되는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규범적 원천을 가진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³⁸⁾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커뮤니티로 재정식화함으로써 우리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의견과 의지의 토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청사진을 새롭게 그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치국가의 질서를 재구성할 때, 체계의 강력한 힘에 맞서 연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³⁹⁾

커뮤니티에 기반한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의 의사결정과 자기규제 권한을 보장하고, 전체 사회의 법이 하위 커뮤니티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특징이 있다.⁴⁰⁾ 커뮤니티는 공생의

38)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441면 참조.

39) 이러한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로 이다연,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6(1), 2018; 하승우,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도시와 빈곤』 82, 2006; 조희연 편,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한울아카데미, 2010. 참조.

40) 필자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을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변용한다면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가 제안한 급진 민주주의의 모델,

필요에 의해 다원적인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인 가족, 사적 결사, 이웃, 마을을 포괄하며, 각각의 맥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공공성과 규범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며 친밀성을 형성한다. 그러다가 커뮤니티 내에서 또는 다른 커뮤니티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공적으로 토의할 문제가 가시화된다. 이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세계의 실뿌리에서부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매개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적 권력에 기반한 법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질서의 새로운 정당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변동과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법제도로 포용할 수 없는 생활세계 문제들(의료, 노동, 주거, 안전 등)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을 정치적 공론 형성과는 무관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며 국가에 의한 획일적 규제를 자명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커뮤니티를 법의 일방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권력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 재인식할 때, 가족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은 그 내부로부터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⁴¹⁾

이를테면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의 자연인 사이에 체결되

연방주의 사회구성과 유사하다고 본다. 다만 알투스우스가 하위 공동체와 상위 공동체를 순차적이면서 위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하버마스의 다원주의적 사회구상과는 배치된다. 연방주의 사회구성에 대해서는 신용인,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한티재, 2019, 104~107면 참조.

41)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 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 봄, 2022 참조.

는 계약⁴²⁾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공동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 또한 당사자들이 지도록 한다.⁴³⁾ 이처럼 커뮤니티의 의미, 정체성, 규범을 자기준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제도화된 정치적 의지형성의 메커니즘을 변형시키고, 아래로부터 진정한 의사소통권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 체계-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법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적 권력 자체는 문제를 민감하게 감지하지만 체계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약하다. 이 영향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체계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권력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그것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대안적 법 도입이 필요하다. 즉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목소리가 억압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와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42) 전영, 『프랑스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관한 연구 - 팩스제도와 동성혼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40면.

43)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족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다양성 인정이 단순히 사적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자유로운 정치문화에 그에 상응하는 공적 영역을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빌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스웨덴 동거법(Sambo, samman boende), 독일의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en)이 대표적이며, 일본에서는 78곳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생활세계의 불합리한 차별과 낙인을 제거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민주적 절차는 법실증주의가 합법성의 근거로 삼는 형식적 절차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사소통적으로 행위를 조정하는 행위영역들을 지나치게 입법적, 사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역기능을 하버마스는 엄중하게 경고한다.⁴⁴⁾ 따라서 우리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에 기반하여 제안된 대안적 법제화 형태인 ‘성찰적 법’(reflexives Recht)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⁴⁵⁾ 성찰적 법은 법 규제 대상을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절차 규범이다. 이때 간접적 규제는 “사회적 행위자와 체계가 스스로를 조직하도록 ...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는 절차”⁴⁶⁾를 통해 성찰적·반성적인 “자기규제”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인 규제, 관계적 프로그램, 조정제도와 같은 법의 절차화를 통해 현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마을공동체에서 일해온 한 활동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에 의해 박제된 공공성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공동체적 감수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도 공동체적 감성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없애는 방식으로

44)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566면 참조.

45) G. Teubner, “Reflexives Recht: Entwicklungsmodells des Rechts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68-1, 1982, 13-59면; 양천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법사회학의 현황: 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과사회』 30, 2006;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4절 ‘대안적 규제법으로서의 ‘성찰적 법’ 참조.

46) J. Black, “Decentring Regulation”, *Current Legal Problem*, 54, 2001, 111면 참조.

행정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체제나 제도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다듬을 필요가 있고 개혁이 필요하지요.

다만 체제가 주민들을 대상화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체제를 일상적으로 끌고 가자, 낮게 몸을 낮춰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순환시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⁴⁷⁾

위 인용문에서 활동가는 마을에 개입된 행정체계가 공동체 감수성을 없애고, 주민들을 수혜자로 대상화한다고 말한다. 체제나 제도의 철폐가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 활동가의 고백처럼 무늬만 주민자치일 뿐 실질적인 자기규제 절차를 찾아보기 힘들다.⁴⁸⁾

새로운 커뮤니티 지원법은 커뮤니티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커뮤니티 조직과 조종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지원법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양적 성과를 도출하는 대신에, 비가시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의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커뮤니티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자기주장의 공간”이자 “서로를 초대하고 응대하고 환대하며 생활을 엮어가는 일상의 공간”⁴⁹⁾으로서 일상정치 의 장소가 된다. 강제나 압력 없이 친밀성과 공공성을 매개하는 커뮤니티 형성은 체계와 생활세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47) 권단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59면.

48) 신용인,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60면 참조.

49) 유창복,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2014, 113면.

■ 참고문헌

- 권단 외,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 2014.
-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 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 봄, 2022.
- 남성일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에서 본 사법부의 존립 근거」, 『철학·사상·문화』 21, 동서사상연구소, 2016, 30~61면.
- 니콜라스 루만, 박여성 옮김, 『사회체계이론 1』, 한길사, 2007.
- 신용인,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한티재, 2019.
- 양천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법사회학의 현황: 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과사회』 30,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117~140면.
-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원 옮김, 나남출판, 2004.
-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옮김, 나남출판, 2000.
-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I』,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 위민호, 「체계와 생활세계의 전달띠로서 법의 정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논문, 2012.
- 유창복,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2014.
- 이다연,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6(1), 제3섹터연구소, 2018, 85~115면.
- 전영, 「프랑스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관한 연구 - 팩스제도와 동성혼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 정병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지향점과 한계점」, 『법학연구』 27(1), 법학연구소, 2016, 353~376면.
- 조희연 편,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한울아카데미, 2010.

하승우,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도시와 빈곤』 82, 한국도시연구소, 2006, 103~122면.

홍성수,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법철학연구』 18(1), 한국법철학회, 2015, 157~186면.

G. Teubner, “Reflexives Recht: Entwicklungsmodells des Rechts in vergleichender Perpektive”,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68(1), 1982.

J. Black, “Decentring Regulation”, *Current Legal Problem*, 54, 2001.

■ Abstract

**Building a virtuous cycle of System/Lifeworld through
community: The Actuality of Habermas's procedural legal theory**

Wie, Min Ho · Ryu, Do Hy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ways to build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the system and lifeworld in today's Korean society based on Habermas's procedural legal theory. Habermas guarantees the autonomy of the life world and seeks ways in the law to interact with the system and the lifeworld in a virtuous cycle. According to him, the law, on the one hand, restricts the functional commands of the system from invading the lifeworld, and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 source of social integration as a 'Transmissionsriemen' that transmits opinions and wills formed in the lifeworld to the system. According to Habermas' procedural legal theory, law can secure legitimacy when it is produced based on communicative power according to a democratic process that guarantees universality and accessibility of discussion. The author examines the Actuality of procedural legal theory by reformulating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which Habermas set as the basis for the actual formation of legitimate law, into a community concept that is emerging in a flexible and pluralistic form today. In conclusion, this thesis argues that procedural legitimacy must be secured based on an equal and open organizational community in order for the law to serve as a transmission line that mediates the system and the lifeworld and integrates society. Finally, I will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upport Act as a way to activate the political role of the community as a normative basis for legitimate law.

Key words: Habermas, procedural legal theory, system, lifeworld, public sphere, community

이 논문은 2023년 2월 19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11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건우**

— 목차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가정위탁 지원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발전방안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가정위탁보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아동에 관한 가정위탁보호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최근 정책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 내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된 ‘2022년 장애인정책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주제어: 가정위탁, 장애아동,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 사회복지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제도는 성인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가지는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제에서 후순위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이중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 집단에서도 주변부(periphery)적 위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게 당연시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이다.¹⁾ 또한, 장애아동의 안전관리와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발전과 동시에 장애아동의 위기와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 또는 기능이 부재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할 권리의 확보와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모색할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다.²⁾

한편,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보호는 2012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위탁지원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 이후 지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도, 장애아동에 관한 위탁보호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으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2022년에 전문 가정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비록,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된 장애아동이 다수는 아니지만, 가장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
- 1) 최복천, 「장애아동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4(1), 2013, 1~21면.
 - 2) 이경준, 「장애아동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초방안 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4, 2013, 1~23면.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양육되는 아동 중에서 장애 아동의 수가 2.0% 수준인데, 이러한 장애아동은 24시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보호 등을 통한 양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가정위탁은 거의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이 시급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다.³⁾ 또한, 장애위탁아동은 학년과 연령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부모와 접촉하지 않거나, 친부모가 부재할 경우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즉, 장애는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이처럼, 국내 장애아동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탁아동 개인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정위탁이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동 대상 가정위탁은 더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장애아동 위탁관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부족 및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정위탁 등 위탁아동의 일반과 관련한 연구 현황들을 살펴보면, 현행 아동복지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선방안과 같은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3) 서해정·정익중·이선화,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4) 강현아·정익중·강현주·이화조·오세현,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보건복지부, 2020.

5) 정익중,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는데, 이를 위해서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위탁가정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아동의 특수성과 가정위탁, 위탁아동 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가정위탁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의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한계 등을 검토 등을 살펴본다.

2. 이론적 논의

1) 가정위탁의 개념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가정지원제도 및 정책의 개념과 의의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에 소재해있는 개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가정위탁지원 제도 및 정책의 목적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입소에 대한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가정위탁보다, 시설입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아동도 일반가정위탁보다 시설을 통해 관리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가정위탁의 주요 내용

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

또한, 아래 <표 2>는 정부의 가정위탁지원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주요 내

용은 양육보조금 지원, 보험금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대학진학자금 지원,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육보조금과 관련하여,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아동은 월 30만원 이상이 권고되며,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과 만 13세 이상(156개월~)에 대해서는 각각 월 40만원, 월 50만원이 권고되고 있다.

<표 2>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지방이양) 권고 → 30만~50만원 향상 및 차등지원(202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년65천원 이내 → 68.5천원 이내(2020)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위탁아동 종결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 자립지원정착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대학등록금: 아동 1인당 3,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대리양육, 친 · 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 · 인척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종료 아동

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2&PAGE=2&topTitle=)

가정위탁지원정책은 읍·면·동 단위에서 신규사례의 발굴을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 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한다. 이후 시·군·구 단위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게 되고, 도비와 시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한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위탁아동의 양육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체계가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담당자와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위탁아동 신규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의 도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례관리 사업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와 케어(care)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위탁아동으로 발굴한 사례도 존재한다.⁶⁾ 따라서, 가정위탁지원 정책의 집행에 있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 그리고 도비를 집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역할을 시행하는 다양한 주체 모두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위탁은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친부모에 대한 상처치유와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보다 집중적인 보살핌을 통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에서도 아동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제도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라

6) 박건우,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7, 2021, 43~64면.

는 한계가 나타난다.

2) 장애아동의 특수성 이해

다음으로, 장애아동의 특수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다. 일반적인 위탁아동과는 달리, 장애아동은 경증 및 중증장애가 있어서, 이들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위탁가정 지원제도에 포함되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으로 장애 수준 및 어떤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brain lesion)⁷⁾ 및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y) 등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려움과 문제점 관련해, 중증 뇌병변장애 아동의 의료, 재활치료, 보조기구 관련 어려움과 지원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이들 장애아동은 다양한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이 있다. 의료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미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적극적인 의료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중증 뇌병변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을 위한 기관 확대와 정부 지원 영역 및 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이들 장애아동은 보조기구의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과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심각한 수준의 뇌병증(대뇌피질 기능장애, encephalopathy)은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기능 손상, 감각적 손상(sensory impairment), 의사소통 장애 등 다양한 2차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재활치료(발달치료)가 가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

7)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그리고 뇌졸중 등으로 신체의 마비에 따른 일상 생활이 제한되는 장애로 볼 수 있다. 뇌병변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된다.

8) 정익중,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2017.

원되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재활치료가 충족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이들 장애아동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가 및 의료 소모품 등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높은 비용 때문에 구입 및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⁹⁾

다음으로, 지체장애는 치료지원뿐만 아니라 장애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협력적 접근이 중요하다.¹⁰⁾ 또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체장애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및 이동 차량 등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체장애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이해와 치료지원과 관련한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¹¹⁾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3) 가정위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정위탁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를테면, 일반아동에 주목한 가정위탁 관련 연구는 아동의 행동, 영향요인, 법적 분석,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황옥경, 2004; 노충래 외, 2008; 임동호, 2008; 허남순, 2000; 허남순, 2008; 차선자, 2013; 김희연 외, 2006; 박금식 외, 2013). 이들 연구는 주로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심리적 분석을 수행하거나, 제도적 관점에서 정책 및 문제점의 개선, 운영상 특징 분석, 해외사례와의 비교적 접근

9) 최복천, 「장애아동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4(1), 2013, 1~21면.

10) 한경근·이미경·박윤정, 「중도, 중복장애의 개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1), 2009, 287~316면.

11) 박지현·김정연, 「치료지원에 관한 지체장애학교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2012, 241~260면.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가정위탁 등 위탁아동 일반과 관련한 연구 현황들을 살펴보면, 현행 아동복지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탁가정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탁가정과 관련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과 같은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분석한 연구는 전체 위탁가정 및 아동에서 주변부로 인식되고 있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위탁가정보호제도에 대한 접근은 논의가 아직 미비하다. 또한, 전체 위탁아동 중에서 소수이며,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¹²⁾

장애아동에 관한 위탁 등 서비스 제공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보호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즉, 아동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동 복지에서는 제1원칙으로 인식된다. 그런데도 장애아동은 가정 등의 보호보다 시설 등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아동 사례관리와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전문교육, 전문 위탁가정 발굴 등이 필요하다.¹³⁾ 이는 향후 장애아동 위탁가정 지원제도가 마련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해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국내 가정위탁 지원제도를 통해 양육되는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가 2.0% 수준인데, 이러한 장애아

12)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과 관련한 연구는 김윤희(2011), 박현정·김순규(2012), 서해정 외(2020), 이해린·이숙정(2020) 강지영 외(2021)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최근 활발히 논의된 경향이 있다.

13) 박현정·김순규, 『장애아동 가정보호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양과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4), 2012, 5~27면.

동은 24시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보호 등을 통한 양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일반가정위탁에서 거의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이 시급하게 논의되는 상황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가정위탁 지원 수당과 관련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1차 조사결과에서는 대체로 가정위탁 지원에 관한 전문가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월30만원(추가 10만원)’와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도의 개선이 있었으며,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추가 부문에 대한 전문가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일반적으로는 위탁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높게 선호되지는 않으며, 원가정복귀가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사례에서는 원가정 복귀 선호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장애아동들이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관리가 어려워, 원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지만, 원가정이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마지막으로,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가 아동의 발달지연, 불안과 위축, 학교에 대한 적응,

14) 서해정·정익중·이선화,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15) 강지영·정선영·정선옥·김진숙, 「실무자들의 가정외보호 아동 원가정복귀 선호 정도와 관련요인」, 『학교사회복지』 56, 2021, 1~25면.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놀이치료는 학교 적응 어려움의 극복과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친가정 및 위탁부모의 관계 개선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지적장애아동을 친인척을 통해 양육하는 사례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위탁가정 양육자의 희생과 전념 등이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었음에도, 장애아동 관련 위탁가정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가정위탁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가정위탁 현황

먼저, 유형별 가정위탁 아동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위탁아동 및 가정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도의 시행 이후, 가정위탁지원제도는 다양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어왔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종료 시점까지 지원 기간 지속해서 양육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UN아동권리

16) 김윤희, 「발달지연을 보이는 위탁 가정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4(2), 2011, 21~52면.

17) 이혜린·이숙정,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아동의 친인척 양육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2), 2020, 75~104면.

협약의 내용과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입소에 대한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가정위탁보다, 시설입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2019년의 기간에 걸쳐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전체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는 2010년에는 16,359명에서, 2015년 13,728명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11,983명, 그리고 2019년에는 10,38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2019년 전 기간에 걸쳐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유형은 대리양육가정이 평균적으로 6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인척을 통한 위탁가정의 경우는 26.10%, 그리고 일반위탁가정의 경우는 7.4% 수준이다. 해당 기간 대리양육가정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은 감소하였으며, 일반위탁가정의 경우는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내 가정위탁아동 현황

(단위: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19	65.1	66.5	25.9	24.8	9.0	8.7
2018	65.1	66.7	26.3	25.1	8.6	8.2
2017	64.8	66.3	27.2	25.9	8.0	7.8
2016	65.1	66.5	27.2	26.0	7.7	7.5
2015	64.9	66.5	27.3	25.9	7.8	7.6
2014	64.7	66.4	27.9	26.5	7.5	7.1
2013	65.3	67.0	27.6	26.3	7.1	6.7
2012	65.5	67.1	27.5	26.4	6.9	6.5
2011	64.2	65.9	28.8	27.5	7.0	6.6
2010	64.8	66.4	27.8	26.7	7.5	6.9

주: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가정의 시기를 기말현재 위탁가정으로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유형별 비율은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최근 5년 기준(2017~2021년),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47.4%)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11.4%), 미혼부모 및 혼외자(10.4%)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은 2017년 35.0%에서 2021년 47.4%로 증가했으며, 이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2017~2021년)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기	6.3	8.2	5.9	4.1	3.6
미혼 부모· 혼외자	20.5	15.9	11.5	11.3	10.4
미아	0.3	0.5	0.2	0.3	-
비행· 가출· 부랑	5.5	5.9	11.7	11.4	7.9
학대	35	36.1	36.7	42.9	47.4
부모 빈곤· 실직	5.4	5.1	6.5	4.4	5.4
부모 사망	6.8	7.2	7.3	6.8	8.1
부모 질병	2.1	2.3	2.1	1.8	3.1
부모 교정 시설 입소	-	-	-	4	2.8

주: 각 연도 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장애아동 가정위탁 현황

위탁아동의 장애여부 현황은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기관차원에서 현황이 조사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위탁아동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위탁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약 3.6% 수준인 35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위탁유형별로 장애아동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위탁의 경우가 71명(7.4%), 친인척과 대리양육은 각각 83명(3.4%), 198명(3.1%)으로 나타나 위탁유형에 있어 일반 가정위탁 대상 아동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위탁아동 장애여부 현황

(단위: 명, %)

위탁유형	장애	비장애	계
계	352명 (3.6%)	9,542명 (96.4%)	9,894명 (100.0%)
대리양육	198명 (3.1%)	6,270 (96.9%)	6,468명 (100.0%)
친인척	83명 (3.4%)	2,383명 (96.6%)	2,466명 (100.0%)
일반	71명 (7.4%)	889명 (92.6%)	960명 (100.0%)

주: 2020년 기준

출처: 서해정(2020)

한편, 위탁 기간별 위탁아동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2020년 통계를 기준 6년 이상 ~ 10년 미만 장애아동이 92명(26.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이상도 10명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의 31.3% 수준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장애 가정위탁 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약 5년 9개월이며, 장애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7년 5개월로, 약 2년 정도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3) 장애아동 가정위탁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¹⁸⁾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을 조사하여, 장애아동 가정위탁에 대한 견해,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금액의 적정성, 장애아동 가정위탁 관련 기타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18)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일선에서 가정위탁과 관련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한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인터뷰 조사 등의 접근이 수행된 이유는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위탁아동 전반에 대한 자료 및 DB의 구축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제도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데, 실제 위탁가정의 사례관리와 위탁가정 발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일선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면대면 인터뷰와 서면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8일부터 동년 9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첫째, 장애아동 가정위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가정위탁을 통한 양육도 쉽지 않은데,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아동은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 및 치료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전문적 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일반아동에 대한 위탁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필수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아동 대비 활동영역이 좁고 어려움과 제한이 많고 전담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가정위탁시 돌봄의 문제가 있다.” “전문 케어가 필요한 아동이 재활 등 없이 보육에만 치중되어 치료나 개선의 기회를 놓치면 안되므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및 지원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밝혀졌다. 이에 더해서 “가정위탁아동 대상자가 소수이므로, 그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 규모에 대해서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별로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지원에 있어, 현재는 전문가정위탁 지원을 통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의견에서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및 상황과 여건, 그리고 위탁가정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인 장애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개별 위탁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문가가정위탁지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더욱 상향해서 지원하자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생애주기별로 지원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 월 500만원 규모로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 300만원 지원, 또는 일반 위탁아동 대비 2~3배 규모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 규모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아동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치료, 재활, 전문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이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대적 결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공무원이 인식하는 장애아동 가정위탁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이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고, 영향력 있는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지자체 수준에서도 명문화될 수 있는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아동 가정위탁에 있어, 정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위탁 지원제도의 시행에 있어, 충분한 지원금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현황분석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한 문제점 정리

이처럼 현황분석과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살펴본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정위탁지원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원규모(수준)가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전문가정위탁 지원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인식, 위탁가정 발굴의 어려움,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 등의 이슈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4.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발전방안

이하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정위탁지원제도의 발전방안에 있어, 주요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재정지원, 전문가정위탁,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 법적 지위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한다. 먼저, 재정 지원에 관련하여 지원 규모가 지속해서 상향됐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높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주요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양육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지원 기준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양육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유형화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장애아동을 포함한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향되었음에도, 지원금액이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¹⁹⁾

즉, 2020년부터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이 월 30만 원~5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차등지원되지만, 위탁아동의 양육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서는 2014년에만 일반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월평균 118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따라서, 지방정부의 위탁아동 관련 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중앙당국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²¹⁾, 양육지원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현물을 통한 지원과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 과거부터 집행된 가정위탁에 대한 양육지원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3년 6만5천 원, 2004년 7만 원, 2010년 10만 원, 2012년 12만 원 수준이었지만²²⁾, 2018년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양육비 지원규모는 2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0~50만 원 상향하여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인 지방정부(시·도 단위)의 정책결정에 달려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탁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의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재정지원 또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가정위탁 대상자의 경우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충분한 지

19) 박복순·장혜경·정가원·이인선,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5.

20) 이데일리(2017.05.12.) “‘입양법 사각지대’ ‘입양 전 위탁...위탁가정 전전하는 아이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15927936&mediaCodeNo=257>)

21) 한겨레신문(2020.10.21.)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아동 1.2% 그쳐’”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6552.html#csidxdea205bfe4f422bc912f3230b33bf6>)에 따르면, 2017-2019년 동안 가정위탁 사업지침에서 권고한 지방정부의 초기정착금 집행은 43건(1.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22) 오마이뉴스(2016.02.18.) “가정위탁 보호제도 13년, 정책 현실화 돼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3046)

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된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동을 중심으로 전문가정위탁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³⁾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학대 등에 따른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2세 이하, 학대 피해, 경계성 지능 아동 등)를 시행하다가, 비교적 최근 장애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러한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아동의 긍정적 변화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가정위탁 보호율은 24% 수준이지만, 전문가정위탁의 보호율은 3.8%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의 보호율을 37% 수준까지 상향하며, 무엇보다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예산지원의 개선, ‘일시위탁제도’의 추진 등을 포함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공고화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은 중요한 성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항상 존재한다는 측면과 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정위탁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아동 본인이 선호하는 환경, 기준,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므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의 내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현주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정위탁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동기부여, 전문성 제고, 그리고 관계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4가지 핵심모듈(전문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발달과 특수육구

23) 한국일보(2020.11.06.) “전문가정위탁제, 아동 중심으로 마련돼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510230003965>)

이해,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 코칭, 그리고 가족과 지역체계 파트너십 구성)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20시간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참여한 예비 전문가정위탁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4.9(5점 만점 기준) 수준으로 높게 평가된다.²⁴⁾

이러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표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은 제도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전문가정위탁기관 협업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영국의 사례와 전문가정위탁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를 촉진하는 호주의 사례 등을 우리나라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입양의 어려움과 전문가정위탁제도의 진입장벽(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1개 이상 필요)이 오히려 위탁부모로 선정되는데 까다로울 수도 있다. 즉 위탁부모가 부족한 상황에서²⁵⁾, ‘부모됨’이 어려운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아동, 피해아동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격 기준을 객관적 기준 또는 지표와 더불어, 심층적 검증 방안을 강화하여, 이들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양육 및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정위탁지원제도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다.²⁶⁾ 실질적으로, 위탁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인 보호자, 즉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행정처리, 보험가입, 수술 등)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즉, 위탁부모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지만, 친부모보다 법적 권한은 상당히

24) 강현주 외(2021)의 내용 참조

25) 경향일보 (2021.08.30.) “울산 위기아동 느는데 위탁가정은 태부족”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367>)

26) MBC(2021.10.18.) “시설보다 못한 '위탁 가정'..자식처럼 키워도 '동거인’”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8133_34936.html)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친부모와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²⁷⁾²⁸⁾ 이를테면, 위탁부모는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통해 후견인이 되기 이전까지 단순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위탁아동의 명의로 여권과 통장 등의 개설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원장 등 관리자는 지자체의 허가과 승인을 통해,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위탁부모의 경우도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법적인 지위를 허가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부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 등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위탁가정 발굴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위탁부모 즉,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문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위탁가정이 형성되지 못하면, 많은 아동이 보호시설 및 그룹 홈(group home) 등 단체 공동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탁부모는 개인적 관심과 선의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선의만으로는 충분한 양육이 될 수 없으므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을 공고화하여, 위탁가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서 위탁부모

27) 서울신문(2020.08.08.) “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0016002>)

28) 파이낸셜뉴스(2021.10.06.) “위탁가정에 아이 맡기고 연락두절...권덕철 "제도 개선"” (<https://www.fnnews.com/news/202110061407495234>)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모집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탁가정제도에 대한 개념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⁹⁾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가정위탁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근 2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은 상당히 적고, 위탁에 참여하는 부모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 및 관심 촉구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충남 아산시, 경북 울진군 등 3개의 지방정부가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³⁰⁾’를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활성화되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위탁 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지역센터 지원 필요하다.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과도한 업무량의 조정과 추가적인 인원 배치 및 센터 증원 등의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가정 부모의 선정에 있어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29) 굿모닝충청(2022.03.14.) “천안시, ‘위기아동 위탁가정’ 상시 모집”(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929)

30) 이를테면,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는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이들 아동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위탁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아동보다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여건,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지원 규모보다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재활 및 치료 등 장애아동에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고,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에 기대지 않는 일반 가정위탁은 전체 위탁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탁부모 희망군이 두텁지 않을뿐더러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데,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탁가정 지원 규모를 반드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부모가 지속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한국의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고려하여,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고 소외나 차별이 없도록 모두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기대효과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로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지원제도 및 정책에 있어 양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석된 제반의 내용은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한 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각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고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전문성을 더욱 증진하는 것은 위탁가정 정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추후 개선될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제도 및 정책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 사례관리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지영·정선영·정선옥·김진숙, 「실무자들의 가정외보호 아동 원가정복귀 선호도와 관련요인」, 『학교사회복지』 56,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21, 1~25면.
- 강현아·정익중·강현주·이화조·오세현,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보건복지부, 2020.
- 강현아·정익중·양경해,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한국아동복지학』 50, 한국아동복지학회, 2015, 1~26면.
- 강현주·도미향·홍나미·백현주,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코칭연구』 14(5), 한국코칭학회, 2021, 183~203면.
- 김민정, 「가정위탁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위탁유지」, 『한국가족복지학』 15(3),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0, 149~161면.
- 김수정·정익중,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9~33면.
- 김윤희, 「발달지연을 보이는 위탁 가정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4(2),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2011, 21~52면.
- 김진숙·이근무,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

- 가족복지학』1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5, 41~74면.
- 김희연·박은미·이주현,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경기연구원, 2006.
- 노충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8,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238~264면.
- 박건우,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7, 일본연구센터, 2021, 43~64면.
- 박금식·김현지·허두진,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3.
- 박복순·장혜경·정가원·이인선,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5.
- 박은미·강현아·정익중·이정애·서기원, 『전문가정위탁 업무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9.
- 박지현·김정연, 「치료지원에 관한 지체장애학교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2, 241~260면.
- 박현정·김순규, 「장애아동 가정보호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양과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4),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2, 5~27면.
- 서해정·정익중·이선화,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 이경준, 「장애아동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초방안 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4, 2013, 1~23면.
- 이상무,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 『아동복지연구』 9(3), 대한아동복지학회, 2011, 149~164면.
- 이선화·서해정·정익중,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2(1),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55~79면.
- 이혜린·이숙정,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아동의 친인척 양육경험에 관

- 한 생애사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2),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20, 75~104면.
- 이혜영·이혜원, 「위탁부모의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가정위탁보호지속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0,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1, 151~174면.
- 임동호,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고찰」, 『아동복지연구』 6(2),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99~119면.
- 장정은·전종설, 「가정위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일반가정위탁모의 장·단기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9, 67~102면.
- 정익중,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2017.
- 정혜선·김진숙,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04, 115~134면.
- 차선자, 「가정위탁 제도의 다면적 법률관계 검토」, 『법제연구』 45, 한국법제연구원, 2013, 171~209면.
- 최복천, 「장애아동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4(1),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2013, 1~21면.
- 최복천·김유리, 「중증 뇌병변장애 아동의 건강,의료 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한 부모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3),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5, 111~136면.
- 최영,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가정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한국아동복지학회, 2007, 61~90면.
- 최은희·윤혜미,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한국아동복지학회, 2014, 143~170면.
- 한경근·이미경·박윤정, 「중도, 중복장애의 개념,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1), 한국지체·중

북·건강장애교육학회, 2009, 287~316면.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263~287면.

허남순,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29,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08, 207~233면.

허남순,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243~270면.

황옥경, 「아동권리 보호와 위탁가정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아동복지연구』 2(1),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131~147면.

이테일리, “‘입양법 사각지대’ ‘입양 전 위탁’...위탁가정 전전하는 아이들”, 2017.05.12.

한겨레신문,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아동 1.2% 그쳐’”, 2020.10.21.

MBC, “‘시설보다 못한’ ‘위탁 가정’...자식처럼 키워도 ‘동거인’”, 2021.10.18.

경상일보, “울산 위기아동 느는데 위탁가정은 태부족”, 2021.08.30.

굿모닝충청, “천안시, ‘위기아동 위탁가정’ 상시 모집”, 2022.03.14.

서울신문, “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2020.08.08.

오마이뉴스, “가정위탁 보호제도 13년, 정책 현실화 돼야”, 2016.02.18.

파이낸셜뉴스, “위탁가정에 아이 맡기고 연락두절...권덕철 “제도 개선””, 2021.10.06.

한국일보, “전문가정위탁제, 아동 중심으로 마련돼야”, 2020.11.0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https://www.fostercare.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 Abstract

**A Study on the Foster Care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k, Geo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and current status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oster care support system, focusing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Despite its importance, the foster care system for disabled children has been slightly improved, and the policy has been revised relatively recently. In addition, research related to topic is also found to be insufficient. Through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analysis with related group,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needs necessary for practical improvement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foster care poli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Key words: foster care, disabled child, specialized foster care, child protection, social welfare

이 논문은 2023년 1월 4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홍성효*

— 목차 —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3. 자료와 변수
4. 실증분석결과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분거가족과 동거가족 간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전북사회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 단순 비교에서는 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가족의 속성을 통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오히려 분거가족이 삶에 대한 만족에서 보다 낮음을 제시한다. 이는 분거가족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사회적 통념이 두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일부를 분석에서 누락함에 따른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가족의 분거가 자발적으로 혹은 원해서 나타나기보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함을 고려할 때 회귀분석에 의한 결과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비록 결혼이나 삶에 대한 가치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해체 혹은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분거가족, 삶에 대한 만족, 행복감, 맞벌이 주말부부, 전북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분거가족(직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4,094,416가구로 일반 가구 가운데 19.1%를 차지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별로는 배우자만 떨어져 사는 경우가 3.8%, 자녀만 떨어져 사는 경우가 13.0%,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떨어져 사는 경우가 2.3%에 해당한다(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년). 2010년 기준 분거가족 가구주는 15.1%였으나 2018년 기준 20.1%로 증가하였다. 분거하는 이유로는 직장이 6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 29.4%, 가족 간 불화 7.7%, 건강상 이유 2.9% 등으로 나타난다(통계청, 「한국사회조사」 2010년과 2018년).

분거가족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구분된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장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이후에 나머지 가족들이 가장을 따라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가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분거가족에 해당한다.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의 붐으로 인해, 남성 노동력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으로써 가장 홀로 해외에 거주하는 형태의 분거가족이 증가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비수도권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두 지역에 걸쳐 따로 떨어져 사는 경향

이 나타났다. 이후에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전문직 진출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변화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주말부부의 증가가 분거가족을 보다 보편화하였다.¹⁾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말부부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이는 아마도 부부라도 개인만의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부부로서의 가정 내 각자의 역할에서부터 주중에 만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갈망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가족의 순기능을 간과 혹은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주말부부와 같은 분거가족의 경우가 동거가족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이 보다 높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테면, 경제적 형편상 맞벌이가 필요해 부득이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와 가족구성원들 간 갈등이 있어 의도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동거에 비해 삶의 만족이 낮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분거가족과 동거가족 간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에서의 차이를 분석한다. 특히, 전북사회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거의 유형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근본이 되는 공동체로서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점차 가족해체가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1세

1)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기혼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00년에 39.2%에서 2020년에 48.2%로 상승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 비중은 같은 기간 16.0%에서 35.6%로 상승하였고, 직업이 관리자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14.0%에서 19.6%로 상승하였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맞벌이 가구는 5,823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12.0%에 해당하는 697천 가구가 비동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2011년 기준 비동거 맞벌이 가구가 463천 가구로 전체 맞벌이 가구 가운데 8.8%를 차지하였음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간 규모에서는 50% 이상 증가하고 비중에서는 3.2%p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진정한 가족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거가족에 관한 연구는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 혹은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동거부부와 외의 상대적 비교나 부부 이외 가족 구성원의 분거에 대한 분석 및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상대적으로 큰 표본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분석결과의 보편성을 높일 것이며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방향의 설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에 있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분거가족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들의 기초 통계에 대해 기술하며, 실증분석 결과는 제4장에서 논의된다. 마지막 장은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는 가파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삶의 질 혹은 행복감은 OECD회원국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삶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 가운데 공동체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 영역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지네트워크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은 41개 국가들 가운데 38위에 불과하다.²⁾ 오늘날 사람들은 직장, 거주지, 출신학교, 동호회 등 다양한

2) 지지네트워크의 질은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정의되며, OECD의 평균은 91%이나 우리나라는 80%의 낮은 수준

공통의 이슈를 매개로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족이며, 최근 우리나라는 독거노인가구, 미혼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가 보다 빈번하여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역시 그 규모가 상당하다.³⁾ 이러한 추세는 가족의 순기능을 저해하여 해당 개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을 낮추고 결국에는 고독사 혹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되며, 이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온전한 가정의 유지 및 가족구성원의 삶에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가정의 해체단계는 아니지만, 가족구성원들 간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 역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광인숙(2003)은 주말부부 형태의 분거가족이 증가하는 이유로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포함하고, 후자는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증가와 자아실현 욕구에 기인한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개인중심의 가치관을 지적한다. 김경은·정옥분(1998)은 주말부부 가운데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떨어져 산 기간이 짧거나, 남편이 집에 보다 자주 오거나 하루에 1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일 때에 보다 높음을 제시한다.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 배우자, 직장인, 가사노동자, 자녀양육자, 시부모 부양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각의 역할은 그 수행과정에서 욕구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며, 이때 역할갈등이 나타난다. 역할갈등은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결혼

에 해당한다(<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 3) 단적으로, 1인 가구는 2015년에 5.2백만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에서 27.2%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7.2백만 가구에 달하여 전체 일반 가구에서의 비중이 33.4%까지 상승하였다. 한부모가정은 2021년 기준 1,509,958가구에 이른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부 간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김은경(1999)은 직장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도와 주말부부에 대한 친구의 지지가 유의하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한다. 전영자(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부모로서의 역할, 근로자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가운데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큼을 제시한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주말부부에게는 자녀양육, 가계경제에 있어서의 역할, 가사노동의 분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심리적 비용(cost)으로 작용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나 직업적 성취 등이 보상(reward)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Gerstel and Gross(1984) 역시 주말부부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혹은 심적 여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용과 보상 간 상대적 크기에 따라 주말부부의 삶(결혼생활) 혹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이 일반 부부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즉, 비용이 보상보다 큰 경우라면 주말부부는 일반 부부에 비해 행복감이 낮을 것이나 보상이 비용을 능가한다면 주말부부가 상대적으로 보다 행복할 것이다. Horn-Fingered(1991)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장점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독립의 기회와 자율성, 가족 차원에서 주중에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 만났을 때의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통한 가족의 가치, 그리고 부부 각자 직업에서의 성취를 지적한다. 한편, 주중에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공유의 부족 및 이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단점이라고 제시한다.

2) 분석모형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그리고

해당 개인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로 분거가족 여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속성을 통제하는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y_i = \alpha + X_i\gamma + \beta SF_i + \epsilon_i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 y_i 는 개인 i 의 주관적 웰빙을 나타내며, 이는 삶의 만족 혹은 행복감에 대한 해당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X_i 는 개인 i 의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속성들을 나타내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이는 성, 연령, 거처의 종류와 주택점유형태, 세대구분, 혼인상태,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주 여부 등을 포함한다. SF_i 는 분거가족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ϵ_i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1)의 추정은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3. 자료와 변수

1) 자료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전라북도의 전북사회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한다. 이는 도민 전체 가구 가운데 13,515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20년 8월 19일이다. 전북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에 대해 격년제로 조사가 실시되며, 2020년에는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거가족 여부와 해당 가구원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그리고 분거 이유 등이 조사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22,158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가 분거가족의 구성원에 해당하며, 13,515가구 가구들 가운데 4.2%가 배우자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5.1%에 해당한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거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은 83.0%에 해당하고 3년 이상인 경우도 48.4%에 이른다.

2) 변수

분석에 포함된 표본 가운데 여성은 53.8%에 해당하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52.4%로 가장 크다. 거처의 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59.4%, 아파트가 33.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80.3%가 자가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한다. 세대구분별로는 1세대 가구 38.4%, 2세대 가구 34.4%, 그리고 1인 가구 23.8% 등으로 분포한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0%에 해당하고 미혼은 13.0%인 반면에 사별이 1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표본에 포함된 고령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29.5%가 고등학교로 가장 높고, 표본의 61.0%는 가구에 해당한다.

<표 1> 기초통계

변수	속성	비중(%)	변수	속성	비중(%)
여성		53.8	혼인상태	미혼	13.0
연령대	15~19세	2.7	배우자 있음		64.0
	20대	5.5		사별	17.4
	30대	8.0		이혼	5.6
	40대	13.6	학력	무학	14.9

거처의 종류	50대	17.7	월평균 가구소득	초등학교	19.4
	60세 이상	52.4		중학교	13.6
	단독주택	59.4		고등학교	29.5
	아파트	33.8		전문대학	8.8
	연립·다세대	4.6		4년제 대학	11.8
주택점유 형태	그 외	2.3		대학원	2.1
	자가	80.3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9.8
	전세	5.2		50~100만원 미만	18.3
	보증부 월세	9.4		100~200만원 미만	21.2
	사글세	2.5		200~300만원 미만	17.8
	무상 임대	2.6		300~400만원 미만	13.1
세대구분	1세대	38.4		400~500만원 미만	8.3
	2세대	34.4		500~600만원 미만	5.3
	3세대 이상	3.3		600~700만원 미만	2.5
	1인 가구	23.8		700~800만원 미만	2.1
	비혈연	0.2		800만원 이상	1.6

4. 실증분석결과

1) 분거가족 여부와 삶에 대한 만족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 가운데 타 지역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인 분거가족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된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에서 분거가족이 아닌 경우는 평균 6.23점에 해당하는 반면에 분거가족은 6.3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거가족에서 높게 나타난다. 분석을 가구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분거가족의 삶에 대한 만족은 평균 6.32점으로 분거가족이 아닌 경우(6.15점)에 비해 0.17점만큼 높게 나타난다. 삶에 대한 만족과 마찬가지로 행복감 역시 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그 차이는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의 소위 ‘주말부부’에 대한 막연한 선망

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표 2>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의 분거가족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t-test결과

변수	구분	분거가족 여부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차이 (표준오차)	t-값
삶에 대한 만족	전체	부	18,133	6.23 (0.014)	-0.13 (0.032)	-4.27**
		여	4,025	6.36 (0.029)		
	가구주	부	11,138	6.15 (0.018)	-0.17 (0.042)	-4.11**
		여	2,377	6.32 (0.039)		
행복감	전체	부	18,133	6.20 (0.014)	-0.19 (0.032)	-5.81**
		여	4,025	6.39 (0.029)		
	가구주	부	11,138	6.11 (0.018)	-0.25 (0.043)	-5.84**
		여	2,377	6.36 (0.039)		

주 : **는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은 해당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타고난 기질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테면, 구재선·서은국(2011) 등). 만일 특정 속성을 지닌 가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이 높고, 이러한 속성을 지닌 가구가 분거가구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면, <표 2>에 의한 분석결과는 변수 누락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omitted variable bias)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연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속성들을 통제한 후에 분거가족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표 3>은 식 (1)에 대한 추정의 결과를 제시한다.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 있어 개인의 속성에 따른 차이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의 실증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를테면, 주거에서의 안정성은 삶에 대한 보다 높은 만족이나 보다 높은 행복감을 야기한다. 혼인상태에서 이혼의 경우가 가장 낮은 삶의 만족을 나타내고,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대체로 행복감에 비례한다.4)

<표 3>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의 분거가족 여부에 따른 차이 : 회귀분석결과

	삶에 대한 만족		행복감	
	전체	가구주	전체	가구주
여성	0.191** (4.55)	0.148** (2.74)	0.231** (5.46)	0.158** (2.91)
연령대(기준 : 15~19세)				
20대	-0.310** (-2.65)	0.465 (0.83)	-0.232* (-1.98)	0.341 (0.70)
30대	-0.662** (-5.21)	-0.210 (-0.37)	-0.605** (-4.75)	-0.341 (-0.69)
40대	-0.971** (-7.60)	-0.527 (-0.93)	-1.018** (-7.89)	-0.808 (-1.63)
50대	-1.010** (-7.87)	-0.572 (-1.01)	-1.073** (-8.26)	-0.892+ (-1.79)
60세 이상	-0.907** (-6.88)	-0.377 (-0.66)	-1.017** (-7.58)	-0.745 (-1.50)
거처의 종류(기준 : 단독주택)				
아파트	-0.221** (-6.01)	-0.139** (-2.96)	-0.210** (-5.69)	-0.134** (-2.80)
연립·다세대주택	-0.159* (-2.07)	-0.054 (-0.57)	-0.134+ (-1.77)	-0.099 (-1.09)
그 외	-0.119 (-1.09)	-0.128 (-0.92)	-0.123 (-1.08)	-0.088 (-0.65)
주택점유형태(기준 : 자가)				
전세	-0.210** (-3.12)	-0.287** (-3.55)	-0.117+ (-1.66)	-0.198* (-2.29)
보증부 월세	-0.264** (-4.87)	-0.305** (-4.47)	-0.268** (-4.90)	-0.310** (-4.57)

4) 한편, 가구주는 가구 내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는 가구원만큼만 행복하다는 영국의 실증분석결과와 상반되게 가구주에 비해 가구원이 보다 낮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사글세	-0.604** (-5.27)	-0.558** (-4.51)	-0.529** (-4.85)	-0.507** (-4.37)
무상 임대	-0.193+ (-1.93)	-0.312** (-2.62)	-0.188+ (-1.84)	-0.327** (-2.71)
세대구분(기준 :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0.206** (-4.35)	-0.180** (-2.77)	-0.138** (-2.82)	-0.163* (-2.45)
3세대 이상 가구	-0.306** (-3.30)	-0.234 (-1.56)	-0.292** (-3.14)	-0.257 (-1.58)
1인 가구	0.094 (1.29)	0.027 (0.31)	0.081 (1.10)	-0.036 (-0.41)
비혈연 가구	0.246 (0.76)	0.059 (0.12)	0.187 (0.52)	-0.109 (-0.19)
혼인상태(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460** (5.97)	0.374** (3.46)	0.628** (8.03)	0.500** (4.48)
사별	0.118 (1.23)	0.217+ (1.94)	0.331** (3.42)	0.428** (3.77)
이혼	-0.269** (-2.85)	-0.250* (-2.27)	-0.152 (-1.59)	-0.129 (-1.16)
학력(기준 : 무학)				
초등학교	0.186** (2.96)	0.267** (3.60)	0.162* (2.55)	0.248** (3.20)
중학교	0.202** (2.80)	0.268** (2.99)	0.183* (2.50)	0.181+ (1.94)
고등학교	0.358** (4.93)	0.505** (5.61)	0.386** (5.20)	0.461** (4.74)
전문대학	0.428** (4.84)	0.550** (4.84)	0.483** (5.36)	0.560** (4.68)
4년제 대학교	0.598** (6.97)	0.717** (6.56)	0.608** (6.95)	0.709** (6.13)
대학원	1.008** (7.97)	1.186** (8.34)	1.064** (8.26)	1.164** (7.88)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87** (2.84)	0.200** (2.74)	0.193** (2.86)	0.165* (2.21)
100~200만원 미만	0.294** (4.20)	0.243** (2.94)	0.270** (3.81)	0.216** (2.58)

200~300만원 미만	0.447** (5.96)	0.425** (4.64)	0.429** (5.60)	0.425** (4.50)
300~400만원 미만	0.676** (8.22)	0.719** (6.96)	0.657** (7.90)	0.691** (6.64)
400~500만원 미만	0.938** (10.63)	0.953** (8.17)	0.796** (8.83)	0.830** (6.87)
500~600만원 미만	0.909** (9.21)	1.020** (7.87)	0.851** (8.43)	0.994** (7.54)
600~700만원 미만	1.052** (8.80)	1.098** (6.13)	0.936** (7.72)	1.039** (5.76)
700~800만원 미만	1.199** (9.55)	1.365** (8.24)	1.164** (9.30)	1.176** (6.57)
800만원 이상	1.358** (10.09)	1.590** (8.09)	1.274** (9.12)	1.414** (7.01)
가구원 여부	-0.191** (-4.09)		-0.197** (-4.12)	
분거가족 여부	-0.094* (-2.11)	-0.127* (-2.17)	-0.085+ (-1.87)	-0.066 (-1.14)
상수항	6.164** (45.14)	5.577** (9.86)	6.058** (43.52)	5.828** (11.79)
관측수	22,158	13,515	22,158	13,515
Adj. R-squared	0.0800	0.0960	0.0826	0.100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가구원을 포함하는 경우와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표 2>에서의 결과와 상반되며, 소위 ‘주말부부’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보다 높을 것이라는 통속적인 관념을 부정한다. 즉, 집단 간 단순 평균에 의한 <표 2>의 결과는 분거 여부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지 못함에 따른 허구적인(spurious)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와 따로 떨어져 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맞벌이 부부일수록, 홀벌이 부부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을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높은 가구소득은 삶에 대한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못한 <표 2>의 결과는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 누락된 변수로서 가구소득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의 상당수는 해당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이 높고 직업의 전문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⁵⁾ <표 3>의 결과는 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지닐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보다 높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력이 누락된 변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주말부부’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가 간과된 편향된 결과에 해당한다. 오히려, 분거가족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함을 함축한다.⁶⁾

행복감에 있어서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분거의 부정적 영향이 관찰되며,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아 분거가 행복감을 낮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주말부부’가 보다 행복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옳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말부부의 경우 주중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주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기숙·손태홍, 2004).⁷⁾

-
- 5) 제2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여성취업의 증가는 주말부부의 증가를 유도하는 하나의 원인이며 자아실현 욕구에 기인한 교육수준의 상승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분거의 보상-이를테면, 전문직 종사를 통한 자아실현-이 비용-이를테면, 자녀교육-을 증가하도록 할 것이다.
 - 6) 한편, Bunker et al.(1992)은 동거 맞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이 주말부부에게서 역할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으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
 - 7) 문숙재·윤소영(2003)은 주말부부의 남편과 아내 간 가사노동활동과 여가활동 시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남편은 평일에 혼자서 지내기 때문에 의식주관련

2) 분거의 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

분거의 유형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분거의 사유별로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한 분거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5.43점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은 건강상의 이유 5.69점, 직장(직업) 6.2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거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6.34점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6.55점으로 상승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47점으로 하락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6.28점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 3년 이후에는 6.28~6.31점의 낮은 수준이 지속된다. 이처럼, 분거의 초기에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수준보다 낮아지며 장기적으로는 처음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한편, 분거가족의 거주지 유형 혹은 거리는 삶에 대한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분거의 유형과 삶에 대한 만족

구분	평균	F-값
분거 사유		
직장(직업)	6.29	3.90**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6.48	
가족 간 불화(별거 등)	5.43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5.69	
자녀 교육지원	6.67	
군대	6.48	
기타	6.68	

가사노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가사노동 참여가 높지 않음을 제시한다. 채옥희(1998) 역시 맞벌이 주말부부는 주말에 서로 만나게 될 때 서로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 8) 장기적으로, 처음의 수준을 회복하는 결과는 심리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행복감이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분거 기간	6개월 미만	6.34	2.08+
	6개월~12개월 미만	6.55	
	1년~2년 미만	6.47	
	2년~3년 미만	6.28	
	3년~5년 미만	6.28	
	5년 이상	6.31	
분거가족 거주지	전북 내 타 시군	6.34	1.16
	전북 이외 광역시도	6.29	
	국외	6.68	

주 : **와 +는 각각 1%와 10%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5. 맺음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은 이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에 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켜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야기한다. 주말부부를 비롯한 분거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주말부부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삶의 질 혹은 행복감이 보다 높은 것처럼 이야기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동체에 있어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1인 가구 및 가족의 해체가 보다 빈번하여 저출산의 완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을 함축한다.

본 논문은 분거가족과 동거가족 간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감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사회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 단순 비교에서는 분거가족이 동거가족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가족의 속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오히려 분거가족

이 삶에 대한 만족에서 보다 낮음을 제시한다. 이는 분거가족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사회적 통념이 두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일부를 분석에서 누락함에 따른 추정상의 오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가족의 분거가 자발적으로 혹은 원해서 나타나기보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함을 고려할 때 회귀분석에 의한 결과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다만, 가정 내 불화로 인해 동거보다는 분거가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면 해당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할 때에 비해 따로 떨어져 살 때 보다 높은 삶에 대한 만족이 관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거의 기간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이 분거의 초기에는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일지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들은 공동체로서 가족이 구성원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 있어 여전히 중요함을 함축한다.

비록 결혼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해체 혹은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의 해체는 비단 해당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을 위해 가정의 형성과 출산이 요구된다. OECD의 Better Life Index 산출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회원국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부분에서 특히 취약하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서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조세나 보조금 혹은 수당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계몽적 접근-이를테면, 관련 저명 인사의 일반 대중 대상 강연, 사회적 실천운동, 인식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의 직업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들의 학력수준 및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로 비동거 맞벌이 부부가 빠르게 증가하여, 분거가족의 대표적인 유형을 차지한다.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은 결혼만족도와 직결되며,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비동거 맞벌이 부부가 친인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어 결혼에 있어서의 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고선주·옥선화, 1996; Lewis and Spanier, 1979). 따라서, 비동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족의 분거가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기인하는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서 후자가 보다 일반적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본 논문에서의 주장을 보다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젠더적 요인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Maples(1981)는 분거가족 부부 간 거리 및 만나는 빈도가 상이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장점과 단점이 상이함을 제시한다. 만일 분석자료가 떨어져 사는 거리 및 만남의 빈도에 따라 분거가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유형 간 삶에 대한 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분거가족에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선주·옥선화,,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가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이중 ABCX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131~157면.
- 구재선·서은국,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5(2), 한국심리학회, 2011, 143~166면.
- 곽인숙,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187~199면.
- 김경은·정옥분,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대한가정학회, 1998, 35~49면.
- 김은경,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25~43면.
- 문숙재·윤소영,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213~220면.
- 이기숙·손태홍, 『맞벌이 주말가족 연구』, 신정출판사, 2004.
-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대한가정학회, 1997, 339~355면.
- 채옥희,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대한가정학회, 1998, 153~166면.
- Bunker, B., Zubek, J., Vanderslice, V., and Rice, R., 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Marriage and the Family* 54, pp. 399-407.
- Gerstel, N., and Gross, H., 1984, 『Commuter Marriage』. NY: The Guildford Press.
- Lewis, R., and Spanier, G.,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Hill, R., Nye, F., and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68-294. New York: The Free Press.
- Maples, M., 1981, 「Dual career marriages: Elements for potential succes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1), pp. 19-23.

■ Abstract

Separation of Families and Life Satisfaction

Hong, Sung Hyo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 between separated families and cohabiting famil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0 Jeonbuk Social Survey, in a simple comparison between groups, separated families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an families living together, but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individual family attributes showed that separated families are lower in satisfaction with life. This is interpreted as including an error in estimation because the socially accepted notion of preference for separated families is based on a simple comparis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at is, an error in estimation due to omitting some of the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in the analysis. Realistically, considering that in many cases family separation occur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rather than voluntarily or desir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will be more appropriate. Although family disintegration or single-person households are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values of marriage or life, considering that it is still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policy efforts that make people awar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amily so that people form and maintain a family are necessary.

Key Words: Separated family, life satisfaction, happiness, dual-career long-distance couple, Jeonbuk.

이 논문은 2023년 1월 18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8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일반계고등학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문창배* · 최영진**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해석
5. 논의 및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반계고등학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 일반계고등학교 7개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총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제1저자).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교신저자).

나타났다. 즉, 일반계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일반계고등학교,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위기 등의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 어려움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실시로 인한 학습격차, 우울, 위축감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교육부, 2021). 학생들은 이전과 달리 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아졌고(여성가족부, 2021), 이로 인하여 사회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자신의 역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자(Cicchetti & Becker, 2000),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김주환, 2011)을 말한다.

강명희·이수연(2013)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갈등에의 대응 능력을 높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연준희(2020)는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hony(1987)

는 회복탄력성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함께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과 학업성취도가 좋으며(구자은, 2000),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재홍·윤경란, 2007). 그리고 회복탄력성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는 데 유용하다(이해리·조한익, 2005).

김영은·엄명웅(201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권선형(2016)은 가정경제 수준과 가족 내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친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관계 구축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일반계고등학생은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력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일반계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이명훈, 2016)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박나정 외, 2018) 등 특성화고등학교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회복탄력성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상황을 조성하기보다 현재의 가정경제 환경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행할 수 있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한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계고등학생들의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일반계고등학생들의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계고등학생들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일반계고등학생들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일상적인 가정 상황에서 향후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1) 가정경제 정도

회복탄력성은 사회환경변인과 가정변인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전지원, 2021). 김영은 외(2018)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요인과 가정경제적 지위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권선형(2016)은 가정경제 수준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회복탄력성은 가정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가정경제 정도는 가정이 사회경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정경제 정도보다 가정경제 수준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경제 수준의 경우 주관적 인식 정도부터 상중하 혹은 5단계 구분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볼 때보다 구체적으로 급간을 구분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이 연구에서는 가정경제 정도로 변인을 정의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가정경제 정도는 학생 자신이 느끼는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정도를 뜻하는 변인으로 Likert 5단계 척도(1=매우 어려운 편이다, 2=어려운 편이다, 3=보통이다, 4=잘 사는 편이다, 5=매우 잘 사는 편이다)로 구분된 응답결과로 정의한다.

2)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정보이다(Cobb, 1976). 또한 Taylor(2007)는 타인으로부터 애정 어린 돌봄과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끔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유정(2014)은 정서적 지지가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안녕감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yan, & La Guardia, 2000).

또한 정서적 지지와 개인의 삶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개인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Hicks & King, 2009). Krause(2007)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를 통해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예측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이의 도움, 응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ry(1998)는 지지적이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수용 받는 분위기가 삶의 의미에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경험에 용기를 내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용기는 자신의 경험, 가치, 신념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심하고 설명함으로써 자기-탐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황여정 외(201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지지 관계를 매개하여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가정경제 정도 변인과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제안한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물질의 유연함과 탄성의 의미를 포함하여 회복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탄력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자아탄력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Reivich & Shatte(2003)는 회복탄력성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라 하였고, Rutter(1985)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이전 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한선영, 2015), 내적, 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Waters & Sroufe, 1983)으로 정의된다. 즉, 힘든 처지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내면의 힘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송유진, 2015).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Wagnild와 Yong(1993)은 의지력, 독립심, 인내심, 자기신뢰, 평정심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Reivich와 Shatte(2003)는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낙관성,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7가지를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송유진(2015)은 회복탄력성을 상황에 개방적이며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성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하였다.

홍은숙(2006)은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을 역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능력으로 보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개인 내부의 자원으로서 원인분석능력, 충동통제능력, 감정통제능력, 평이한 기질과 인지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가정 내 환경으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외적 자원이며, 셋째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인관계, 타인공감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인 사회성도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구성한다(신우열 외, 2009).

신우열 외(2009)는 위계적 모형으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을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의 9가지 분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을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우열 외(2009)의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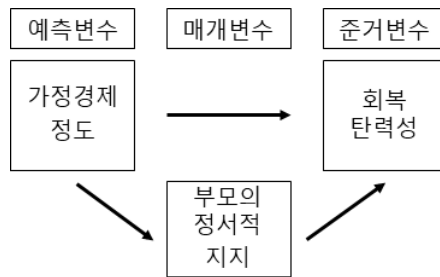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일반계고등학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사전 유의도를 분석하고,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내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개교 총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대상 학급은 해당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1,2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에서 총 1,100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민감한 청소년기임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 응답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며 진행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541	49.2
	여자	559	50.8
학년별	1학년	324	29.5
	2학년	453	41.2
	3학년	323	29.4
가정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이다	3	0.3
	어려운 편이다	56	5.1
	보통이다	823	74.8
	잘 사는 편이다	193	17.5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5	2.3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	1.7
	부족하다	53	4.8
	보통이다	272	24.7
	받고 있다	301	27.4
	충분히 받고 있다	455	41.4
합계		1100	100.0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측정도구에 연구자가 회복탄력성 척도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가정경제 정도는 학생 자신이 느끼는 가정경제 정도를 뜻하는 변인으로 Likert 5단계 척도(1=매우 어려운 편이다, 2=어려운 편이다, 3=보통이다, 4=잘 사는 편이다, 5=매우 잘 사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식 정도를 뜻하는 변인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부족하다, 3=보통이다, 4=받고 있다, 5=충분히 받고 있다)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외(2009)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

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하위 9가지 요인으로 구성한다. 9가지 요인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이며 각 요인에 대해 3문항씩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아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 값은 .908이다.

<표 2> 회복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요인	내용	신뢰도 (Cronbach α) .908
원인분석력	나는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900
감정통제력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896
충동통제력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97
감사하기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902
생활만족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894
낙관성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891
관계성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	.899
커뮤니케이션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 찾아낸다.	.894
공감능력	친구가 화낼 때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901

4)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요인 및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요인에 대한 집단 간 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가정경제 정도 및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가정경제 정도 및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제가 양호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수록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경제 정도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회복탄력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	회복탄력성
가정경제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도			
	N	1100		
부모의	Pearson	.193(**)	1	

정서적 지지	상관계수			
	유의도	.000		
	N	1100	1100	
회복탄력성	Pearson 상관계수	.236(**)	.426(**)	1
	유의도	.000	.000	
	N	1100	1100	1100

** : $p < .01$

2) 집단 요인별 회복탄력성 분석

① 가정경제 정도별 회복탄력성

가정경제 정도별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정경제 정도가 어려운 편인 경우 평균이 2.3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매우 어려운 편 2.59점, 보통 2.80점, 잘 사는 편 3.09점, 매우 잘 사는 편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수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잘 사는 편(d)과 매우 잘 사는 편(e)은 그 외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하여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경제 정도별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Scheffe'
가정 경제 정도	매우 어려운 편(a)	3	2.59	.93	4	17.098***	.000	a,b<c,d,e c<d,e
	어려운 편(b)	56	2.31	.81				
	보통(c)	823	2.80	.76				
	잘 사는 편(d)	193	3.09	.75				
	매우 잘 사는 편(e)	25	3.44	.57				
	합계	1100	2.84	.78				

*** : $p < .001$

②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이 2.0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조금 받음 2.27점, 보통 2.47점, 받는 편 2.79점, 충분히 받는 편 3.1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수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받는 편(d)과 충분히 받는 편(e)은 그 외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하여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Scheffe'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전혀 받지 못함(a)	19	2.04	.62	4	62.169***	.000	a,b,c<d,e d<e
	조금 받음(b)	53	2.27	.86				
	보통(c)	272	2.47	.77				
	받는 편(d)	301	2.79	.66				
	충분히 받는 편(e)	455	3.19	.67				
	합계	1100	2.84	.78				

*** : $p < .001$

3)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연구문제 3에 대한 일반계고등학교생들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Kenne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6>.

[모형 1]에서 가정경제 정도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모형 2]에서는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형 3]에서는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 $F=42.259(p<.001)$, [모형 2] $F=64.704(p<.001)$, [모형 3] $F=142.392(p<.001)$ 로 본 회귀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형 1] $R^2=0.037$, $\text{adj},R^2=0.036$, [모형 2] $R^2=0.056$, $\text{adj},R^2=0.055$, [모형 3] $R^2=0.206$, $\text{adj},R^2=0.205$ 로 나타났다.

[모형 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B=0.352$, $p<0.001$ 로 가정경제 정도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 $B=0.334$, $p<0.001$ 로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가정경제 정도는 회복탄력성에 $B=0.226$, $p<0.001$ 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도 회복탄력성에 $\beta=0.305$,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그리고 [모형 2]에서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334$ 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투입된 [모형 3]에서의 $\beta=0.226$ 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연구를 통해 <표 7>과 같이 가정경제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경제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B=0.334$) 중 직접효과는 67.8%,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모형	변수	B	SE	β	t(p)	F(p)	R^2	adj,R^2
1	(상수)	2.903	0.174		16.676***			
	가정경제 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	0.352	0.054	0.193	6.501***	42.259***	0.037	0.036

2	(상수)	1.781	0.133		13.370***			
	가정경제 정도 → 회복탄력성	0.334	0.041	0.236	8.044***	64.704***	0.056	0.055
3	(상수)	0.895	0.137		6.538***			
	가정경제 정도 → 회복탄력성	0.226	0.039	0.160	5.829***			
	부모의 정서적 지지 → 회복탄력성	0.305	0.021	0.395	14.418***	142.392***	0.206	0.205

***p<0.001

<표 7> 비표준화 추정량(B)에 따른 변수 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a×b)	총효과
가정경제 -> 부모의 정서적지지(a)	0.352***		
부모의 정서적지지 -> 회복탄력성(b)	0.305***		
가정경제 -> 회복탄력성	0.226***	0.107***	0.334***

***p<0.001. 간접효과 유의도는 Sobel 검정량의 유의도 임.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정경제 정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지원(2021)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사회자본의 효과성 검증에서 부모의 가정경제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와 일관된다.

둘째, 가정경제 정도($F=17.098$, $p<.001$)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F=62.169$, $p<.001$)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결과(김영은 외, 2018)와 사회자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선희, 2016) 결과에서 사회자본의 요소 중 가정경제 수준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셋째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제 정도의 차이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한다는 바를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가정경제 정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복지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가정경제 수준의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기준 등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다양한 교육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차별 또는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들이 가정경제 수준의 불평등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보편적 복지차원 지원과 함께 관계적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모의 정서

적 지지 요인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 활성화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가정경제적 상황과 부모와 친밀관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일부 일반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조사를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어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시차를 두고 인과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성을 분석하는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명희 · 이수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013, 265~293.
- 고재홍 · 윤경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한국청소년연구』, 18(1), 2007, 185~212면.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2021.
-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선형, 『사회자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나미 · 김신섭,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2013, 1125~1144.
- 김영은 · 엄명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5~30면
- 김주환, 『회복 탄력성』, 위즈덤 하우스, 2011.
- 남태현,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관계성을 통한 진정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나정 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공업교육학회』 43(1), 대한공업교육학회, 2018, 20~40면.
- 송유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공감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신우열 외,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105~131면.
-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구축과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2012.
- 연준희,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명훈,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1(1), 대한공업교육학회, 2016, 44~67면.
- 이유정, 『아동기 정서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해리 · 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5, 161~206면.
- 전지원,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효과성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425~436면.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 청소년실태조사」, 2021.
- 최영자,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 하규영 · 이민영,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7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7(1), 2020, 39~63.
- 한선영,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홍은숙,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 한국특수교육학회, 2006, 45~67면.
- 황여정 외,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4(1), 한국교육사회학회, 2014, 205~229면.
- Anthony, E. J. (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The invulnerable child*, 3~4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avidson, A. K., & Inman, A. G. (2013). South Asian Americans: Perceived discrimination, stress, and well-being.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3), 155~165.
- Fry, P. S. (1998). The development of personal meaning and wisdom in adolescence: A re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consolidating factors and influences.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91~1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icks, J. A., & King, L. A. (2009). Positive mood and social relatedness as

- information about meaning in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471~482.
-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469.
- Luthe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543~562.
- Reivich, K., & Shatt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Harmony. NY : Broadway Book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 Ryan, R. M., & La Guardia, J. G. (2000). What is being optimized?: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S. H. Qualls & N. Abeles (Eds.), Psychology and the aging revolution: How we adapt to longer life (pp. 145~17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ylor, S. E. (2007). Social support. In H. S. Friedman & R. C. Silver (Eds.),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pp. 145 - 1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Abstract

**Impact of the Degree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Domestic Economy on Resilienc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Moon, Chang Bae · Choi, Young Jin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degree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domestic economy on resili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1,100 first-, second-, and third-year students at seven general high schools in Jeju Islan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degree of the domestic econom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resilience. Second, the higher the degree of the domestic economy 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the more significant the impact on resilience became. Third, in the impact of the degree of the domestic economy on resilienc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other words, this suggests that counseling and education to improve parental emotional support are important to increas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resilience.

Key Words: General High School, The degree of the domestic economy, Parental emotional support, Resilience, Mediating Effect

이 논문은 2023년 1월 25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1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현장 & Issue]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장화선*

목차

1. 광합성光合成 광주光州에 살고 싶다
2. 산자분수山自分水하고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海不讓水
3. 도시철도와 연계한 “광주 벨로폴리탄(vélopolitain)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을 제안한다
4.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을 줄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자
5. 글을 마치며 禮失求野

1. 광합성光合成 광주光州에 살고 싶다.

예로부터 광주는 물의 도시라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대표적으로 광주천을 비롯해 수많은 지류 지천들이 있다. 내지천, 용산천, 소태천, 증심사천, 동계천, 용봉천, 경양지천, 서방천, 극락천, 영산강, 황룡강, 지석강 등이다. 물이 많으니 생태가 풍부하고 그만큼 생명도 다양하다. 수생목(水生木)이다. 물과 생태가 살아 있는 빛고을을 그린 그림이 있다. 조선후기 (1872년) 어느 이름 모를 화가가 그린 「전라좌도

*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광주」 고지도다. 특이한 점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녹색 등 색깔이 포함된 화려한 채색지도다.

빛고을 광주답게 녹색이 도시를 가득 채운 모습이다. 마치 한송이 꽃과 같다. 광합성이 풍부한 곳이다. 그래서 생태환경이 깊고 풍부하다. 이러한 꽃봉오리 같은 광주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



<공동체 모닥 최봉익 대표_창업60경 중 광합성 광주판>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다. 오래된 광주의 터무늬를 현재에 맞게 수선하는 게 일상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재생이다. 터무늬 수선을 통해 못 생명 되살림이다. 재생에 재(再 : 兩也 一加一, 重也, 更也)가 의미하는 바가 사뭇 크다. 재생 또한 삶의 방식이고 생명이며 생활이다.

그래서 이곳 광주에서 우리의 몫과 책임이 크다 하겠다. 고쳐 써야 할 몫이고 생태계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광합성과 도시재생은 다른 듯 닮아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노후화

와 혼잡, 공간의 남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에 반해 광합성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 중 하나로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는 녹지공간 확대, 자전거 도로 구축 등을 통해 도시 내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녹지공간이 많은 도시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광합성을 한다. 또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생산되는 산소는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광합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생 과정에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게다가 대기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과정에서 흡수하여 제품에 축적하는 것이다. 탄소흡수(원)다. 광합성을 하는 균류나 식물류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다. 참으로 고맙고 귀한 일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이유다.

2. 산자분수山自分水하고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海不讓水.

광주에는 거의 모든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복개하천 이다. 복개하천은 도시의 고도개발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관리 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복개하천은 편리함 이면에는 문제점 또한 있다.

먼저, 기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하천은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인데 하천의 복개로 서식지가 없어지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천 하부의 토양이 침식되고, 수

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홍수 시 하천에서 빠르게 흐르는 물로 인해 오염물질이 짧은 순간에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하천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이는 하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천 내의 물이 더 빠르게 흐르면서 하천 벽면에 영향을 주어 하천 벽면의 내부 구조가 파괴되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복개하천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및 유지 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복개하천 시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개하천 시행 시 생태계 보전, 수질 관리, 하천 변형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결국 복개하천은 기존 자연하천의 폐쇄 및 인공적으로 지나치게 굴착되어 유속이 빨라지고 수질이 악화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하수 함양능력의 감소다. 복개하천은 지상부의 하천이 감소하면서 지하수 수위와 토양습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감소하면서 지하수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주변 생태계와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복개하천과 도시내 빗물 등의 땅 속으로 흡수율이 낮아져 결국 거대한 물순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더욱 큰 홍수 등의 기후재난이 빈번이 강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복개하천의 수질 개선>

복개하천은 자연하천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으로,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수질정화 공정을 개선하거나, 하천 주변의 배수구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여 보내는 관로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복개하천의 체류시간 연장>

복개하천의 수위를 조절하여 유속을 감소시키고, 하천 주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수질 오염물질의 침전을 촉진하고, 체류시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개하천의 생태학적 기능 회복>

복개하천은 주로 수문환경을 개선하거나 교통수단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정화 식물 등을 식재한 연못 등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면서 복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물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지반 토양 침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홍수 위험을 줄이고, 수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이용되지 않는 가옥의 지붕면의 우수를 모래필터 등으로 만든 침투구를 설치하여 빗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인공적인 하천이 아닌 생태계의 자연적 복원을 통해 물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생태학적 방안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개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활동, 하천 상류부에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 하류부로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면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지하수 저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에는 복개된 부분을 되돌리는 재자연화 방향으로 기존의 콘크리트 등 덮개를 걷어내고 일반하천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광주에 있는 하천 중 그래도 복개되지 않은 하천은 내지천과 중심사천 정도다. 나머지 하천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복개하천을 당장 자연하천으로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에게 족보가 있듯이 하천에도 수계도라는 것이 있다. 하천의 유역별 위계에 따라 물길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중에 복개된 하천은 검은색 등으로 색칠해 표시하자. 물론 복개되지 않은 자연형 하천은 녹색으로 표시하자. 그리고 복개하천 군데군데에 복개하천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복원해야할 곳임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자. 또한 도로로 이용하는 복개하천 도로면에 색깔도 일반도로 검은색과는 다르게 색칠하여 이곳이 복개하천 지역임을 표시하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향후 우리가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야할 곳임을 알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다. 거룩한 부담과 선한 영향력 또한 생기지 않겠나 한다.

3. 도시철도와 연계한 “광주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요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과 정책들이 연일 보도된다. 탄소중립은 21세기 기후위기와 자원위기의 중요한 해결방안이다.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시켜 폭우, 폭염, 홍수, 가뭄 등으로 삶터와 생태계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광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특성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웃돈다. 배출특성과 이용습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비산업부분으로 개인들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습관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춤한 상황이다. 물론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지만 말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럽과 북미 등 국가들의 자전거 판매대수 및 이용자 확대와는 다른 형태이다. 광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한집에 한대를 향해 계속 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의 획기적인 방법인 자전거 이용자들의 확산을 기대한다. 교통부문의 정의로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마무리 되고 완전 개통되는 시기가 2025년 예정이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터파기 공사장에는 최소 2~3개 차선을 통제해 작업을 하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전체 구간의 길이는 약 42km이고 그 폭은 8~10미터(2개 차선 이상)에 이른다. 한 차선에 양방향 자전거 전용도로(3미터)와 나머지 차선에 푸른길공원과 같은 선형(대상)공원(Circular Park)을 조성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제안한다.

이는 광주에 도시철도2호선 부지와 맞물려 42만㎡(태양광 약 40MW 용

량 이상 설치가능 면적, 이는 약 330 ~ 400 가구/MW/년 전기 사용량으로 16천여 세대/년 전기 사용량, 광주 57만세대의 약 3%에 해당) 도심돌레길 공원과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다. 공원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타이어 부스러기 등 미세먼지 저감,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등을 줄이고 폭염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에어필터가 도심 중앙에 번듯하게 넓게 생기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사통팔달의 녹색교통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긴다. 자전거와 도시철도 노선을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원형공원 안 시내지역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등을 추가하여 교통부문에 정의로운 전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라 본다. 이러한 사례는 프랑스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 실행하고 있는 15분 도시, 파리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촉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모빌리티 플랜 2030"(Mobility Plan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우선시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파리시 지하철 노선의 지상을 자전거 길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름은 메트로폴리탄(métroplittain : 지하철)에서 따왔다.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 파리 시내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한다. 특히 지하철과 지상의 자전거전용도로를 2중으로 구축한 대중교통 활성화-개인교통 환승 연결 프로젝트이다.

자전거 대여 시스템 확대 : 파리 시는 이미 "벨리브"(Vélib')이라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는 이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기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전거 문화 확산 :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는 자전거 관련 강좌도 개설하고 있어 젊은 층에게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 파리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도

시환경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
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시내 교통
체증 해소와 대기오염 저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겠다.

파리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교통체증 완화 : 파리 시내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촉진을 통해 도시 교통체계를 완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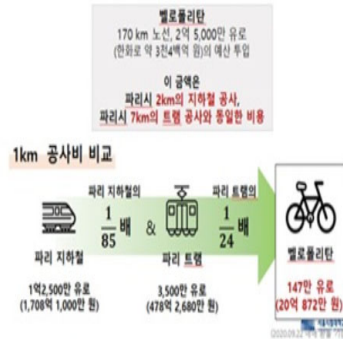
대기오염 저감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람과 동식물에



"2024년까지 모든 거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벨로폴리탄 프로젝트 투입 예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리 벨로폴리탄(Vélopolitain) 정책은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운동량 증가와 심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파리 시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촉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광주시도 지금과 같은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파리와 같은 벨로폴리탄 정책을 도입하여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개인교통의 행복한 환승시스템 구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광주실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탄소교통수단에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와 걷기를 포괄해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광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 교통부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비용이나 효과를 생각한다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제안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지 않는 이유는 이용환경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이용환경과 자동차 운전자 등 시민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부족이 한 몫 한다. 특히 광주는 교통 수송분담율 절반을 넘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천국이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승용차 교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 교통부문의 탄소중립의 실행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내연기관차의 전기화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이 그 첫 번째요, 승용차 이용자들의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으로 전환이 나머지다. 교통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이용습관과 교통수단 선호도를 바꿔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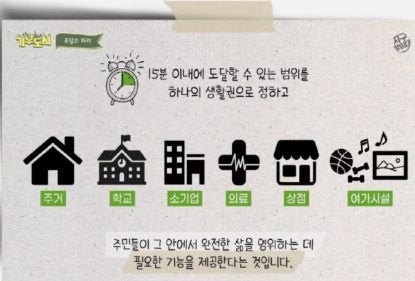
또한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계획 등 관련 (비)법정계획들과의 정합성을 맞춰 교통약자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2040도시기본계획과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

다. 또한 최근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권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권계획 설명(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중 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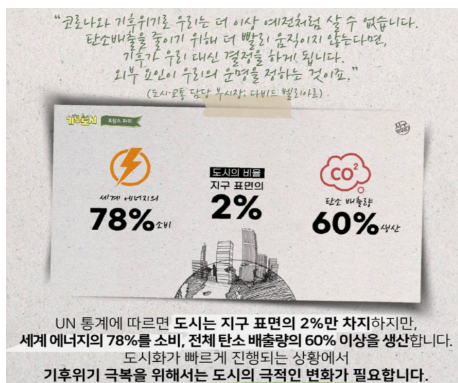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으로 특히 통근·통학·쇼핑·여가·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 활동지역 생활권을 계획단위로 설정하고...」 이번 광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녹색교통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시철도2호선 자전거 전용차로와 원형(대상)공원(Circula Park)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알다시피 대중교통 활성화는 채 20%도 되지 않는 대중교통 분담율과 50%가 넘는 승용차 수송분담율과 제로섬게임의 관계에 있다. 위 법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최고의 가치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발생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직주도시(職主都市 Compact City)로 해결할 단초를 만들자. 이제 요즘 뜨고 있다는 파리나 유럽, 남미, 북미 등에서 애기되는 “N분 도시”



자동차는 불편하고, 자전거와 사람은 편리한 **15분 도시의 장점**,
 1. 환경에 좋고, 2.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및 3. 자전거와 보행이 늘어 주민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 대형마트 대신 도시 거리의 지역 소매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으며(CAO 산하 탄소제로센터의 행변 사례에로), 5.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분 도시는 6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생활하고, 일하고, 공급과 돌봄을 받으며, 학습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즉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거, 학교, 소기업, 의료, 상업, 여가시설 등 **주민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히며 **상생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룹니다.**



이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사업과 닮아 있다.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시내 주차장 단계적 축소 및 주차요금 인상, 교통혼잡세(탄소세), 광주 5대 관문 대중교통 환승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등 보행자와 교통

약자 보호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교통정온화기법 등을 포함해 시행하길 바란다. 광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과 광주광역시도시교통정비계획(2021~2040)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계획이 되면 좋겠다.

2022년 8월로 광주시민 모두가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었다. 이에 덧붙이면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 활동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기존 자전거 앱 가운데 에코바이크앱이나 빗고올타랑계를 확장하면 좋겠다. 메뉴에 개인 자전거 등록 및 관리현황, 자전거 이용행태 분석, 자전거 이용환경 분석 등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일반 보험사의 자전거교통 사고 통계를 통합한 “광주형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GBAAS)”을 구축하여 자전거 앱의 효율성을 높이자. 광주시에서 사고다발지역, 사고발생시 신고, 자전거 지도 제공, 이용객 편의시설, 녹색교통이용마일리지 등 이용자 확대를 위한 결단과 실천이 남았다.

4.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을 줄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자

우리나라에서 야생의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대부분 죽고 있다. 하루에 2만여 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에 목숨을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새들의 죽음은 단순한 새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과급될 영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생태계는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이 특징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야생 조류가 건물의 유리창이나 방음벽과 충돌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러한 충돌은 조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리창과 충돌하는 조류는 대개 건물 근처에서 번식하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 중일 때 발생한다. 조류는 투명 유리창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한다. 특히 건물의 크기와 높이, 주변 환경 등이 조류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들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다. 새들은 사람과 동물들의 눈과는 같은 듯 다르다. 새들의 눈은 두 개이지만 위치가 머리의 양옆으로 달려서 단안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눈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새들은 공간해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깊이 인식(유리반사 구조물 인식)



다음으로 빠른 비행속도이다. 평균 시속 36~72km로 유리창 등에 충돌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사람보다 2~3배 정도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 등 가짜 맹금류 스티커를 금방 알아챈다. 맹금류 스티커로는 조류충돌 예방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유리창의 특성상 주변 환경과 비슷한 투명도와 반사도를 가지기 때문에 조류가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유리창에 비친 숲이나 하늘 모습을 잘못 보고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사고 건수는 상상을 넘어선다.

미국의 경우,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매년 수백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약 1천만 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2,500만 마리, 유럽에서는 연간 365백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 충돌 사고로 죽는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들이 유리창 충돌로 한해 800만 마리가 죽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립공원에서 약 3,700마리의 조류가 건물과 유리창과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인공구조물 야생조류 충돌 연구>

- 조사 시기 : 2017. 11. - 2018. 10.
 - 피해량 분석 : 2017. 12. ~ 2018. 10.
- 조사 지역
 - 유리창 충돌조사: 12개 광역 시도 30개 지점
 - 방음벽 충돌조사: 10개 광역 시도 26개 지점

• 연간 피해량 추정 결과 요약(단위: 개체/년)

		연간 피해량	신뢰구간(95%)	신뢰구간(75%)	신뢰성
건물 유리창		7,649,030	568,735 - 702,417,415	2,459,018 - 31,995,554	다소 높음
투명 방음 벽	고속국도	35,047	2,797 - 1,935,808	12,097 - 124,230	다소 높음
	국도/지방도	197,732	15,779 - 10,921,636	68,247 - 700,894	낮음 (통계치 미비)
	전체 도로	232,779	18,575 - 12,857,444	80,344 - 825,124	보통

다음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방안이다.

유리창(투명성, 반사성)을 덜 사용하는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건물에서는 유리창 대신 투명한 산화물을 사용하는 등 유리 대체재가 적용되고 있다. 또는 반투명 아크릴 등 재료를 사용시 유리창 충돌 건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리창에 아크릴 물감 등 점 등 도안을 입히거나 야생 조류가 인식하기 쉬운 무늬를 부착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리창의 반사도를 줄이는 유리도 개발되고 있다.

건물 주변에 조류 보호대를 만들어 비행경로를 변경하게 하거나 유리창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벌려 충돌을 예방하는 방식도 있다.

유리창 전면을 막는 장치(커튼, 블라인드 등)를 설치하여 조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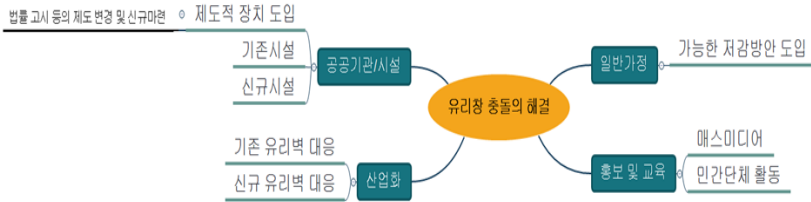
새들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 시공사, 설계자 등에게 인식 캠페인을 통해 야생 조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리창 설치시 유리창 위험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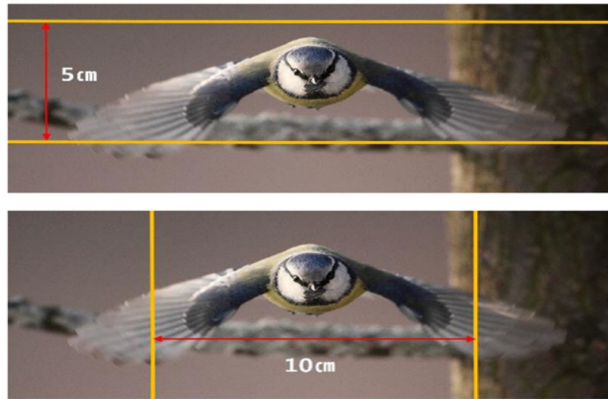
야생 조류 보호단체에 자원을 지원하거나, 기부를 통해 야생 조류 보호에 기여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조류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대책>



충돌방지 시공의 기존 조건 (5X10 규칙)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유리창에 점 등을 디자인 한 유리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유리창에 새의 특징을 이용한 디자인의 추가가 필요하다. “새는 상하 5cm 간격, 좌우 10cm 간격을 장애물로 인식하여 통과하지 않으려 하기에 투명하거나 반사를 일으키는 유리창에 문양을 적용하면 충돌을 막는다”(5×10규칙) 이는 레이저(아크릴물감) 도트를 설치하여 유리창의 반사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런 규칙을 적용한 유리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가격도 일반 유리에 비해 큰 차이가 없기에 설치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형 재료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방음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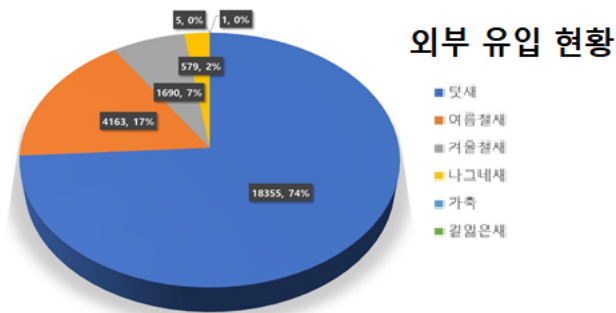
나 건물에는 5×10규척이 적용된 필름(테이프)이나 아크릴물감 등으로 부착하거나 디자인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도 충돌 저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 저감 방식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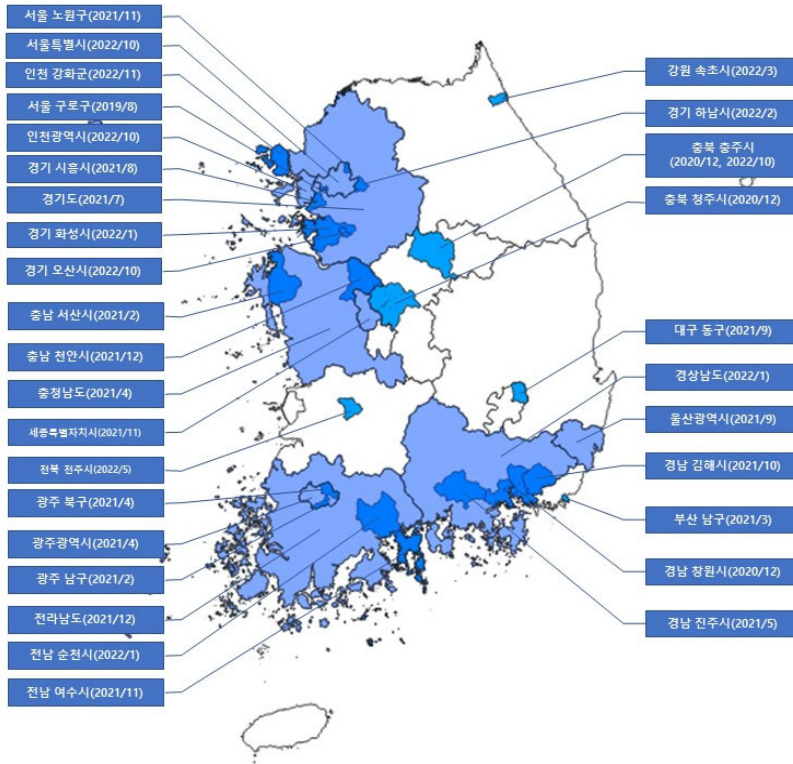
조망권과 새 보호, 딜이 가능할까?



위 사진에서 빨간색 부분은 저감조치를 실행한 곳으로 약간 먼 거리에서도 그 상태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들에게는 눈에 띄어 본 투명 방음벽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조류 유리창 충돌 개체들의 외부유입 현황>



유리창 충돌 개체 도래별 종류로 텃새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철새 종류가 전체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체로 철새들은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이 많기 때문에 단순 숫자상 비교는 맞지 않겠다.

다음은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예방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방안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재료비 등 비용을 지원 하지만 인건비나 작업에 필요한 소요물품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없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활동 확대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쓴 책이다.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 농약)를 비롯한 살충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생태계는 수많은 종이 얹히고 설켜 운영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살충제로 곤충들의 대규모 학살의 결과 이들과 연결된 새들의 굶주림과 죽음은 필연이다. 이렇듯 생태계는 생물종들의 다양성과 그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서로에 의존함으로써 이루어진 거대한 먹이사슬 체계이다.

우리들의 편리함으로 시작한 행위가 다른 생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5. 글을 마치며 禮失求野.

원심장류 源深長流 수원이 깊은 물은 멀리 그리고 오래도록 흐른다.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 大一生水이며, 지구 70%가 넘는 면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에 생명체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생태계에서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물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계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 생태계는 서로 다른 생물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물 군집체이다. 생물들은 서로 먹이사슬, 생태적 역할 등을 통해 생태계 내에서 함께 살아가며, 서로 의존하고 조화롭게 작용하여 균형을 이룬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태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살고 있음이다. 이 변화는 서로 다른 생물 군집체 간 상호작용하며,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안정성 등도 변화한다.



<공동체 모닥 최봉익 대표
창업60경 원심장류 광주편>

생태계의 원리로부터 끄집어 낸 원심
장류源深長流는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
이 모두 서로 연결된 전일적인 하나의
체계라는 깨우침이다. 상호작용하면서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생태계의 원리는 다양한 우리
들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와 상호작용에 대한 삶의 기준이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문화다양성 확대를
일컬음이다. 서두에 빛고을 광주를 광합
성光合成 광주光州로 표현한 이유다. 생
태가 살아 있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가꿔가는 터무늬 빛고을 광주를
생각해 본다.

이제 비로소 봄이다.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시간에 광주 빛고을
의 봄을 생각해 본다.

서평: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파주: 오월의봄, 2022.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추주희*

1. 가족 너머의 가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인가이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푸념도 듣는다. 그러나 이런 푸념에도,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가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및 도덕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서 가족은 다시금 안전망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 변동의 틈새에서 가족 다양성이란 것에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가족 형태일지라도,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성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논쟁적이지만 같은 논의 선상에 있게 된다. 하지만 왜 우리는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혹은 이를 저항의 언어로 전유하면서까지 가족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하는가?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재전유하는 과정은 실로 구원(救援)의 과정과 유사하다.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됨을 뜻한다. 김순남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감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구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급진적인 동시에 실효성 있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의 모델”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른바 ‘정상가족’의 위기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가족주의의 약화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나 규범으로서 가족주의의 약화를 드러낸다(홍찬숙, 2020:445).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생존적 가족주의의 위기가 전면화되었으며, 이 생존적 가족주의의 위기는 사회 전반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취약한 가구들에서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구생산의 위기로 가시화되었다.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변동은 순응적 변환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사회와 불화하고 있다. “돌아갈 수도,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가족’”(김순남, 2022:32)은 이제 사회 전방위적인 변동과 위험상황에서 폐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가족제도와 가족 규범과 불화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족 실천을 정치화하고, 이를 통해서 가족을 전혀 다른 위상과 위치 속에서 재전유하자고 제안한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해방”의 가능성을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어떤 권리가 제약되었는가?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었는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적 담론은 폐쇄적인 혈연가족의 영토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안팎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가족 규범을 변형하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삶의 정치학을 만들어 낼 때, 바로 그때 “사회”는 가족을 통해 구원받는다. 새롭게 구성된 상호의존의 생태계는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결합을 부정하고 배제한 사회적 조건을 질문하면서(48), 새로운 시민성의 자격과 권리를 요청한다.

자율적 개인은 가족제도 안에서 누가 공적으로 중요한 시민인지, 또 어떤 관계가 중요한 관계인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63). 가족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에 의거해,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서, 자율적 개인의 삶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70-71). 그러나 이전의 가족으로 회귀할 것을, 원(原)가족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항하는 힘은 분명 개인의 자율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근대적 의미에서의 ‘가족’으로 공적 영역에서 출현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율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개개인의 가족 구성권의 인정은 시민권의 범주 안에서 시민적 유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2. 근대적 가족 정치학과 표준적 성배치의 파기

우리는 경제 영역의 일차적 변화에 대응하여, 혹은 사회 변동에 적응한 결과로 가족의 제도가 변화한다는 낡은 사회학적 가정을 초월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정치학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더디다.

지금도 한국 사회의 근대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으며, 생애주기의 표준화를 토대로 특정 가족을 정상 모델화하기 위해 더 다양하게 변용된다. “건강가정”, “인구교육사업”, “결혼장려사업” 등 가족 정책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족에 대한 신화를 공고히 한다. 무엇보다 정상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이자 정상신체, 정상국가 프로젝트는 결혼과 가족을 낭만화하면서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가족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들을 배제하고 격리해 왔다. 배제의 정치학은 행복한 정상가족과 취약가족을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가족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의 사회적 차별을 “보호”라고 정당해 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근대 가족 프로젝트는 여전히 결혼 가능한 몸, 출산 가능한 몸, 생산적인 몸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시민을 선별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을 재단한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의 규범적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들, 혹은 전제들이 얼마나 많이 통제되어 있으며, 이성애 가족

주의 모델을 통해 정치화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통한 정치적 투쟁, 즉 가장 의존적이고 취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 생존의 투쟁을 새로운 사회 구성체와 연결하여 재전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투쟁들을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전유하기 위해 제시된 퀴어가족정치적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106).

퀴어가족정치는 가족정치를 되묻기 위해서 성별이분법적 측면에서 가족 질서와 규범을, 시민적 유대와 돌봄의 측면에서 관계와 연대의 측면을,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결정권을 의제화하기 위해 제시된 관점이다. 퀴어는 가난한 자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이름으로, LGBTQI의 이름으로, 탈가정 청소년의 이름으로, 이주민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뒤쳐진 미래’, ‘뒤쳐진 사람’, ‘뒤쳐진 관계’로 규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된 이들을 지칭한다(113). 그러나 뒤쳐진 미래의 삶으로 호명된 시민들은 누구인가? 사회의 표준성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들, 배제가 정당화된 사람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가? 넓은 의미에서 ‘퀴어’는 특정 성소수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인구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사회의 기존질서를 거스르고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회를 재편하는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두를 포괄한다. 퀴어는 우리가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인식론이자 우리 삶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방법론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저마다 경험하는 특수한 불평등을 사회 구조적 불평등으로 가시화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퀴어가족정치의 당사자이다.

3. 난잡한 친밀성의 정치와 가족구성권

이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가족은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관계의 맥락

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규범적인 관계 밖의 가족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인정을 요구한다. 단, 관계와 가족 실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나 확대만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난잡한 친밀성의 정치는 결혼/혈연중심의 친밀성으로 귀속되지 않는 관계망 속에서 피어난다. 더 케어 콜렉티브의 『돌봄 선언』에서 차용한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이란 개념은 친밀성을 성애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거나 혈연—엄밀하게는 신화화된 모성이나 가족애—에 기반한 헌신적인 돌봄에 대항하여 돌봄의 위계를 급진적 평등주의로 전환을 시도한다. 이 책에서 “난잡한 친밀성”은 서로의 삶에서 지워낼 수 없는 ‘소수자’로서의 관계성과 취약함을 연대와 상호의존의 토대로 삼고, 난잡한 친밀성 속에는 혈족/친족을 넘는 여러 갈래의 의존망이 있고, 그 안에 각기 다른 관계의 문법이 있음을 강조한다.

가족 안에서 개인이 맺는 관계의 불평등과 불균형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양육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 내 관계는 돌봄을 매개로 하여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맺어진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폭로하는 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맺는 평등한 관계가 얼마나 허구적인가이다. 난잡한 돌봄은 우리 사회의 돌봄의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돌봄의 욕구를 서로 드러내고, 이를 서로 충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가족 문법과 서사로는 이해되기 어렵다. 종종 사회 통념을 거스르거나 합법적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개인들 간의 위치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계 속의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위치 불평등성은 의존하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돌봄”이

“좋은”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계속 유지되고 재구성되는지에 관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물론 난잡한 친밀성에 기초한 의존 관계에서도 폭력과 위계 혹은 보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보호망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삶의 자원이 충분치 않고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성과 돌봄의 비규범성을 정상가족의 규범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에게 기댄 사람들의 ‘독립과 자유’, ‘보호와 돌봄’의 의미는 정상가족 모델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문법과 서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개인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위치에서, 혹은 이성애적 관계에 몰두하며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내적 욕구에 충실하기 위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족/친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족구성권 운동은 그런 것과 다른 지점에서 출현한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해온 장애인운동이나 빈곤운동, 혈연가족을 떠나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탈가정청소년 주거권 운동, 청소년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나 한부모 권리 운동, 성별이분법적 가족제도에 저항하는 성소수자/퀴어운동 등은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삼으면서도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 노동, 의료, 연금 전반에 걸친 사회적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시민권 운동으로 나아간다(151).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관계들, 혈연가족으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가족커뮤니티들이 사회권 확보를 요청하며 삶의 위치를 드러내는 바로 그 반짝이는 순간에 가족구성권 운동의 모습이 전면화된다.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상호공존을 모색하는 다양한 운동과 교차하면서 ‘가족’을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인다. 새로운 시민성의 토대를 확보하는 퀴어가족정치는 가족 정책을 둘러싼 자유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과 같은 사회권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탈시설의 권리, 성과 재생산의 권리, 가족구성의 권리로 확장된다(166).

4. 당신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합니까?”라는 질문에 다수는 “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 사회에 “가족”을 묻는 가장 급진적인 책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읽고 난 후라면, 대답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단순히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태도만으로는 정상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이 보장은커녕 인정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요구는 대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배로 힘이 든다.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제도적 요구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권리 내용을 목록화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권의 개념은 첫째, 사회 제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관계성을 공적 제도 및 담론에서 가시화하고 이들의 기본권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함을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이는 단순히 누구와 살 것인가의 선택의 측면을 넘어서,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족구성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며, 그 자격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이 환기된다는 점에서 가족담론은 정치적으로 의제화한다.

둘째, 가장 낯것의, 전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혹은 가족구성권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의 삶을 통해서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권리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가족구성권의 실체를 분명하게 그리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가족 구성권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규범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소수자들은 가장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사회변화의 방향을 예감하는 존재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존재들이 만들어 내는 관계는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매우 분명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제도적으로 그리려는 순간,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정렬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구성권 운동은 단순히 권리 차원의 운동을 넘어서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족구성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가족구성권의 확장과 재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우리에게 열어 보일 미래 사회는 혈연가족의 배타성과 족벌주의가 사라진 사회, 나이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가족 내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는 사회, 가족 이기주의가 시민적 연대를 가로막지 않는 사회, 또한 기초적인 삶을 위한 필수노동과 돌봄이 “허튼 직업”(Bullshit Jobs)보다 우대받는 사회일 것이다(그레이버, 2021).

■ 참고문헌

- 그레이버, 데이비드, 김병화 옮김, 『불췌 잡: 왜 무의미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가?』, 민음사, 2021.
-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옮김,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 홍찬숙, 「‘가족자유주의’: 가족주의 및 개발국가에 편입된 자유시장 질서를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 장경섭,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집문당, 2018)」, 『경제와 사회』, 125호, 2020, 441~446면.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 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 [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	중(17)	하(14)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	중(17)	하(14)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	중(17)	하(14)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	중(17)	하(14)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	중(17)	하(14)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 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

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

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3월 31일, 9월 30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6.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강의혁(전남대), 김청우(부경대), 박미선(전남대), 박 범(공주대), 정희원(서울시립대), 최대회(전남대), 추주희(전남대), 한의송(전남대)
편집간사	강은진(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박상철(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성원(전남대), 이주리(전남대), 한의송(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 자	이 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 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

가족과 커뮤니티 (7집)

Family and Community

발 행 인 : 정미라
발 행 처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jnuinmun.org/>
연 락 처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 062-530-5218
 E-mail : familycommunity@naver.com

발 행 일 : 2023년 3월 31일
인 쇄 처 :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49, 404호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전 화 : 02-464-7708
 팩 스 : 02-499-0846
 홈페이지 : <http://hph.co.kr>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0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체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0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중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0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의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환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09.)

특별기고논문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종구 | 경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03.)

일반논문

-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2016)에 대하여
-

김종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0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 · 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박미선 외, [연구총서0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Elsa Dolin 외, [연구총서0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브렛 닐슨 외, [연구총서0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2. 번역총서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0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Tony Blackshe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0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1. 30.

Lodger Pries 지음, 최대희·장영숙 옮김, [번역총서0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3. 시민문화총서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0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0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0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0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